배 포 용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규 정

2019.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규 정

Contents 목차

1. 과학기술기본법 ····· 1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39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75

4.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135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 167

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 217

발표1 사업관리시스템(PMS) ····· 279

발표2 연구비 산정 및 정산 기준 안내 ····· 295

발표3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사용자 설명자료 ····· 311

발표4 2019년도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지원 사업 ····· 361

발표5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 [동남아시아]' 사업설명회 ····· 3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1.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56호, 2018. 4.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5. 28.>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0. 12. 27.]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1. 1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18. 1. 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3. 9., 2014. 5. 28.>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당해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18. 1. 1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5. 2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0. 2. 4.]

제7조의2 삭제 <2013. 3. 23.>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12. 27., 2014. 5. 28.>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시행계획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5. 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6. 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1.]

제2장의2 삭제 <2018. 1. 16.>

제9조 삭제 <2018. 1. 16.>

제9조의2 삭제 <2018. 1. 16.>

제9조의3 삭제 <2013. 3. 23.>

제9조의4 삭제 <2013. 3. 23.>

제9조의5 삭제 <2013. 3. 23.>

제9조의6 삭제 <2013. 3. 23.>

제9조의7 삭제 <2013. 3. 23.>

제9조의8 삭제 <2013. 3. 23.>

제9조의9 삭제 <2013. 3. 23.>

제9조의10 삭제 <2018. 1. 16.>

제9조의11 삭제 <2013. 3. 23.>

제9조의12 삭제 <2013. 3. 23.>

제10조 삭제 <2018. 1. 16.>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 5. 28.>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1의2.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 기술·학문·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2.>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0.>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0.>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14. 12. 30.>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4. 5. 28., 2014. 12. 30.>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5. 28., 2014. 12. 30.>

[본조신설 2010. 2. 4.]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28.>

[본조신설 2010. 2.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11조의5 삭제 <2014. 5. 28.>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2010. 12. 27.>

⑦ 삭제<2010. 12. 27.>

[전문개정 2010. 2. 4.]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2018. 1. 1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12. 27., 2011. 3. 9., 2013. 3. 23., 2014. 5. 28., 2014. 12. 30., 2017. 7. 26., 2018. 1. 1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8. 1. 16.>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3. 3. 23.]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27.]

제13조(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1. 3. 9., 2014. 5. 28.>

[제목개정 2011. 3. 9.]

제15조의2 삭제 <2018. 1. 16.>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단체와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22.>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사업화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민·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문화·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본조신설 2010. 2. 4.]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4. 17.>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장비,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 5. 28.>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8. 1. 16.>
1.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개정 2011. 7. 21., 2013. 3. 23., 2017. 7. 26.>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3. 1. 23., 2014. 5. 28., 2015. 12. 22., 2016. 3. 29.>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신설 2011. 7. 21.>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10. 2. 4.]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2.,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6. 22.>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5. 6. 22.]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개정 2013. 1. 23.,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삭제<2014. 5. 28.>

⑤ 삭제<2014. 5. 28.>

⑥ 삭제<2014. 5. 28.>

⑦ 삭제<2014. 5. 28.>

⑧ 삭제<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 7. 26.>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2. 4.]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4. 5. 28.>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④ 삭제<2010. 12. 27.>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2. 4., 2014. 5. 28.>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4. 5. 28.]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22.]

부칙 <제15556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0호, 2018. 4.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02-2110-2626

제1장 총칙 <개정 2010. 7. 26.>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 삭제<2014. 11. 19.>
5. 삭제<2014. 11. 19.>
6. 삭제<2014. 11. 19.>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별 수요 및 시장 전망
2. 미래유망기술별 개발 동향 및 전망
3. 미래유망기술 관련 지식재산 동향 및 전망
4. 미래유망기술별 목표, 실현 시기 및 확보 전략
5. 그 밖에 미래유망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1.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와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7. 2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4. 17.>
[전문개정 2010. 7. 26.]

제5조의2 삭제 <2013. 3. 23.>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 3. 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7조 삭제 <2011. 3. 28.>

제8조
[제9조의3으로 이동 <2013. 3. 23.>]

제8조의2 삭제 <2011. 3. 28.>

제9조 삭제 <2018. 4. 17.>

제9조의2 삭제 <2018. 4. 17.>

제9조의3 삭제 <2018. 4. 17.>

제10조 삭제 <2018. 4. 17.>

제11조 삭제 <2018. 4. 17.>

제12조 삭제 <2018. 4. 17.>

제13조 삭제 <2018. 4. 17.>

제13조의2 삭제 <2008. 2. 29.>

제13조의3 삭제 <2004. 12. 3.>

제14조 삭제 <2008. 2. 29.>

제14조의2 삭제 <2008. 2. 29.>

제14조의3 삭제 <2004. 12. 3.>

제15조 삭제 <2018. 4. 17.>

제16조 삭제 <2018. 4. 17.>

제17조 삭제 <2018. 4. 17.>

제18조 삭제 <2018. 4. 17.>

제19조 삭제 <2018. 4. 17.>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 11. 19.>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② 조사·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 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3. 1. 9.]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6. 6. 30., 2018. 4. 17.>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3. 3. 23.]

제2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

제21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4. 국고 지원의 적합성
5. 삭제<2018. 4. 17.>
6. 삭제<2018. 4. 17.>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삭제 <2014. 11. 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④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4. 17.>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0. 7. 26.]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전문개정 2010. 7. 26.]

제24조의2 삭제 <2018. 4. 17.>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4. 17.>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6. 6. 21.]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5로 이동 <2016. 6. 21.>]

제24조의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이와 관련 정책・전략의 수립 및 평가의 지원
5.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6.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의 지원
8.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상담과 금융 사무의 지원
9.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7. 7. 26.>

1. 제24조의3제1호의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
2. 제24조의3제2호의 비영리법인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③ 시・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할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1.]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6. 6. 21.>]

제24조의5(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

[제24조의3에서 이동 <2016. 6. 21.>]

제24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4. 1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
[제24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3. 28.]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3. 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3. 남북통일문제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연구기관
4.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전문개정 2010. 7. 26.]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 7. 26.]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 7. 26.]

제28조의2(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현물자산의 운용수익금
3.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에 한정하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

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는 제외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0. 7. 26.]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2. 기업에 대한 출연·투자 또는 융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 7. 26.>]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3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6.]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의 예치(預置)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預託)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0. 7. 26.]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장기 과학기술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공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교육내용, 시행방법을 포함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8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3. 여성 과학기술인의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4. 여성 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의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 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7. 7. 26.>

1.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영재교육연구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 1. 9., 2014. 11. 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28.>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전문개정 2010. 7. 26.]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확충·고도화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연구개발시설·장비의 처분에 관한 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제3항에 따라 구축한 활용체제를 종합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의 추진을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⑧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22.>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에 관한 정책 형성·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충·고도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5. 12. 22.]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충하였거나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7. 7. 26.>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1.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4. 법 제18조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 국제화의 촉진
5.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6. 법 제23조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7.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8. 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9. 그 밖에 입주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3.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 7. 26.]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법 제30조의2제5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 7. 26.]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기술·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시설·부지 및 장비의 지원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전문개정 2010. 7. 26.]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1. 한국연구재단
2. 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2. 학력·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경력 및 과학기술 관련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적, 상훈실적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 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 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관의 임무 및 장기 발전목표의 전략성
2.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3. 기관 운영의 효율성
4. 연구 및 사업수행 결과의 우수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5., 2012. 6. 29.,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의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7., 2011. 6. 24.,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5.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 7. 26.]

제50조(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규제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4. 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에 따른 소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

부칙 <제28800호,2018. 4. 17.>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4.>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4조 삭제 <2008. 3. 4.>

제5조 삭제 <2006. 12. 29.>

제6조 삭제 <2006. 4. 14.>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전문개정 2006. 4. 14.]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08. 3. 4., 2013. 3. 24., 2016. 1. 6., 2017. 7. 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용수·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부터㊶까지 생략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1.] [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02 - 2110 - 2735, 2110 - 2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9. 3. 19.>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5.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6.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1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9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 8. 12., 2017. 5. 8., 2019. 3. 1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2. 22., 2014. 8. 12., 2014. 11. 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3. 2. 22., 2013. 3. 23., 2017. 7. 26.>

⑦ 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3. 3. 23., 2014. 8. 12., 2014. 11. 28., 2017. 7. 2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2. 5. 14.]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4., 2015. 12. 22., 2019. 3. 19.>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9. 26., 2014. 11. 28.,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및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5. 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제안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8. 12., 2014. 11. 28.,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10.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3. 19.>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2017. 5. 8., 2019. 3. 19.>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11. 3. 28., 2012. 5. 1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 5. 14., 2019. 3. 19.>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7. 5. 8.>
②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 3. 19.>

제3절 협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8. 24.,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의2.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3. 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23조제8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9. 3. 19.>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5. 8. 24., 2019. 3. 19.>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11. 28., 2015. 8. 24., 2016. 7. 22.>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8. 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3. 9. 26., 2014. 8. 12.>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7. 5. 8., 2017. 7. 26.>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5. 8. 24., 2015. 12. 22.>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5. 8. 24.>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1.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내용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⑨ 삭제<2012. 5. 14.>

⑩ 삭제<2012. 5. 14.>

⑪ 삭제<2012. 5. 14.>

⑫ 삭제<2012. 5. 14.>

⑬ 삭제<2012. 5. 14.>

⑭ 삭제<2012. 5. 14.>

⑮ 삭제<2012. 5. 14.>

⑯ 삭제<2012. 5. 14.>

⑰ 삭제<2012. 5. 14.>

⑱ 삭제<2012. 5. 14.>

[제목개정 2012. 5. 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2. 22., 2013. 9. 26., 2015. 12. 22., 2017. 5. 8., 2019. 3.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개정 2019. 3. 19.>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7. 5. 8., 2019. 3. 19.>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4. 직접비 중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9. 3. 19.>

[본조신설 2012. 5. 14.]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3. 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1.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⑥ 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신설 2019. 3. 19.>

[본조신설 2012. 5. 14.]

[제목개정 2019. 3. 19.]

제12조의4(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용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및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5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사용잔액을 회수해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취소,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및 제2항의 계정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9. 3. 19.>]

제12조의5(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관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처리·분석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25조제4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의 상호연계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9.]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9. 3. 19.>]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26., 2015. 12. 22.>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 5. 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3. 9. 26., 2014. 11. 19., 2017. 7. 26.>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2.,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6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2.>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⑩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⑪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⑬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5. 12. 22.>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이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다.<개정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5. 8., 2017. 7. 26.>

[전문개정 2015. 8. 24.]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개정 2014. 11. 28.>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4.>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8.,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제<2017. 5. 8.>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삭제<2017. 5. 8.>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24.>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14. 11. 28.>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3. 9. 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11. 28.>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3. 19.>
[제목개정 2014. 11. 28.]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2014. 11. 28., 2015. 8. 24.>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4. 11. 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신설 2012. 5. 14.,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2015. 8. 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4. 11. 28.>
⑥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및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으로 정한다.<신설 2017. 5. 8.>
[제목개정 2014. 11. 28.]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9. 3. 19.>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개정 2019. 3. 19.>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
 가.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8. 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5. 8. 24.>

⑨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신설 2011. 3. 28., 2013. 2. 22., 2015. 8. 24.>

⑩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2. 5. 14., 2015. 8. 24., 2019. 3. 19.>

⑫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2019. 3. 19.>

1. 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5. 8. 24.>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5. 8. 24.>

⑮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신설 2019. 3. 19.>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개정 2014. 11. 28.>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11. 2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4. 11. 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1. 28.]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4. 11. 28., 2016. 7. 22.>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2015. 8. 24.>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11. 28., 2015. 8. 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5., 2014. 11. 28.>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⑧ 연구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 8. 12., 2014. 11. 28.>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12., 2014. 11. 28.>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24.>
[제목개정 2014. 11. 28.]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7. 21.,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5. 12. 22., 2016. 7. 22.>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2014. 8. 12., 2015. 8. 24.>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4. 8. 12., 2015. 8. 24., 2019. 3. 19.>
⑧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8. 12., 2015. 8. 24.>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5. 8. 24.>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9. 3. 19.>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⑤ 삭제<2012. 5. 14.>

⑥ 삭제<2014. 8. 12.>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7. 7. 26.>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8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 8. 24.>

⑩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 8. 24.>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1. 3. 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2. 5. 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5. 8. 24.>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5. 8. 24.>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12.>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 11. 28.>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7. 5. 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4. 8. 12.>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4.>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4와 같다.<개정 2014. 8. 1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4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본조신설 2011. 3. 28.]
[제목개정 2014. 11. 28.]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과제지원시스템(이하 "과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11. 28., 2019. 3. 19.>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

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연구시설·장비정보관리시스템이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연구시설·장비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5. 14., 2017. 5. 8., 2019. 3. 19.>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7. 7. 26.>

⑧ 삭제<2015. 12. 22.>

⑨ 삭제<2015. 12. 22.>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지원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9.>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11. 28., 2016. 7. 22., 2017. 5. 8., 2017. 7. 26.>

⑭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14. 11. 28., 2016. 7. 22.>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3. 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계획

⑯ 과제지원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9. 26., 2019. 3. 19.>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지원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9. 3. 19.>

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5. 8. 24.>

⑲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2019. 3. 19.>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㉒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1. 3. 28., 2014. 11. 28.>

㉓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전담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4. 11. 28., 2016. 7. 22.>

㉔ 전담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4. 11. 28., 2016. 7. 22.>

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유통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㉖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보를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 5. 14., 2019. 3. 19.>

㉗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 8. 12., 2014. 11. 28., 2016. 7. 22., 2017. 7. 26.>

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9. 3. 19.>

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제지원시스템의 통합 구축·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 3. 19.>

㉚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9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3. 19.>

제26조 삭제 <2016. 9. 5.>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6. 7. 22.>

② 삭제<2016. 7. 22.>

③ 삭제<2016. 7. 22.>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2.>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5. 12. 22.>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 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26., 2015. 12. 22.>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11. 28., 2015. 12. 22.>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7. 5. 8., 2019. 3. 19.>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9. 3. 19.>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6. 7. 22.>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본조신설 2014. 11. 28.]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본조신설 2015. 8. 24.]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5. 8. 24.>]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8. 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12. 22.>

[본조신설 2014. 11. 28.]

[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15. 8. 24.>]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27조의4에서 이동 <2015. 8. 24.>]

제7장 보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8.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2(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제4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3. 9. 26.>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

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4., 2014. 11. 28.>
1. 연구 기획·관리·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7. 7. 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2015. 8. 24.>
⑤ 삭제<2015. 8. 24.>
[본조신설 2012. 5. 14.]

제33조의3 삭제 <2015. 8. 24.>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12.>
[본조신설 2013. 2. 22.]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13. 2. 22.>]

제33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국가연구개발정보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9. 5., 2017. 7. 26.>
[본조신설 2012. 5. 14.]
[제33조의4에서 이동 <2013. 2. 22.>]

제33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1.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2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8.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12.]

제34조(세부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매뉴얼의 내용에 한정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8. 24.]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7조의4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부칙 <제29625호,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제6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7항, 제22조제7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2항・제13항, 제32조제2항,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2조의5제2항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2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수행의 전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8. 12.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56호, 2018. 12. 2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2 - 2110 - 2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9.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

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4.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 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9.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이 선발 채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 "연구성과소개서"란 연구개발과제에서 도출한 학술적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성과정보로 작성항목 등 양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2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25. "산업위기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 등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4.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방사선기술개발사업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동 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
8.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연구성과실용화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중 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제5항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 산업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된다.

⑪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 과제선정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① 인공위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 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 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 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 관리 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보급 사업화의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 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성과의 평가, 후속연구 지원 등 연구성과 활용 확산에 필요한 추가지원 및 관리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제45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9. 연구시설 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 감독
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 학 연 협동연구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이 제2조제3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성과 및 무형적 성과는 연구개발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⑥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기획 평가, 성과활용 확산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6조제2호 등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 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8. 연구개발성과보고, 활용 및 활용결과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협동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11. 공동연구기관의 구성 및 변경
12.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4.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 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기획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 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 연구 사업화, 기술이전 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 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 평가 과제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4. 국가안보, 사회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4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15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과장,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연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16조(공고 및 신청)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 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 기준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삭제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의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2. 연구인력의 보유여부 및 우수성, 연구윤리 수준

3. 연구환경의 적정성 및 연구기관의 관리 지원 능력

4.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연구개발서비스 포함) 구축의 타당성

5.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7. 삭제

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준

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2. 우수한 기술이전 기술출자 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3. 해당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

4.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 과제

⑥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 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 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⑬ 장관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 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 또는 시험 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8호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

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7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이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⑦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0호)"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⑫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여야하는 기업은 협약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회계년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을 따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 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 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 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 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3. 제1호를 사유로 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단을 요청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비목별 현물부담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 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 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 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9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조정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 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할 것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할 것

②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비영리법인은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장관이 2년 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장관은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7조제9항의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사용하되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2. 학생인건비 : 별표3(학생인건비)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24조제3항의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⑤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한다. 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⑥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⑧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등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1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삭제

⑫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재투자 또는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장비 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장비 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아니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삭제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과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비영리기관 : 집행 후 5일 이내
2. 영리기관 : 연구비 집행 내역 입력 후 집행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명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명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명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제2항의 증명자료 중 카드매출전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기관도 보고대상기

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41조제10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록번호,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취득금액, 취득일 등 관련 정보
4.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 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해당년도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5%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명자료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단,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기관의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을 넘은 연구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정산 대상과제 추출 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단,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하거나 외부 기관 및 전문기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를 제외할 수 있다.

⑤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 장비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제출받는 관련 증명자료 중 제27조제2항의 영수증서는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관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별표 7의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승인 후 전자로 발급한 과제별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장관은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부당집행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31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 비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단계의 종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 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제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삭제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한 연구시설 · 장비 현황
10. 삭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연구개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단계)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이전에 언론홍보 등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의 정보를 배포하려 할 경우, 해당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성과소개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 활용 계획 ·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 · 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동향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 (단,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사업화 가능성

③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 ·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 ·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개발사업계획에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는 연구개발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은 성과평가의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보고서의 제출 의무, 연구성과소개서 등 연구개발 성과의 입력 의무 및 추적평가를 위한 조사에 응할 의무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성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⑥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3조의2(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① 주관연구기기관의 장은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3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보고하고 성과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성과평가의 방법 및 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목표를 조기달성한 과제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 등 연구목표 변경을 위해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한다.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 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 등급’)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추천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단계)보고서 및 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소개서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소개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7항에 따라 등록 또는 기탁된 연구성과 중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논문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장관이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⑦ 연구성과를 보고서 학술지 게재 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연구성과를 학술지 게재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단위/세부 과제번호를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⑧ 개별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⑨ 제4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및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으로 정한다.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여부, 연구개발과제명 및 단위/세부 과제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과제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확산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관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식 기술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⑨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착수기본료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퍼센트
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퍼센트

⑩ 제9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징수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2퍼센트,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24퍼센트,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8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 1퍼센트
2. 중견기업 : 2퍼센트
3. 대기업 : 4퍼센트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 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간 기술료 납부금액이 총 기술료 납부 한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

⑫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약속어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에 대한 매출액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실시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항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38조의2(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단, 제38조제9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단,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본 항에 따른 감면 없이 징수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자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까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8조1항 각 호의 금액 :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영리기관이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에 산입 활용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4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단, 평가 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장비의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 장비 등록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 구축의 타당성 검토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 장비 등록 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 감독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후보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⑥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 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 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⑧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 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 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 최종 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연구성과소개서에 대한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 장비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시설 장비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 장비의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 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 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시설 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6. 연구시설 장비의 관리정보

⑩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 및 8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 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⑪ 공동관리규정 제25조의제4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제10조제1항의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정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 관리
3.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의 연계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 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윤리

제43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 수행과정 및 연구성과 등을 기록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10의2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10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장관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⑫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10의2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11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⑭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금일로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45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별표11의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의4(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① 장관은 제45조의3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6조(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외국부, 국제기구 등 외국 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④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7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의3(특구육성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제23조 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기술료의 징수 등 특구육성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결과 및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8조(준용규정)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49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 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연구 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 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사후관리)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세부 지침의 제정 운영) 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적용특례)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6호,2018.1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7조제12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제45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17조제12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마.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 rowspan="2">세부계상.집행기준</td></tr>
<tr><td>비목</td><td>세목</td></tr>
<tr><td>직접비</td><td>인건비</td><td>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세 부 산 정 내 용</td></tr>
<tr><td rowspan="2">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td><td>연봉제 적용기관</td><td>◦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td></tr>
<tr><td>연봉제 미적용기관</td><td>◦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td></tr>
<tr><td colspan="2">기 타 기 관</td><td>◦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td></tr>
</table>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
</td></tr>
</table>

		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단,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총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계상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박사 후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 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연구기관의 장은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제1항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조성비,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6.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7.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

		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2. 과제협약일 당시 참여기업이 모두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인 경우에는 제1호다목과 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을 총 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별표 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5조제3항 관련)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외·내부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연구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세미나 개최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 카드 사용 해당 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기술용역비 ○ 외부시험분석료 및 내부시험분석료
연구과제 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제29조제1항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산 과제를 제외한 그 밖의 과제에 대한 정밀정산	◦ 주관연구기관 수행과제 ◦ 협동, 위탁과제

[별표 7]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제30조제2항 관련)

사업명	종합관리계좌
기초연구사업	◦ 한국연구재단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종합) - 계좌번호: 451-01-1027-71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108-6010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사업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024-39204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32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국고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40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일반회계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양재동지점 - 계좌번호: 257-072586-04-019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특구육성사업	◦ 연구개발특구육성(R&D)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덕특구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468401-04-125960 - 예금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덕특구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468401-04-144620 - 예금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별표 8]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0조제11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6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제24조제3항의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로 대체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및 영리기관이 일괄 흡수하여 지출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9]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39조제6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10]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41조제7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단계)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각 전자원문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단계)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 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0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45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별표 11]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11항 관련)

<table>
<tr><th colspan="2">환수사유</th><th>환수기준</th></tr>
<tr><td colspan="2">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td><td>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td></tr>
<tr><td colspan="2">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td><td>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td></tr>
<tr><td colspan="2">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td><td>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td></tr>
<tr><td colspan="2">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td><td>환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2">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td><td>환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2">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td><td>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td></tr>
<tr><td colspan="2">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td><td>환수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2">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td><td>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td><td>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td></tr>
<tr><td>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td><td>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td></tr>
<tr><td colspan="2">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td><td>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td></tr>
</table>

[별표 11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제45조의3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삭제>

다.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3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식서비스 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 전략/ 금융/ 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유통/ 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유통물류응용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부가 가치/ 사후 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전자무역서비스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연구 개발/ 엔지 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디 자 인	제품디자인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 능향상기술		시각디자인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디지털디자인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패션 · 텍스타일디자인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 술		서비스디자인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공간/환경디자인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포장디자인기술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UI/UX디자인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 디자인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4.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시행 2018. 12.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규 제3호, 2018. 12. 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02 - 2110 - 2759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선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특구육성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및 기타 기술료의 징수 등 특례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처리규정 제3조제1항제6호의 특구육성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규정 및 부속규정(지침)을 준용한다.

나. 특구육성사업 시행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평가・선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침의 활용

가. 이 지침을 적용하는 특구육성사업의 기획・평가・선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 생략하는 절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이 지침을 적용하는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1) “특구육성사업”이라 함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을 말한다.

2) “공공기술사업화”라 함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활동 중에서 특구 내외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구육성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한다.

4) “심의회”라 함은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의 심의, 사업의 자문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기술사업화위원회”라 함은 특구육성사업 중 기술사업화사업(R&BD)의 지정공모과제의 심의·조정, 기술사업화사업(R&BD) 신규과제의 평가결과 심의·조정,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상시위원”이라 함은 기술사업화위원회 위원 중 기술사업화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고정 위원을 말한다.

7) “비상시위원”이라 함은 기술사업화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촉되어 기술사업화위원회의 특정 회의에만 참석하는 임시위원을 말한다.

8) “평가위원회”라 함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제의 선정평가, 연차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9) “실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물(특허 등)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0)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1)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2) “수행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및 참여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4)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15)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기획위원회”라 함은 특구육성사업의 과제 발굴을 위해 기술성·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공모 과제를 기획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7) “기술사업화사업(R&BD)”이라 함은 특구육성사업 중 기술이전 사업화(특구기술사업화),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을 말하며, “과제”라 함은 기술사업화사업(R&BD)의 신청 및 지원 대상을 의미한다.

18)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정액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20) “경상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나. 협약 관련

1) “일괄 협약” 이라 함은 총 사업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연차별 협약” 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총 수행기간” 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4) “협약기간” 이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5) “연차별 정산” 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다. 평가 관련

1) “신규평가” 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 “진도점검” 이라 함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연차평가” 라 함은 해당 연도 사업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 “특별평가” 라 함은 문제과제,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계속 지원 여부 등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5) “최종평가” 라 함은 총 수행기간의 사업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6) “성과활용평가” 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청과제” 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8) “신규과제” 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9) “완료과제” 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0) “조기완료” 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종합평점” 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5. 추진절차

※ 지정공모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지정공모 대상 과제를 확정한 이후 사업공고에 포함할 수 있음

- 1) : 기술사업화사업(R&BD)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고 실시
- 2) : 기술사업화사업(R&BD)은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확정, 이외의 사업은 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확정
- 3)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4)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추진체계

가. 심의회

1) 구성 및 임기

가) 특구육성사업 심의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심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국장과 다)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 특구육성사업 심의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마)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바)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담당 과장이 된다.

2) 기능

가)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의 심의·조정

나) 특구육성사업 점검·자문

(1) 특구육성사업 수행실적 점검(필요시)

(2) 특구육성사업 수행방향 자문(필요시)

3) 운영

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 심의·조정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기술사업화위원회

1) 구성 및 임기

가) 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장이 구성하고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한다.

나) 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장 직속으로 하며, 전문기관 소속 본부장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하여 특구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상시위원과 10인 내외의 비상시위원으로 구성한다.

라) 상시위원은 기술분야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하며, 비상시위원은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분야 또는 사업화전문가(기술사업화, 재무, 회계, 법률, 마케팅, 디자인 등)를 추가로 위촉한다.

마)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민간인을 공개 선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기술사업화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특구육성사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특구육성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문할 수 있는 자

(3) 특구육성사업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4) 상시위원은 원칙적으로 특구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자로 하나 특구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자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

바) 위원장은 상시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경우 차기 위원 선정시까지 60일 이내에서 기존 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아)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기능

가) 특구육성사업 중 기술사업화사업(R&BD) 심의·조정

(1) 지정공모 대상과제 기획결과(지정공모 시행시)

(2) 신규지원 과제 평가결과

나)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다) 특구육성사업 프로그램(또는 과제)의 자문 등

3) 운영

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 회의는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시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시위원의 제척사유 발생 등 상시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시 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심의·조정안건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간사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업성 평가결과 등 심의·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바) 안건의 심의 시 위원장, 상시위원, 비상시위원은 동등한 표결권을 가진다.

사) 위원장은 의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사업화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아) 전문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위원회를 운영하는 때에는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한 위원

(2)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

다. 평가위원회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신규과제의 선정평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나)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또는 과제를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특구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기술사업화사업(R&BD)의 신규과제 선정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역특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가) 처리규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단·관련부처 평가단 위원, 1명 이상의 기술사업화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제전문가 등 전문가 1명 이상

(2) 연차·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중 2명 이상

(3)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

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간사는 해당 연구개발특구본부의 담당자로 하되, 통합 운영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업 또는 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처리규정 제17조제12항에 따른 별표1의 평가위원 제외대상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한 위원

(2)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위원

바) 위원장은 의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사)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전문기관

1) 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처리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신규과제 평가계획, 과제의 선정・연차 및 최종평가 결과

나) 사업비 정산・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을 종합한 결과

마. 주관기관

1) 자격

처리규정 제3조제1항6호의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주관기관의 자격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능(권한과 책임)

가) 주관기관은 처리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나)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관

1) 처리규정 제3조제1항6호의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참여기관의 자격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참여기관은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가)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나) 민간부담을 의무화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다)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라)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마)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사. 실시기관

1) 해당과제의 사업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총괄책임자

1)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2)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나) 사업비의 사용 발의

다)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라) 수행과제의 연차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마)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바)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사)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7. 지원과제의 발굴(지정공모 시행할 경우 적용)

가. 지정공모과제의 발굴

1)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술사업화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이때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과제의 발굴 등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안하는 기술의 사업목표 및 내용

나) 제안하는 기술의 동향 및 파급효과

3) 기획대상 후보과제의 발굴기획위원회는 기술로드맵, 기술 및 시장 동향, 기술수요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후보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획대상과제의 선정

기획위원회는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5) 과제기획의 수행

기획위원회는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6) 과제기획 검증 및 우선순위 도출

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과제기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나) 기획위원회는 가)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7)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사업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연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가.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1)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발굴한 지원대상과제를 참고하여 해당년도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특구별·사업별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시행계획에는 처리규정 제1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고 및 과제 신청

1) 사업계획의 공고

가) 장관은 8.가.2)항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고시 처리규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접수방법, 접수기간, 접수 및 문의처, 기타 안내사항 등에 대해 제시한다.

다)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2) 과제의 신청

가) 신청기관은 세부사업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9. 기술료율

가.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료 징수 여부, 징수 방식 및 기술료율에 대해서는 처리규정을 적용하며, 상세 사항은 사업 공고 시 정한다.

10. 신규평가

가. 사전 검토

1) 제출서류 검토

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2) - 마)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1)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1)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3)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바) 과제 참여율 등

(1)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참여연구원(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4) 처리규정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3) 우대 및 감점 기준 반영

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기준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7.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예외로 인정된 기업 8.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예외로 인정된 기업
조치	◦ 주관기관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나)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면담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방문 면담을 할 수 있다.

나. 신청과제 평가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신청과제 평가

1) 신규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2) 선정평가에서는 후보과제 및 후보수행기관을 평가하여 탈락과제(60점이하)를 선별하고, 통과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와 의견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사업화사업의 경우 발표평가 이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위원장은 과제를 검토하고, 종합토론을 실시한 후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

가)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1) 우대 및 감점 기준은 처리규정 제17조제12항에 따른 별표2를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시행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평가 시 평가점수에 부여한다.

마.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조정

1)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지원 가능 과제”로 판정받은 과제에 대해 정책방향, 지원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여 “지원과제”로 최종 확정한다.

2)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장)이 참석하여 해당 과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된 과제의 조정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규과제 선정을 보류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으며, 보류된 과제는 차기 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된 과제와 비교하여 선정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선정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바.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처리

1)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종합평점,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사. 사전검토, 신청과제 평가계획 수립, 우대 및 감점기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선정결과의 통보 등 동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처리규정을 따른다.

11. 사업비 산정·조정 및 참여기업 부담금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처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있어 특구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12. 협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 준비

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대표자의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다) 처리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규(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 포함)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서 수정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가)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시에 협약관련 서류와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NO.1~9)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라) 협약의 체결은 필요시 처리규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번호		서류명	작성 방법
협약 관련 서류	1	협약서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체결
	2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제출 전 담당 연구원의 확인 필요
	3	위임장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4	직무발명보상계획서	- 사업결과에 대한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계획서
	5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학석·박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받는 경우
	6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 연구비 부정수급/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자의 윤리이행 서약서(공고시 전문기관이 양식 게재)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	7	사업비 청구서	- 주관기관이 전문기관에 출연금 요청시 제출
	8	사업비 관리통장사본 등	- 수행기관 명의로 반드시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을 의미함)으로 신규 개설해야 하며(원본 대조필 필요),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해당 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추가 제출
	9	인감증명서 (주관기관)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 가능
	10	연구비 카드제 관련 서류	-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제계좌통장 사본 등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협약기간

가)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은 1년 이하 단위로 체결(연차별 협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일괄협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과제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처리규정 제20조에 의해 '과제수행기간의 변경' 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사업종료일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로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변경 절차 및 기준

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변경, 최종 목표의 변경,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당초 사업계획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의 변경, 과제수행기간 변경,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의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등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과제 수행기간의 변경 중 연차별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연구원(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전문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마)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처리규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을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아)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자)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라)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45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5)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3)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제출전, 전문기관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 가입 필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정보 입력필수
최종목표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견적서 및 카탈로그 포함)
과제 수행 기간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간접비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이월(연차별 정산의 경우)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

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가)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10. - 가. - 2) 신청자격 검토”의 사전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바) 해당과제 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상기 1) - 나) 부터 바) 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1) - 가) 부터 바) 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이후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과제의 연차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이후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에 갈음한다.

13. 출연금 지급

가.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3조에 따른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연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문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 등의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정부출연금 잔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의 사업비관리계좌를 지급정지, 계좌가압류, 계좌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을 따른다.

15. 진도점검

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6. 연차평가

가. 연차평가 제출서류 검토

1)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연차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 시 차기연도에 신규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동 지침 10. - 가. - 2)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기관 또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신규평가에 준하여 중복성 검토를 실시한다.

나. 연차평가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일정, 평가기준,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연차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 연차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서면평가, 발표평가, 토론평가 등)를 실시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하거나 현장 컨설팅으로 대체 가능하다.

2)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의 결과를 구분할 수 있다.

가) 계속 :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중단(성실)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다) 중단(불성실) :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라) 조기완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마) 조기완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3)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라.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처리

1)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전문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마. 중단과제의 처리

연차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처리규정 제30조제10항 및 제45조에 따라 제재 및 사업비 환수 기준을 구분하며, 이에 따른 처리 등은 동 지침 22를 따른다.

바. 조기완료과제의 후속 조치

1) 평가결과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의 최종평가는 연차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첨부는 1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책임자는 최종보고서요약을 작성한 후 그 출력물 1부 및 최종보고서 전체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료에 대한 징수, 사용 및 관리는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 연차평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은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사업목표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7. 최종 평가

가. 최종평가 제출서류 검토

1) 주관기관의 장은 총 사업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나. 최종평가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일정, 평가기준,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최종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최종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 등 여러 차례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가) 총괄책임자는 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나)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 및 현장실태조사의 결과를 구분할 수 있다.

가) 혁신성과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나)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사업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다) 성실수행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사업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

라) 불성실수행 : 계획된 최종 사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6) 절대평가 시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산술평균으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는 “혁신성과”, 90점 미만 70점 이상은 “보통”, 70점 미만 60점 이상은 “성실수행”으로 구분하고, 60점 미만의 과제는 “불성실수행”으로 구분한다.

라.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처리

1)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전문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마. 불성실수행과제의 처리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처리규정 제30조제10항 및 제45조에 따라 제재 및 사업비 환수 기준을 구분하며, 이에 따른 처리 등은 동 지침 22를 따른다.

바.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는 동 지침 10. - 라.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18.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을 따른다.

1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가.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는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말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할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말한다.

나.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율에 따라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업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1) 기술료를 납부하는 실시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1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기술료 납부계획서(이하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시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 은행도약속어음

나) 공증약속어음

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라)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3) 소멸시효의 도래 등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신청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나)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다) 기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5)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는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7)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부도・폐업・파산 등 별표 1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8) 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2)항을 준용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에 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9) 정액기술료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간 징수할 수 있다.

10)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실시기관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가 포함된 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간 기술료 납부금액이 총 기술료 납부 한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서식 제2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경상기술료 납부계획서 및 산정내역” 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나)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다)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라)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마)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

11) 전문기관의 장은 10)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현장 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2) 전문기관의 장은 10)항의 매출액 증빙자료가 포함된 기술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처리규정 제38조제10항의 비율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통보한 경상기술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관이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2) 실시기관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3) 실시기관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4) 실시기관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5) 삭제

라.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관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관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관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특구육성사업의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기술료 관련 규정 중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규정을 적용한다.

20.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가.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산업계,학계,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및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 사업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21. 사업결과 활용보고 및 성과활용 평가

가. 사업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1) 최종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업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전문기관에서 안내한 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나. 성과활용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근거로 사업 종료 후 2년 혹은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1)에 의한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상기의 성과활용평가결과를 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2.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가. 문제과제의 처리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배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정밀실태조사 결과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시는 아래 나.에 따라 처리한다.

2) 상기 1)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는 관련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 개최 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처리 시 참조할 수 있다.

나. 제재등급 및 대상

1)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사업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기술사업화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사업화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상기 2)의 기술사업화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기술사업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다. 참여제한

1)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 및 관련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 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라. 출연금 환수

1) 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집행시점 건별로 출연금을 지급 하였을 경우 민간부담 현금에 대한 지분에 대한 잔액을 제외한 출연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아래와 같이 환수할 출연금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

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가)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나)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4)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전체기술료 중 기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잔액기술료를 환수한다.

6)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에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7)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행정행위 등

1)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3. 연구 시설・장비의 관리

가. 연구장비통합관리

1)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이라 함은 부가세를 포함한 개당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사업을 말하며, 장관은 처리규정 제16조에 의한 시행 계획의 공고시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구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장비전문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매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장비정보 등록 및 관리

1)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장비 중 취득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취득 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 - 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단,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한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에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 - input.ntis.go.kr)에 등록한다.

2)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에 한하여 연구장비 구매 후 장비활용 정보수집을 위한 장치를 해당 연구장비에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장치 부착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3)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장비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이때 국가 R&D 정보표준 준수), 수행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는 과제의 경우 협약일(다만, 협약일 이후 별도 심의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결과를 연구개발 시설 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입력하여야 한다.

24. 기타 사항

가. 사업홍보

1)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지원하는 지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표준서식

장관은 동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협약・평가・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호,2018.12.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기술료 납부계획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 제한
연장요청	○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2년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과제	환수	2년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지침 “19.나 7)”에 의해 자체 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이 유예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시 별도의 기술사업화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한다.			

[별표 2] 정액기술료의 세부징수절차 및 기준

<table>
<tr><th>구분</th><th>영리기관의 정액기술료 납부</th></tr>
<tr><td>징수
절차</td><td>① 전문기관은 최종 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주관기관에 통보

② 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

㈎기술료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하는 경우
- 납부액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 ⑴은행지급보증서, ⑵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⑶공증약속어음, ⑷실시기관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 은행도 약속어음, (5)전자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
<예시>
<table><tr><th>확정 통보일</th><th>실시계약 체결일</th><th>약속어음내용</th></tr><tr><td>2012.1.1</td><td>2012.1.31 이전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td><td>○ 2013.1.31자 만기어음
○ 2014.1.31자 만기어음
○ 2015.1.31자 만기어음
○ 2016.1.31자 만기어음
○ 2017.1.31자 만기어음</td></tr></table></td></tr>
<tr><td>예외
기준</td><td>○ 기술료 징수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 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영리기관의 정부출연금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동일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실시기관별 부담비율에 따른다.</td></tr>
</table>

[별표 3] 연구개발비 출연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1.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필요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모 시 본 사항을 사전 제시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처리규정'을 따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www.msip.go.kr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2017. 6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CONTENTS

Ⅰ. 추진 배경 ····· 1

Ⅱ. 목표 및 기본 방향 ····· 2

Ⅲ. 주요 내용 ····· 3

1.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비 관리 ····· 3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 5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9

4. 주요 주체별 권한 및 책임 ····· 23

Ⅳ. 행정 사항 ····· 24

〈참고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 25
〈참고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26
〈참고 3〉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31
〈참고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 40
〈참고 5〉 연구참여확약서 서식 ····· 41

Ⅰ 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창의적 혁신적인 연구성과의 창출은 연구자가 연구 외적인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극대화
- 특히, 연구비 사용 및 정산과정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관리기준과 과도한 서류제출로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 및 부담 감소 필요

 ※「공동관리규정」을 통해 범부처에 공통 적용되는 연구비관리기준을 제시하나, 19개 R&D 관련 부처별로 소관 훈령 등을 통해 상이한 세부기준을 제정·운영 중

- 연구현장의 혼란방지 및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는 범부처 공통 연구비관리 매뉴얼 마련 추진

◈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6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 추진 경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13.1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제1차 개정('14.4)
 - 용어 정의, 사용용도별 인정기준 등 보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제2차 개정('14.11)
 - 연구비 지급방식, 계상기준, 정산절차 및 증빙서류 등 표준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제3차 개정('15.7)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적용시 혼란 야기분야 보완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제4차 개정('17.2)
 - 학생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및 혼란 감소를 위한 기준 명확화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제5차 개정('17.6)
 - 중앙행정기관 승인사항 구체화 및 외부인건비 지급대상 명확화 등

Ⅱ 목표 및 기본 방향

◈ 연구비 관리의 범부처 기준(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산을 통하여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뽑기와 창의적 연구 몰입도 향상 추진

1 목표

- (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 연구비관리의 상이한 규정을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연구관리 부담을 완화
- (연구관리 규제효과 극대화) 최소한의 규제비용으로 투명한 연구비 집행절차 확립, 내부통제 시스템(회계감사, 집행관리 통제) 확립 지원

2 기본 방향

-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소관 부처에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 적용

 * 특정부처만 운영 중인 사항이라도 투명한 연구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부처 표준 기준에 포함

- 8개 연구비 세목*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사용 표준 기준 제시

 * 연구비 세목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연구비 정산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수서류 위주로 정산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

Ⅲ 주요 내용

1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의 기본원칙

-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당초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필요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
- (증명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연구비를 통해 증명

 * 증명자료는 당해과제 연구종료일로 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가. 연구 시작 단계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자와 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의 관리자를 지정
- 연구비는 금융기관에 연구비계좌를 개설하여 예치
 - 수행연구과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타 자금과 분리된 연구비 통장계좌 개설 가능
- 연구비카드는 연구비계좌와 연결하고, 연구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카드 관리대장 비치

나. 연구 수행단계

- 연구비 사용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구비 관리

《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연구비 집행 증명자료 》

구 분	증 명 자 료
지출 등 결의서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영수증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기타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등

* 연구비 카드로 집행된 경우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카드전표에 한하여 증명자료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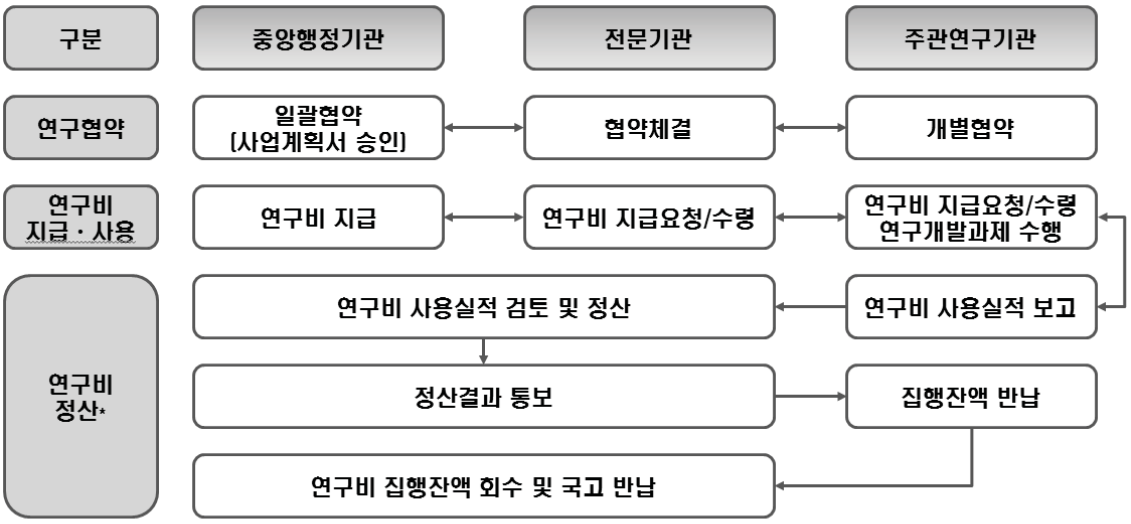
- 연구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역을 연구비 비목을 구분하여 각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입력
- 연구비 집행증명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
- 회계검증관련 부서장은 연구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검사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연구비 집행관련 증명서류는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

다. 연구 종료단계

-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비사용실적을 보고(단, 산업통상자원부 RCMS사업은 2개월 이내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 정산시 필요에 따라 세부비목별 내역서, 증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필요시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검토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과제에 대하여 부당집행 금액을 해당 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확정된 부당집행 금액의 정부지분을 전문기관의 종합관리계좌에 반납토록 조치
-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사용 잔액·이자 및 정산잔액 반납 시 과제별, 기관별(연구책임자별) 반납내역을 구분하여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반납 증명자료를 첨부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가. 연구비 관리 절차 개요



* 연구비 정산 부분은 협약당사자(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사용실적 보고·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조치

나. 연구비 지급

◈ 관련규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연구비 출연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비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됨.
 - 다만,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과제 및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는 예외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은 [참고1]과 같음.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연구비 지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규모, 연구 착수시기 및 정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에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산하는 경우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연구비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

다. 연구비 사용

◈ 관련규정 :「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연구비 사용절차

- 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함.
 -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는 해당 연도 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음.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승인사항

①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②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③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출연금의 이자사용

- 연구개발에 재투자 및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 사용계획이 없는 이자 또는 협약기간 후 발생이자는 중앙행정기관에 반납
-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연구비 관리

-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
 -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
 -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함.
-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함.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음
 - 간접비
 - 직접비 중 인건비
 -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라. 연구비 정산

◈ 관련규정 :「공동관리규정」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 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첨부서류 : ①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②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

-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비를 정산
 - 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

-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연구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비의 10% 이내로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연구과제추진비의 경우 정산 면제 가능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정산 면제 가능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처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회수 제외 금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② 연구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 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부당 집행 금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 비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당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제12조의3 제1항의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⑦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⑧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⑨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⑩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1 인건비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 정의 》

구 분	정 의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산정기준 》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①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③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④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 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 인건비	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⑨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⑪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공통 (내·외부인건비)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2 학생인건비

●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박사후연구원 포함)

*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 계상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 180만원, 박사과정 :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 확약서(참조 5) 작성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단,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연구참여확약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그 외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참여확약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3 연구장비·재료비

●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범용성 장비·소프트웨어는 원래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

※ 범용성장비 : 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 범용성소프트웨어 :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단, 개인용 컴퓨터 구입의 경우 비영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인정하며,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
-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보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협약 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 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포털(ZEUS)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계정대체 가능)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장비·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⑦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⑧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⑨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4 연구활동비

● 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한다.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

 *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 핵심·원천특허 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전략'으로 지칭됨.

《 부처별 연구활동비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

부 처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자유치 및 파견지원금
산업통상자원부	• 창의활동비(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 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창작관련분야) • 연구인력 활용비(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 컨설팅비
중기청	•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규정이 있는데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여비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하여 여비를 과다 계상해서는 안되며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여비	①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③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④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③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연구원장, ○○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⑧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정산시 제출서류

《 연구활동비 정산시 제출서류 》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구 분	증 명 자 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기술정보 수집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논문 게재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특허 정보 조사비 등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5 연구과제추진비

- 정의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국내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규정이 있는데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여비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하여 여비를 과다 계상해서는 안 되며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④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 구입 · 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①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2014. 8. 12 이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 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①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③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④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국내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①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관련 서류 ③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도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② 카드매출전표	
연구환경 유지비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6 연구수당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 (계상기준)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

※ 중소기업청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 가능하도록 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⑥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 정산시 제출서류

구분	증명자료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 (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7 위탁연구개발비

● (정의)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계상기준)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위탁연구 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위탁연구 개발비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8 간접비

● (정의)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계상기준) 직접비(미지급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간접비 계상기준》

기관구분	간 접 비	비 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직접비 × 10% 이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을 계상
-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 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2017.11.9.부터 시행)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까지 계상·사용 가능)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4 주요 주체별 권한 및 책임

- 연구기관장 :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 관리 책임
 - 연구비의 관리자 지정
 - 연구비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 협동(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회수 및 결과 보고
 -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 연구비관리자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비 관련 실무처리
 - 연구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운용
 - 금융기관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명서류 등의 보존을 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보존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
- 회계감사부서장 : 회계감사 및 집행관리를 통한 철저한 연구관리
 - 연구비 사용에 대한 일상감사 및 자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연구책임자 :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인센티브 배분 결정

Ⅳ 행정 사항

- (협조요청 사항) 연구사업 수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매뉴얼의 연구현장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 연구사업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

참고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 부담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참고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장비·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 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는 2017.11.9일 부터 시행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	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2017.11.9일부터 시행)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3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16.12.3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3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3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5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3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종전 고시 적용) 간접비 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2호(2015. 12. 31.) 〔별표 1〕의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2016.12.30. 현재 기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0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7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19
	한국천문연구원	45.4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0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14
	한국한의학연구원	31.4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6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5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6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8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0
	한국식품연구원	10.3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75
	한국기계연구원	13.4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3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6.43
	한국전기연구원	13.34
	한국화학연구원	19.27
	한국원자력연구원	19.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52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6개)	국가핵융합연구소	25.3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9.95
	세계김치연구소	21.71
	재료연구소	9.70
	안전성평가연구소	17.99
	극지연구소	29.01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한국과학기술원	26.42
	광주과학기술원	23.9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8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5.47
	한국원자력의학원	35.9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6.83
	한국연구재단	14.9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1.6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28
	한국세라믹기술원	21.0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6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 간접비 비율 변경(21.62%→12.46%) 고시 추진 중

3.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원 (13개)	다이텍연구원	21.25
	전자부품연구원	25.44
	자동차부품연구원	22.58
	중소조선연구원	16.83
	한국광기술원	20.79
	한국니트산업연구원	18.51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1.1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96
	한국섬유기계연구원	21.03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2.77
	한국실크연구원	13.73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1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53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20.62
	대한전기협회	10.28
	삼성서울병원	20.5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4.09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18.57
	한국선급	35.00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2.73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7.80	31	군산대학교	22.86
2	가톨릭대학교	29.80	32	극동대학교	26.90
3	가톨릭관동대학교	29.90	33	금강대학교	27.00
4	강릉원주대학교	30.50	34	금오공과대학교	26.20
5	강원대학교	27.71	35	나사렛대학교	28.00
6	건국대학교	25.38	36	남부대학교	21.83
7	건양대학교	29.00	37	남서울대학교	19.17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4.90	38	단국대학교	28.00
9	경기대학교	27.25	39	대구가톨릭대학교	30.00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8.00	40	대구교육대학교	22.53
11	경남대학교	30.00	41	대구대학교	29.00
12	경북대학교	30.60	42	대구한의대학교	28.00
13	경상대학교	30.70	43	대림대학교	25.77
14	경성대학교	28.90	44	대전대학교	30.00
15	경운대학교	26.00	45	대진대학교	29.00
16	경인교육대학교	30.00	46	덕성여자대학교	29.00
17	경일대학교	30.90	47	동국대학교	29.00
18	경희대학교	28.22	48	동덕여자대학교	21.94
19	경희사이버대학교	10.82	49	동명대학교	28.00
20	계명대학교	31.00	50	동서대학교	29.00
21	고려대학교	29.50	51	동신대학교	20.59
22	고신대학교	23.77	52	동아대학교	30.00
23	공주대학교	28.00	53	동양대학교	23.23
24	공주교육대학교	29.00	54	동양미래대학교	20.23
25	광운대학교	28.90	55	동의대학교	30.00
26	광주교육대학교	20.10	56	명지대학교	24.58
27	광주대학교	27.00	57	명지전문대학교	23.88
28	광주여자대학교	29.00	58	목원대학교	27.00
29	국민대학교	29.00	59	목포대학교	25.25
3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3.44	60	목포해양대학교	19.35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61	배재대학교	29.00	93	순천향대학교	23.41
62	백석대학교	27.00	94	숭실대학교	28.70
63	백석문화대학교	21.54	95	숭실사이버대학교	24.76
64	부경대학교	29.00	96	신라대학교	28.00
65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97	아주대학교	29.50
66	부산대학교	27.40	98	안동대학교	26.42
67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99	안양대학교	20.83
68	부천대학교	10.09	100	연세대학교	27.28
69	북한대학원대학교	10.76	101	영남대학교	29.00
70	삼육대학교	27.00	102	영산대학교	27.00
71	상명대학교	29.00	103	용인대학교	28.00
72	상지대학교	26.00	104	우석대학교	27.90
73	서강대학교	26.87	105	울산과학기술원	31.00
74	서경대학교	20.24	106	울산과학대학교	26.00
7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0	107	울산대학교	28.70
76	서울교육대학교	31.00	108	원광대학교	29.00
77	서울대학교	30.10	109	위덕대학교	27.00
78	서울시립대학교	20.96	110	을지대학교	16.38
79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1	이화여자대학교	28.70
80	서원대학교	26.27	112	인덕대학교	27.00
81	서일대학교	18.83	113	인제대학교	28.80
82	선문대학교	26.44	114	인천대학교	30.00
83	성공회대학교	27.00	115	인하공업전문대학	18.45
84	성균관대학교	31.00	116	인하대학교	31.00
85	성신여자대학교	29.00	117	전남과학대학교	21.99
86	세명대학교	22.21	118	전남대학교	30.00
87	세종대학교	29.00	119	전북대학교	28.70
88	세한대학교	29.00	120	전주교육대학교	29.00
89	수원대학교	30.00	121	전주대학교	28.00
90	수원여자대학교	20.29	122	제주대학교	28.07
91	숙명여자대학교	31.00	123	제주한라대학교	26.00
92	순천대학교	21.19	124	조선대학교	29.90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25	중앙대학교	25.16	148	한국외국어대학교	29.00
126	중원대학교	27.00	149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127	진주교육대학교	26.00	150	한국체육대학교	29.00
128	차의과학대학교	23.91	151	한국항공대학교	29.00
129	창원대학교	28.90	152	한국해양대학교	29.00
130	청운대학교	27.00	153	한남대학교	27.35
131	청주교육대학교	27.00	154	한동대학교	23.24
132	청주대학교	21.55	155	한라대학교	28.90
133	춘천교육대학교	27.00	156	한림대학교	26.92
134	충남대학교	24.82	157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8.42
135	충북대학교	27.90	158	한림성심대학교	22.70
136	평택대학교	30.00	159	한밭대학교	30.00
137	포항공과대학교	30.00	160	한서대학교	25.77
138	한경대학교	20.00	161	한신대학교	28.00
139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2	한양대학교	28.42
140	한국교통대학교	28.36	163	한양사이버대학교	10.59
141	한국국제대학교	20.26	164	한양여자대학교	29.00
14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4.43	165	한일장신대학교	22.84
143	한국농수산대학	3.00	166	협성대학교	27.00
14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7.00	167	호남대학교	28.00
14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83	168	호서대학교	25.13
146	한국성서대학교	15.66	169	홍익대학교	28.00
147	한국예술종합학교	27.00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 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참고 4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43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시행 2013. 8. 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3호, 2013. 8. 6., 폐지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부 칙 〈제2013-43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3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3호)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참고 5 연구참여확약서 서식

연구참여확약서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과정 () 학기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참여정보

가. 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다. 월 참여율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액 : 월 원(세금 포함)

마.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위와 같이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키로 합의하며, 계정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며 이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연구참여기간은 가능한 학기(6개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을 권고함
-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학생연구원이 담당업무(역할)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책임자는 동 확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동 서식은 필요시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연구제도혁신과

문 의 처 : R&D 도우미센터
홈페이지 : www.rndcall.go.kr
전화번호 : 1800-7109(친한연구)
02-589-2253(KISTEP 규제개혁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ISTEP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은 제재조치 과정에서 참고 가능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제재조치 대상·방식·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 부처별 근거 법률에 따라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Contents

제1장 제재조치 개요 ····· 1

제1절 법적 근거 ····· 1

1.「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 1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내지 제27조의5 ····· 2

3. 부처별 세부규정 ····· 5

제2절 연혁 ····· 6

제3절 주요 용어 ····· 7

1. 국가연구개발사업 ····· 7

2. 참여제한 ····· 7

3. 회수 ····· 7

4. 사업비 환수 ····· 10

5. 제재부가금 ····· 10

6. 연구부정행위 ····· 10

제4절 해외 동향 ····· 12

1. 미국 ····· 12

2. 일본 ····· 14

제2장 제재조치 ····· 15

제1절 제재조치 주체 ····· 15

제2절 제재조치 대상 및 기준 ····· 15

1. 범위 ····· 15

2. 기준 ····· 16

3. 승계 여부 ····· 18

4. 제재조치 처분시 감면 기준 ····· 19

제3절 제재조치 평가단 ····· 19
1. 제재조치 평가단의 역할 ····· 19
2.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 20
제4절 제재조치 절차 ····· 21
1. 절차 개요 ····· 21
2. 처분 사전통지(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 21
3. 이의신청 ····· 22
4. 제재조치 통보 ····· 23
5. 제재조치 등록(참여제한 등) ····· 26
제5절 참여제한의 효력 ····· 27
1. 참여제한 기산일 ····· 27
2. 참여제한 기간 합산 ····· 28
3.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한 조치 ····· 30
4. 과제참여 가능 시점 ····· 30
제6절 사업비 환수 ····· 31
1. 환수 대상 ····· 31
2. 환수금 납입 ····· 31
3. 연구장비 등 현물환수 가능 여부 ····· 31
4. 환수금 납부 기한 ····· 32
5. 환수금 납부기한 연장기준 및 절차 ····· 32
6. 환수금 기한 내 미납 시 처리 ····· 33
제7절 국세체납처분 ····· 33
1. 국세체납처분의 개념 ····· 33
2. 국세체납처분 절차 ····· 34
3.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 35
4. 환수금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 37
5. 소멸시효 ····· 38

제8절 제재부가금 절차 ····· 39
1. 처분 대상 ····· 39
2. 납부 기한 ····· 39
3. 수납 후 처리 ····· 40
4. 기한 내 미납 시 처리(사업비 환수 절차 참고) ····· 40
5. 소멸시효 ····· 40

제3장 제재조치 사유별 처분기준 ····· 41

제1절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 41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된 경우 ····· 43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44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45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6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46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47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48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9

제2절 제재부가금 ····· 50
1. 산정 기준 ····· 50
2. 가중 ····· 50
3. 감경 ····· 51

제1장 제재조치 개요

제1절 법적 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부정, 사용용도 외 사용 등에 해당하면 5년(동일 참여제한 사유 최대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제1항)

-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제7항)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4, 제27조의5

- (제27조)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감액 등에 관한 기준
- (제27조의2)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기준
- (제27조의3)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 (제27조의4)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 (제27조의5) 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절차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능

3. 부처별 세부규정

각 부처별 세부규정은 상위 근거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함

부 처	세 부 규 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산림청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경찰청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상위 근거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상위 근거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절 연혁

- ’01. 12월 국가R&D사업 제재 근거 마련
 - 참여제한 최대 2년 → ’05. 3월 최대 3년 → ’08. 5월 최대 5년으로 확대(공동관리규정 제20조)
- ’05. 3월 참여제한 정보 공동관리
 - 국가과학기술정보망 → 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 ’10. 2월 사업비 환수 제도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신설(참여제한 내용 포함)
- ’14. 5월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 및 제재 대상 확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시 사업비 환수 외 징벌적 과징금 부과(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기업 → 참여연구원, 단체, 소속 임·직원 추가
- ’14. 12월 환수금 미납 시 강제 징수 근거 마련* 및 환수금 처분 승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양도, 합병 시 양수자 또는 합병 기업에게 미납 환수금 처분 승계
- ’15. 6월 환수금 미납 시 제재근거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15. 12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기간 확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16. 7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처분 세부 기준 마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 ’17. 5월 제재조치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 신설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3절 주요 용어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2.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 사용 등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참여제한 제도의 취지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협약해약(공동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9호) 또는 협약변경(공동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을 고려해야 함

3. 회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① 연구개발비에서 공동관리규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사용잔액이 있거나,

② 공동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공동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부당집행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 제4항)

>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생략)

● 부당집행금액은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에 명시되어 있음

-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명시된 내용 중, 사안에 따라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라면 '용도외 사용'으로 보고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연구비를 해당 과제 연구 수행에 사용하였으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규정위반 등의 사안은 제재조치대상이 아니며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 '2.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해야 함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4. 사업비 환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재조치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에 의한 사업비 환수는 제재조치에 해당함

5. 제재부가금

-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 환수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 용도 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

6.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제3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

 ※ 이외에도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7호)'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제재심의 대상이 됨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위력행사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 등에 대한 심사가 부실하거나 조직위원, 심사위원 등이 부재하거나 저명한 연구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하는 등의 부실한 학회에 연구자가 고의적·반복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판명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특허의 발명자 및 출원인 등에서 제외하고 성과물을 독점하는 행위
 - 이외에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및 기관 자체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제4절 해외 동향

1. 미국

가. 참여제한

- 정부R&D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조금 및 용역(Grants and Agreements) 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운영
- 정부R&D의 경우 연방정부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비-조달형 계약(non-procurement transaction)으로 구분

 * 연방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제정된 연방행정법규 및 규칙은 미국 연방 전체에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계약자가 조사 또는 법적인 절차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suspension)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debarment)할 수 있음 (2 CFR part 180)

 ※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 용도외 사용(false claim) 포함됨

-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美 법무부 감찰국(OIG;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또는 美 사법부(DOJ; Department Of Justice)에서 참여제한이 되는 사업의 범위 및 기간 등 결정

 ※ 참여제한 기간은 통상 수년으로 결정되나 영구적인 참여제한도 가능

미국의 주요 참여제한 사유

(a) 다음의 사유로 형사 상 유죄판결(conviction) 또는 민사 판결(civil judgement)를 받은 경우
(1) 공공·민간 계약·거래계약의 체결 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사기(fraud) 및 범죄행위(criminal offense)
(2)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정하는 반독점규정의 위반
(3) 횡령(embezzlement), 절도(theft), 위조(forgery), 뇌물(bribery), 변조(falsification), 기록삭제(destruction of data), 입출금내역 허위생성(making false statements), 조세포탈(tax evasion), 장물취득(receiving stolen property), 허위청구(making false claims), 재판방해(obstruction of justice)
(4) 기타 진실성 또는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행위
(b) 다음과 같이 공공계약 및 거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의 무결성에 큰 손상을 준 경우
(1) 하나 이상의 공공계약·거래의 계약조항을 이용해 고의로 실패한 경우
(2) 하나 이상의 공공계약·거래에서 실패하였거나 낮은 성과를 낸 경우

(3) 공공계약·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구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이 하 생 략 –

나.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 美 연방정부계약에서의 '허위청구(False claim)'가 우리나라의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따른 제재조치인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유사한 개념으로,

- 허위청구를 한 경우 형사상 책임 등과 별개로 Contract Dispute Act (41 USC 7103)에 따라 허위청구금 상당액을 배상하고, False Claim Act (31 USC 3729)에 따라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을 부담하며, Forfeiture (28 USC 2514)에 따라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제재조치를 받게 됨

 * 행정기관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형벌의 일종이 아닌 금전벌
 ** 해당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시켜 부당이득 혹은 기존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등을 불허

-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계약자가 청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것이 사실의 잘못된 제시(mis-presentation of fact)나 사기(fraud)에서 비롯된 경우 연방정부에 청구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역으로 美 정부에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음

② 계약자가 알면서(knowingly) 허위청구를 하거나 청구에 필요한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000달러 이상 10,000달러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美 정부 손해액 3배(일부 조건 충족 시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됨

 ※ 각 연방기관에 설치된 감찰관실(OIG)의 조사에서 허위청구가 발견되는 경우 통상 사법부(DOJ)로 이관되고 DOJ가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 DOJ가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15만 달러 이하의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연방기관이 환수하는 것이 가능 (34 CFR Part 33)
 ※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은 1863년 링컨 대통령 시기에 제정되어 일명 '링컨법'으로 불리는데, 내부고발자 등 개인 및 美 연방정부 모두가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

③ 계약자가 美 연방정부에 대해 증거, 진술 등에 있어서 부정하게(corruptly) 기망(fraud)을 행하거나 행하려고 한 경우 그 사람의 청구권은 상실됨

2. 일본

가. 참여제한

-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보조금취급규정(科學究費補助金取扱規程)”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학연구비보조금사업의 참여를 제한 (기금 등의 다른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① 과학연구비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1~10년

 ② 전호의 관련자와 과학연구비보조금 부정사용을 공모한 사람 : 전호의 기간과 동일

 ③ 과학연구비보조금의 교부가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과학연구비보조금을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다하지 못한 보조사업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1~2년

 ④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과학연구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에 공모한 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5년

 ⑤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람(해당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 논문 등에 대한 책임자를 포함)은 부정행위가 인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10년

※ 일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날조, 변조, 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과학연구비조성사업 운영방침)을 두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

나. 사업비 환수

-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보조금사용에 대해 연구기관의 사무(科學研究費補助金の使用について各研究機?が行うべき事務等)”에 따라,
- 연구기관은 연구자를 대신하여 연구비에 대한 관리 및 연구비 사용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비 적정집행을 위한 사무체제 정비 및 검수 등을 담당하는데,
-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혐의가 있고 연구기관이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부적정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부과학대신에게 반환

제2장 제재조치

제1절 제재조치의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없는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조치 처분·통보·관리 권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음*
 - 단, 제재조치 업무 중 하나인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8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제재 참여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

제2절 제재조치 대상 및 기준

1. 범위

- 제재조치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모두 제재조치 가능
 - 단,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는 ‘출연하거나 보조한’ 기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그 기관에 속한 개인에게 할 수 없음

※ 각 기관·기업에 대한 정의(공동관리규정 제2조)

기관	정의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2. 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중 위반행위에 귀책이 있는 자에게 제재조치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 제1항

>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생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제1항

>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생략)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제1항

> 제29조(제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생략)

나. 기관·단체·기업/연구책임자·연구원·소속임직원에 따른 제재조치

- 제재조치 평가단이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참여제한 기간, 대상, 환수여부 등 제재조치 내용을 정하며, 제재대상의 특성 및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연구자,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

- 귀책이 있는 기관단위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참여제한 할 수 있음

 - 즉 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를 참여제한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해당 사업에 참여한 단위*를 참여제한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야함

 * 독립된 법인격 없는 사업장, 지사, 산하 연구소 등이 협약상 수행기관이 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그 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를 참여제한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이는 제재처분을 받은 기관과 실제 동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참여제한 효력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임

 -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나 제재처분을 받았던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혹은 실소유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설립법인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 만약, 어떤 회사가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전 회사의 주요자산, 장비, 시설, 거래처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상 형태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을 설립한 경우라면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기존법인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은 신규법인에 미칠 수 있음

다.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 제재조치 대상자 선택 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의 주관청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에게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함

3. 승계 여부

가. 근거 조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나. 승계 대상 : 사업비 환수 대상인 기관, 단체, 기업인 경우에 한정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 규정이 없음

다. 승계 사유 :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

* 법인합병 내역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함

라. 제재 처분 효력의 승계

- 법인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처분의 효력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되며(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제재 처분 사유는 발생하였으나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 실제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자에 대한 제재 처분사유가 양수자(합병되는 법인 포함)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함

 * 어떤 회사가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전 회사의 장비, 시설, 거래처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영업양도'로서 신규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새로운 신규법인에 대하여 제재조치의 효력 승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마. 개인 사망의 경우

- 개인이 사망한 경우 참여제한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의무는 제재처분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원칙상 사망한 연구자의 상속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횡령·편취 등 개인이 금전상 이익을 취한 부분 등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자가 납부의무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임

4. 제재조치 처분시 감면 기준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 과제로 결정되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에 따라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으로 인정된 경우
- 사업비 환수금 또는 미납 기술료를 제재심의 이전에 자발적으로 납부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고의성이 없고 위반행위로 인한 사적 이익이 없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
-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를 포함하여 그간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3절 제재조치 평가단

1. 제재조치 평가단의 역할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제재조치 평가단은 제재 사유 발생 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 환수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등을 심의함

※ 부처에 별도의 근거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내용에 따라 심의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단, 공동관리규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운영이 권장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 및 제27조의4 제2항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생략)
>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재조치 세부기준별로 제재조치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를 거친 후 처분하여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제한 시작일 재조정을 위하여 종전

처분을 철회하고 재처분을 하거나 처분 경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인 사항이지 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조치위원회, 농촌진흥청은 제재심의위원회 등으로 명명

2.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 공동관리규정에서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 및 제27조의4 제2항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⑥ (생략)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
>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생략)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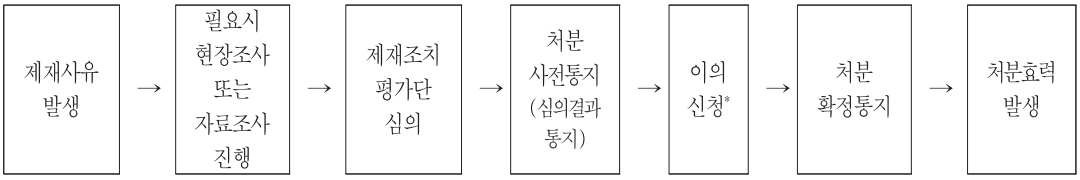
- 각 부처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제재조치평가단을 구성해야 함. 특히 제재 심의시 적정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전문가를 제재조치평가단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함

-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제재조치평가단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제재심의 안건은 제재조치평가단 위원이 사실관계, 관련판례, 유사 처분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최소 2일전에 위원에게 제공하고 이 경우 제재심의 안건의 보안을 위해 전문기관이 안건의 개요 또는 심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받을 것을 권장함

제4절 제재조치 절차

1. 절차 개요



※ 행정절차법 상에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로 규정함[1)]

※ 처분확정 통지가 처분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로 참여제한 기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참여제한 기산일 이전에 지체없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입력해야함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2항)

2. 처분 사전통지(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 후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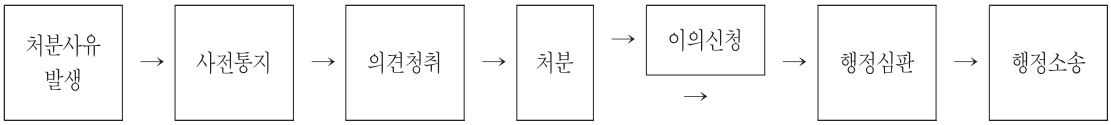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사전통지 없이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시부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 처분 사전통지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처분의 제목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6. 의견제출기한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참고: 행정처분 절차 -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단계가 제재조치 절차의 ‘이의신청’ 단계에 해당함



- 처분 사전통지는 확정 처분 전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통상의 평가결과 통보와 달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해서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처분 대상자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등 제재조치 처분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3. 이의신청*

* 행정절차법 상에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로 규정함

가. 근거규정

- 공동관리규정은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7항)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

 - 행정절차법(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함

나. 이의신청 기한

- 이의신청의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그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줄 것을 권장함

다.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여 제재 내용을 재검토한 후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 처리 방식 등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 일반적으로 제재조치 평가단이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도 심의하고 있음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①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고(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 ② 제재조치 후 1년 이내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하므로(동법 동조 제6항) 해당 서류·물건을 보관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제재조치 통보

가. 문서에 의한 통보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따라서 문서로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통보함이 바람직함

 -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적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 공문표지에 처분의 근거, 참여제한·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자 특정, 처분 이유 및 사유, 불복절차 안내 등의 사항을 기재함(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

나. 통보 대상자

-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함
 - 예를 들어 총괄책임자에게 참여제한 3년을, 주관연구기관에게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를 통보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통보와 별도로 총괄책임자 개인에 대한 문서 통보를 하여야 함

다. 문서 송달 방식

- 문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능함
-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
- 교부 송달
 - 송달 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문서를 송달 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송달 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송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하도록 협약 내용*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약 내용 예시

① 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나 수신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기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전자문서 방식의 통지, 통고는 다음 각 호 주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한다.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발송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등록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 전자우편주소 등을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필요함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의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미확인 등의 상황을 줄이기 위하여 SMS(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공문 확인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가능한 우편송달을 함께 하는 것을 권고함

● 공시송달

-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송달의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

●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참여제한 기산일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부처에서 별도의 기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을 고려하여 제재처분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정함

5. 제재조치 등록(참여제한 등)

- 제재조치(참여제한, 사업비환수, 제재부가금) 처분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해당 제재조치 사항을 통보하여야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2항).

- 제재처분을 한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처분확정 통지가 처분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해당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27조 12항)

 - 이때, '지체 없이'의 의미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직후 제재정보를 등록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늦어도 참여제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참여제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참여제한의 실효성을 위한 것임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정보를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제재조치 사항이 통보된 것으로 봄

- 제재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자체적으로 제재처분에 관한 정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정보를 등록한 관련 기관(전문기관 등)은 등록한 정보의 누락과 오류 여부 등을 NTIS의 검증기능을 통해서 분기별로 확인하고 수정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2항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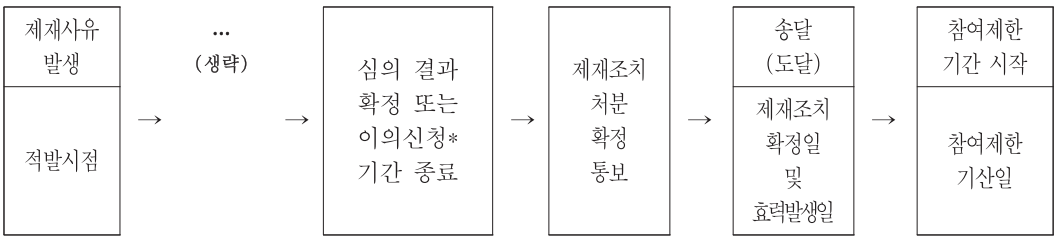
제5절 참여제한의 효력

1. 참여제한 기산일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를 통보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 심의 결과 절차가 종료된 시점) 이때 비로소 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며, 이에 따른 처분서가 송달된 날에 참여제한 처분이 최종 확정
- 참여제한의 효력은 처분확정 통보서가 송달된 때 발생하는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에서 송달 시 효력발생일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을 고려하여 제재처분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봄. 이때 참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참여제한 기산일로 정하여 처분해야 함
- 이미 다른 과제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다면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참여제한 기산일을 정해야 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4의2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 1. 적용기준
>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이의신청 절차가 사전통지 및 그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참여제한 기산일은 처분확정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로 산정하고, 참여제한 기산일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입력해야함

2. 참여제한 기간 합산

가. 참여제한 기간 합산 원칙

- 제재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의 과제에서 복수의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년(과거에 동일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유별 기간 합산 가능
- 제재조치평가단은 하나의 과제에서 하나의 제재사유만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제재사유 전부에 대해 심의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를 부과해야 함
- 다수의 과제에서 각각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제재사유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각각의 각 과제별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참여제한을 부과해야 함
- 이미 다른 과제에서 받은 참여제한 기간 진행 중에 새로운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되도록 함

나. 참여제한 기간 합산 예시

① (CASE1) A연구자가 '나'과제를 수행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와 제7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음. A연구자는 4년 전 '가'과제 수행 중 제5호(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사유로 3년의 참여제한을 부과 받은 이력이 있음

⇨ A연구자는 제5호의 사유로 이전에 참여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나'과제의 제5호 위반에 대해서는 별표4의2 2호 나목에 따라 '5년 초과 7년6개월 이내' 참여제한 가능. 제7호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참여제한 가능. 이때 별표4의2 1호 가목에 따라 '나'과제에 대해서는 10년을 한도로 제재조치 가능. 따라서 A연구자는 '나'과제에 대해 제5호,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총 10년 이내에서 참여제한 부과 가능. 이 경우 A연구자의 전체 참여제한 기간은 '가'과제로 인해 받은 참여제한 기간까지 합하여 최대 13년이 됨

과제 (가)	과제 (나)
5호 용도외사용 (3년)	5호 용도외사용(7년 6개월 이내) + 7호 연구부정(3년 이내) = 10년 6개월 이내 > 10년 이내(별표4의2 1호 가목)
총 13년 참여제한 가능	

② (CASE2) B연구자는 ●부처에서 '다'와 '라' 과제를, ▲부처에서 '마'과제를, ■부처에서 '바'과제를 수행 중이었음. 이 중 '다'와 '라'과제에서 제5호 위반으로 각각 참여제한 5년씩, '마'과제에서 제1호 위반으로 참여제한 3년, '바'과제에서 제7호의 사유로 3년의 참여제한 사유가 각각 발생함.

⇨ B연구자는 ●부처에서 참여제한 총 10년, ▲부처에서 참여제한 3년, ■부처에서 참여제한 3년을 합산하여, 총 16년의 참여제한을 받아야 함. 먼저 제재심의가 완료된 ●부처에서 먼저 참여제한 기간을 명시하여 처분하고 이를 NTIS에 지체 없이 등록함. ▲부처은 B연구자에 대한 ●부처의 10년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을 참여제한 기산일로 정하여 3년 처분함. 마지막으로 제재심의가 끝난 ■부처에서는 ▲부처의 3년 참여제한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부처의 참여제한 기산일로 정하여 3년 처분.

※ 이때 각 기관별 동시에 심의가 진행된 결과 참여제한 기산일이 같거나 기간의 중복이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기간을 조정하여 재처분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재조정된 사항을 반영해야함. 단, 이때 참여제한 기간 조정은 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함

●부처 2개 과제 (다, 라)		▲부처 과제 (마)	■부처 과제 (바)
5호 용도외사용 (5년)	5호 용도외사용 (5년)	1호 중단실패 (3년)	7호 연구부정 (3년)
총 16년 참여제한 가능			

③ (CASE3) C연구자는 ●부처 3개 과제, ■부처 3개 과제 총 6개 과제를 수행 중이었음. 6개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적발되어 각각의 과제에서 5년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 6개 과제의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0년의 참여제한을 부과해야함

●부처 3개 과제			■부처 3개 과제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총 30년 참여제한 가능					

3.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한 조치

-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참여를 재고해야함
-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조속히 협약을 해약(공동관리규정 제11조)하여야 함

 ※ 다만 연구의 진척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협약의 해약 시기를 조정하거나 협약 변경(공동관리규정 제10조)을 통해 연구책임자만을 배제 할 수 있음

- 해당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협약변경(공동관리규정 제10조)등을 통해 연구과제에서 배제하여야 함

4. 과제참여 가능 시점

- 과제 참여자 선정 시 참여제한 여부 확인 시점은 신청 마감일 기준이므로, 과제 신청 마감일에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4항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당시 및 평가기간 중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 대상으로 함

 * 공동관리규정 별표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 2. 평가위원 제외대상
>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 여러 과제의 위반행위 발생으로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처분한 이후 일부과제에서 참여제한의 효력이 소멸(취소 판결 확정, 처분취소, 기술료 및 환수금 납부 등)하여 합산된 참여제한 기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참여제한 기산일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기간을 조정하여 재처분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재조정된 사항을 반영해야함

 ※ 이때 참여제한 기간 조정은 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 이므로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함

제6절 사업비 환수

1. 환수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데(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 사업비 환수는 협약 등에 근거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 기업 중 환수사유 발생에 귀책이 있는 기관, 단체, 기업에 부과함

2. 환수금 납입

-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

- 환수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환수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해야하며, 정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함

3. 연구장비 등 현물환수 가능 여부

- 협약에 정한 바에 따르며, 법령이나 규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현금 환수 원칙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금 환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을 환수 가능함을 규정하고, 관리지침에서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 다. 2), 3), 5)

> 2) 환수는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6)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대상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4. 환수금 납부 기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5. 환수금 납부기한 연장기준 및 절차

- 환수금 납부 대상자가 경영 악화 등을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장)은 사유를 판단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지급이행보증보험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시 또는 관리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 다. 6)

> 7) 환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2. 2. ⑥ 중 일부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납부 연장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열위' 또는 '불량'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부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이상 경우 : 열위
> -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미만인 경우 : 불량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6조 제7항

> 제47조(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⑦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제8조 및 사업비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환수금 기한 내 미납 시 처리

- 환수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 때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내로 정함

※ 독촉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①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② 환수 결정 일자 ③ 환수 이유 ④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⑤ 납부장소 ⑥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는 내용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절 국세체납처분

1. 국세체납처분의 개념

가. 체납처분

-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임의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만족을 위하여 자력집행을 행하는 공법상의 절차, 즉 체납자에게 강제이행을 구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의미

나.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 비교

- 국세체납처분 절차는 공법관계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반면, 민사집행 절차는 양 당사자 간 채권자와 채무자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
- 따라서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경우 사법 당국의 협력 없이 스스로 강제적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압류·추심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민사집행 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원을 통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함

다.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의 경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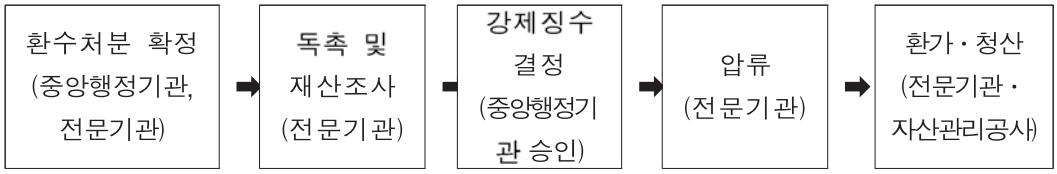
-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은 법률상 대등하므로 상호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두 절차가 경합 시에는 각각 공매와 경매로 진행되어 해당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먼저 납부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라. 환수금의 법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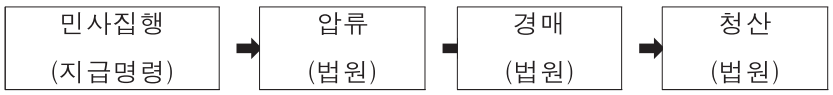
- 공과금이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으로서, 환수처분에 의한 환수금은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1조)

2. 국세체납처분 절차

[1단계]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2단계] 1단계 진행 후 미납액 발생 또는 1단계 진행 불가시 민사집행 절차



※ 1단계 체납처분완료 후에도 압류가 어려워 유체동산 등 추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2단계 민사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요구

※ 압류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능 금액이 집행비용을 넘는 등 강제징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절차를 생략하고 법적조치 5년 유예(중단)

가. 환수처분 확정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환수처분에 따라 확정된 환수금 중 미납액에 대해서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가능

나. 독촉

- 환수처분이 확정된 후 환수금에 대해 독촉 절차를 진행하며, 독촉시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함

- 독촉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

다. 재산조사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체납자에 대해 직접 재산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신용정보조회 기관과 협약체결 후 개인의 상환여력정보 및 기업의 재무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이 체납처분 중)

- 신용정보조회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의 상환여력정보에는 자택정보 이력, 자택식별 요약정보(거주기간, 거주유형, 전용면적, 공시가격, 매매 상·하한가, 전세 상·하한가 등), 자택시세정보, KB아파트상세정보 등이 있음

 - 또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변동(예금거래활동 추정), 자택정보(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변동, 직장정보(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변동을 제공 받아 신용거래활동을 추정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 예금압류 등이 가능

- 신용정보조회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정보로는 주거래 은행(예금채권압류에 활용), 신용등급체계(납부유예 판정시 활용), 경영진 정보, 주주현황(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주요재무정보, 산업재산권, 법정관리 진행상황, 부동산 경매정보(배당금 압류에 활용) 등이 있음

라.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의 말일까지 미납 시 체납처분 대상목록*을 적시한 공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체납처분 승인을 요청

 * (체납처분 대상목록) 해당 과제명 및 과제번호, 기관명 및 사업자번호, 납부기한일 및 미납액 등

- 1명의 체납자가 여러 과제에 연계되어 체납하고 있는 경우 부처로의 승인요청은 과제기준으로 하고, 제재조치평가단의 일정을 고려하여 다수 건을 묶어 월별 일괄 승인요청도 가능

- 체납처분 절차 진행은 체납자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체납자의 과제별 총 체납금을 합산하여 진행

마. 재산압류

- 부동산·차량 등 등기 자산, 채권, 예금, 주식, 무체재산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유형 구분

없이 압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기관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한 예금 가압류와 부동산 경매시 배당금 가압류임

-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조회기관으로부터 부동산경매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신용주체별로 제공받을 수 있음. 채무자가 권리자인 경우 체납자의 배당금 수령액을 가압류하며, 체납자가 의무자인 경우 채무자 소유재산에 대한 경매사실을 파악하여 배당요구·교부청구를 추진할 수 있음

- 재산조사 결과,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포함)이 존재할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우편으로 압류등기 촉탁하고, 관할 등기소로부터 압류등기필 통지(1주일정도 소요)후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통지서 및 압류조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바. 매각 및 청산

-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 재산 및 무체재산권등(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맺어 위탁 처리하는 것이 실효적임

- 전문기관의 집행력을 고려할 때 예금채권에 대한 직접 추심은 어려우나,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한 가압류가 충분히 체납자에 대해 실효성이 있으므로 고액체납이 아닌 이상 가압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심

- 매각이 완료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배분 기일 및 배분계획서를 통보하면 전문기관은 배분희망 계좌정보를 포함한 지급동의서를 회신하여 청산 금액을 배분받음. 이때 체납자가 복수 부처의 과제에 동시에 체납한 경우에는 민법의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이행일(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한 체납금을 먼저 충당

>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4. 전2호의 사항이 같을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가. 중지(국세징수법 제85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사업비 환수 제제처분에 대한 법적 소송 중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환수금 징수 정지 가처분이 있지 않은 이상 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함

나. 유예(국세징수법 제85조의2)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환수금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가. 환수금 납부 대상기관의 폐업·부도 등으로 징수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환수금 납부대상 기관이 폐업, 부도, 파산, 심각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수금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징수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절차의 중지 정보를 내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1년 간격으로 폐업 여부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함
- 징수를 중지한 경우라도, 환수금 납부대상 기관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중지되었던 징수 조치를 개시함
 - 폐업 또는 부도 상태에 빠지더라도 환수대상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래 영업을 개시하거나 자력을 회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환수처분 및 통지, 독촉 등 환수를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진행하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단계를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징수절차 중지 기간 경과 후에도 환수금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등의 상황이 지속되어 징수가 어려울 경우,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별표4

> [별표4]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제48조 제1항 관련)
> 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 · 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음.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3

> 4) 정산금, 환수금, 기술료
> 가) 파산 및 회생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다만 보증보험증권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
> 나)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강제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나. 환수금 납부 대상자의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환수금채권을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을 신고 하여야함
 - 회생채권의 경우 '채권자집회 결의-법원 인가'를 통해 확정된 회생계획안에서 조정된 채권액 및 변제기간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은 소멸
 - 파산채권은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된 채권액이 법원의 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된 채권액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 따라서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액 범위 내에서 환수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생·파산의 경우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만큼을 환수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2] 2 ⑥,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별표1])

5.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단 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민법 제165조)

- 환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고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수 처분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 참고로 상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5년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제8절 제재부가금 절차

1. 처분 대상

- 근거조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7항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제재처분이므로, 용도외 사용 행위의 실질적 주체에게 부과하여 처분함을 원칙으로 함

2. 납부 기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 제2항)

 * 사전통지 통보가 아닌 처분의 확정 통보를 받은 날임

3. 수납 후 처리

-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 제3항)

4. 기한 내 미납 시 처리(사업비 환수 절차 참고)

- 국세 체납처분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근거조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8항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소멸시효

-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권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고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 참고로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 상 제재부가금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부칙[2014.5.28. 제12673호]
>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2011.5.24. 제10708호]
>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2012.12.11. 제11538호]
>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장 제재조치 사유별 처분기준

제1절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처별 근거법률, 운영요령,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

제재조치 사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호)		제재조치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공동관리규정 별표4의2			공동관리규정 별표5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국내로 누설·유출	2년	3년	4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해외로 누설·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환수하지 않음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환수하지 않음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환수하지 않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음(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
- 성실수행이란, 결과적으로는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목표 미달성에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연구수행 과정 및 방법이 성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 성실수행의 인정기준(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2)

 1. 당초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대비 기술개발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목표 대비 성취도
 - 연구수행주체가 제시한 연구노트,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 시험데이터 등 중간산출물, 목표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등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부분 등

- **참고판례**

>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업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요건을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하여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당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최종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당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당초 정한 연구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일부 연구목표는 달성하였는지, 일부 연구목표는 달성하였다면 그 일부 연구목표가 최종 연구목표에 준하는 독자적 과학기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다소 불량한지 아니면 극히 불량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행정법원 2017구합67292)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 비공개 최종보고서의 임의 공개는 본 호에 해당하여 제재조치 대상임
- '정당한 절차'란
 - 해당 사업에 관해 각 부처별 규정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물 처분 또는 공개 절차 및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연구성과물 처분 또는 공개 절차에 따를 것을 요함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반하여 유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당한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해 '정당한 절차' 여부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음
 - 누설·유출된 연구개발 내용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연구개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할만한 연구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 내용이 누설·유출된 직후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고 누설·유출 범위가 제한적이라 전파 또는 확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관리감독에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 정당한 사유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고려하여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면제할 수 있음

1) 해당 연구에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핵심인력의 사망, 퇴직, 개인건강악화, 출산, 육아, 본국귀환, 사고,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임명, 상위과제의 책임자로 선정되어 기존에 수행하던 하위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 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전문기관의 장이 기존 연구기관에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기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연구기관으로 연구성과물 및 연구비 잔액을 성실히 이관한 경우

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수행기관인 중소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되어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 연구개발과제를 포기하는 경우

- **참고판례**

> 연구 인력과 협력기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과제 수행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087)

> ~법상 '소속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참여제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인 A는 과제의 수행 포기를 결정 또는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087)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 다만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5항)
- 정당한 사유란 납부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외부적 사정이 있을 때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참여제한을 감면할 수 있음

-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법원의 허가 없는 임의 변제가 불가하게 된 경우, 회생채권의 출자 전환으로 인하여 채권 일부가 소멸되는 경우 등 납부가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위와 같이 법률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납부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영 곤란 또는 재무상태 악화와 같은 사실상 제약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기술료 미납의 경우, 관련 시장의 소멸, 표준·법·제도의 변화 또는 관련 법제도 등의 미비로 연구 결과를 실용화 또는 상용화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제재부가금
- 용도외 사용이란,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연구비를 연구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말하며, 편취, 횡령, 사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환수기준'에 명시된 내용 중, 사안에 따라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라면 '용도외 사용'으로 보고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연구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용도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재조치대상이 아니며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 ('2.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해야 함

 ※ 과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재정산하여 회수할 수 있음

- (일시)전용인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미치는 정도, 전용횟수(적발횟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고려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금액을 감면할 수 있음

 - (일시)전용이란 적발되기 전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적발 전에 본래 용도대로 사용된 경우를 포함

 - 여기서 말하는 '적발하였을 때'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자체 조사, 수사기관·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고지, 민원제기 등 사유를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용도외 사용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였을 때를 의미함

- 다음의 경우는 제재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감면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이 자발적으로 용도 외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한 경우

 - 적발 이후 용도 외 사용금액을 원상에 회복한 경우

 - 과제 종료 후 용도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용도 외 사용금액을 공탁하는 등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

 - 자체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을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상으로는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 외 제3자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까지 포괄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협약상 연구개발성과를 개인이 출원하지 않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다면 협약위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8호)으로 제재사유가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정당한 사유'란 소관 부처의 관련 규정에 정한 연구성과물 처분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개인이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참여제한을 감면할 수 있음

 - 기술료를 완납하고 수행기관이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서 과제책임자가 양여한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제6항),

 - 개인기업이 수행기관인 경우로서 그 대표자겸 연구책임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제7항 제2호 단서)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하며,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제3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며 세부적인 내용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참조

- '연구개발 수행'이란 과제선정을 포함하여 선정 후 협약이 체결되고 사업비가 지급되는 등 연구개발에 착수한 경우를 의미함

 - 협약이 체결된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본 호를 적용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도 가능함(공동관리규정 제11조 1항 12호)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 가.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이미 개발한 기술이나 타부처에서 지원받은 기술개발 내용과 동일한 과제(기술개발 중복)의 경우 제재대상임

- 사업계획서,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보고 및 제출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본 호를 통해 제재조치 할 수 있음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호~7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개발 수행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등

- 협약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재사유 외에 협약을 적법하게 유지하기 위한 원칙(타법상의 규정 포함)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호를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음.

* 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협약 또는 소관 부처의 세부 규정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의무로 명시되어 위반시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제2절 제재부가금(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4 제1항, 별표6)

1. 산정 기준

-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합산액 대비 출연금 비중을 곱하여 산정(출연금이 민간부담금 현금과 각각 사용용도가 명확히 분리된 경우 출연금 비중 적용 제외)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가중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음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유용행위에 3인 이상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유용한 경우 등 그 밖에 용도외 사용의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가중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인이 수개의 과제를 수행했고 각 과제별로 제재부가금 사유가 발생할 경우,
(1) 1개의 과제에 가중사유가 여러 가지일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가중사유 비율을 적용
(2) 심의날짜와 관계없이 각 과제별로 제재부가금을 산정하고 가중사유도 각 과제별로 산정

3. 감경

-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령 용도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의 대부분이 이미 계정에 회복되었거나 본래 용도대로 집행된 경우, 용도외 사용 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하여 회복의 의지를 보이는 경우 등 감경 가능

발표1. 사업관리시스템(PM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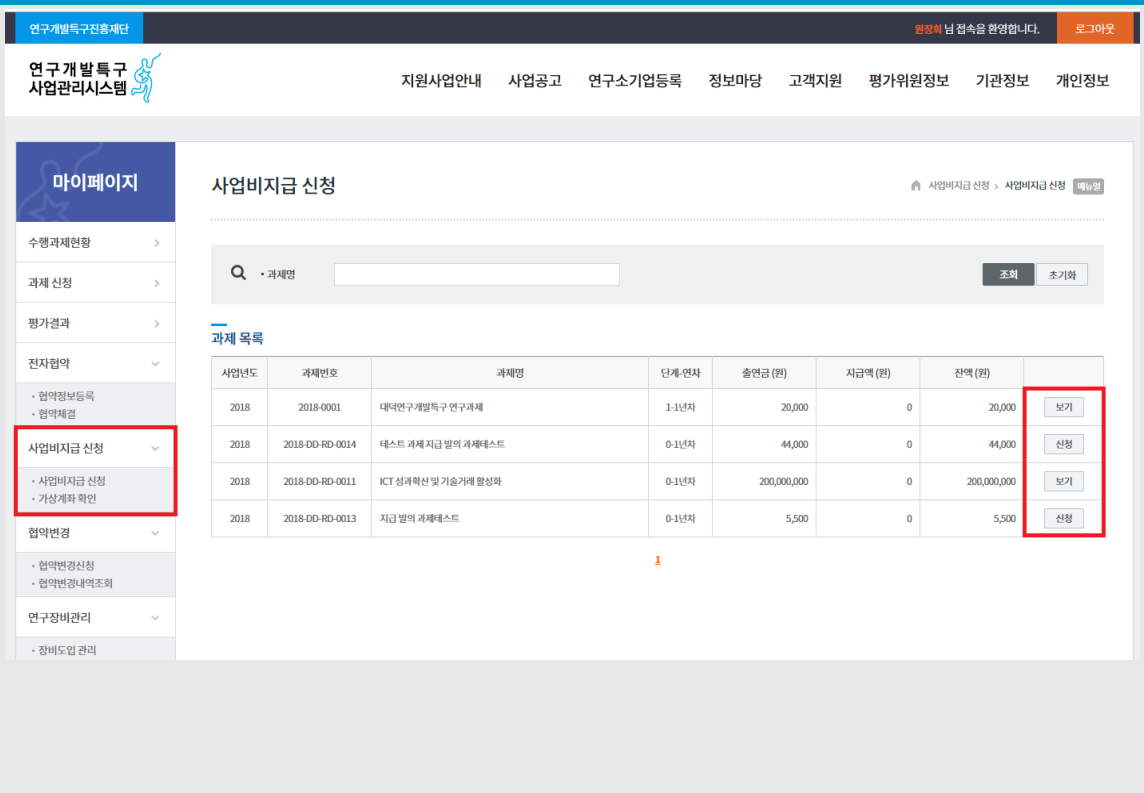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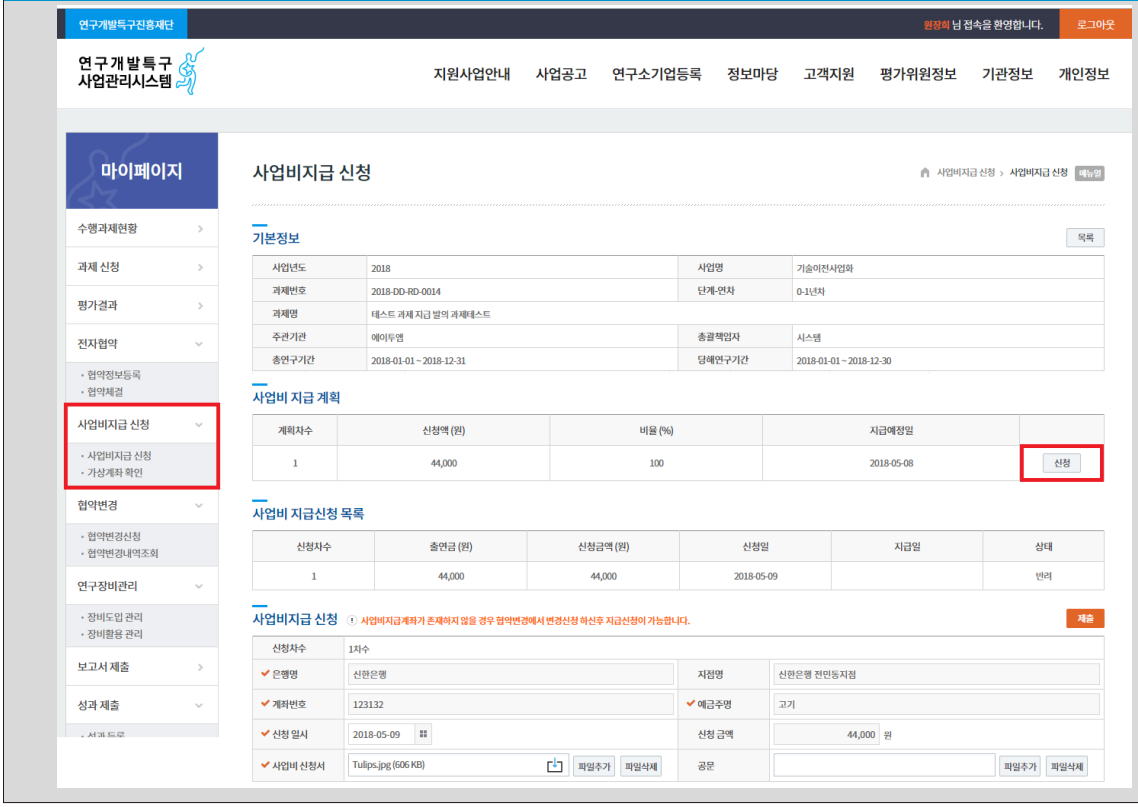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innopol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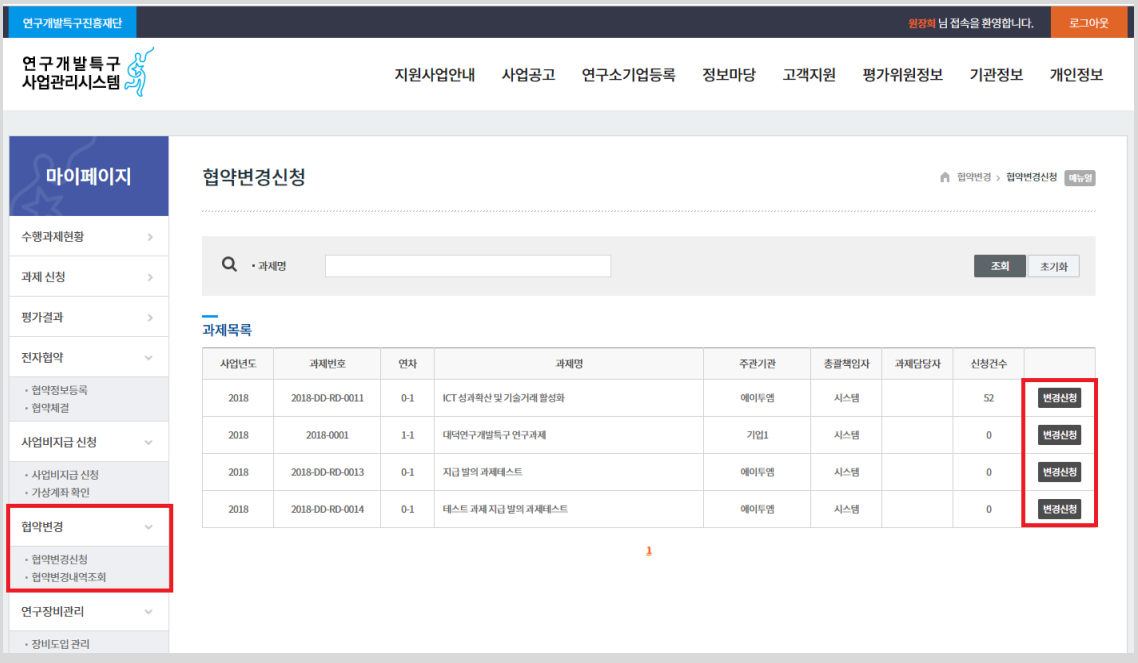
사업비 지급 신청 -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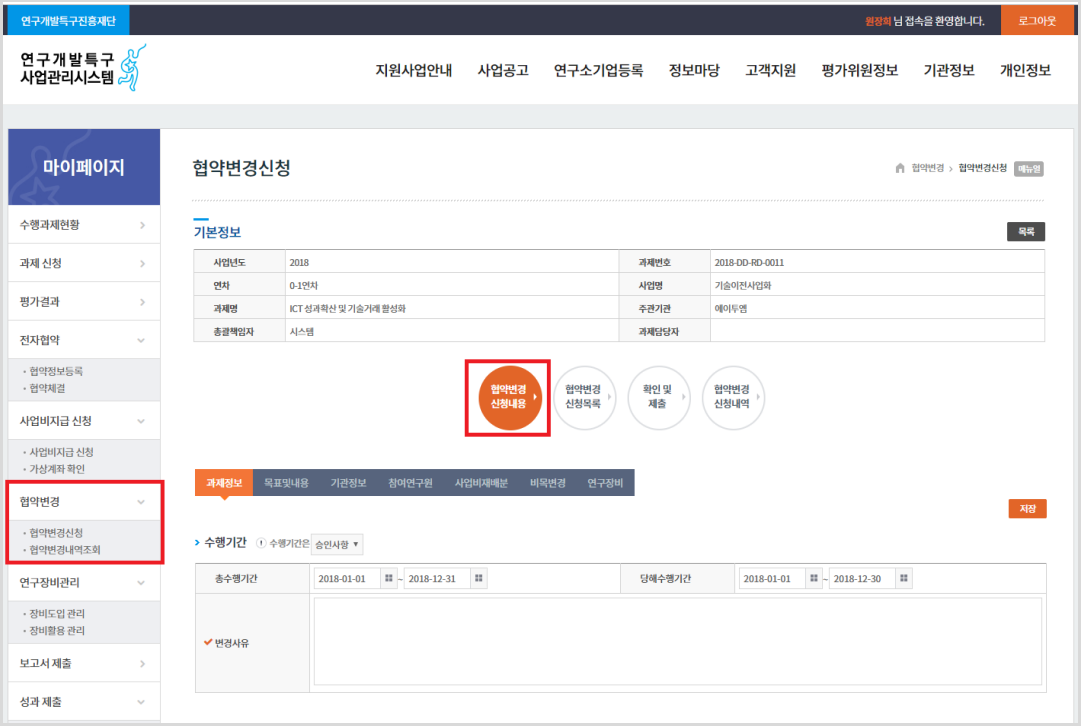
사업비 지급 신청 -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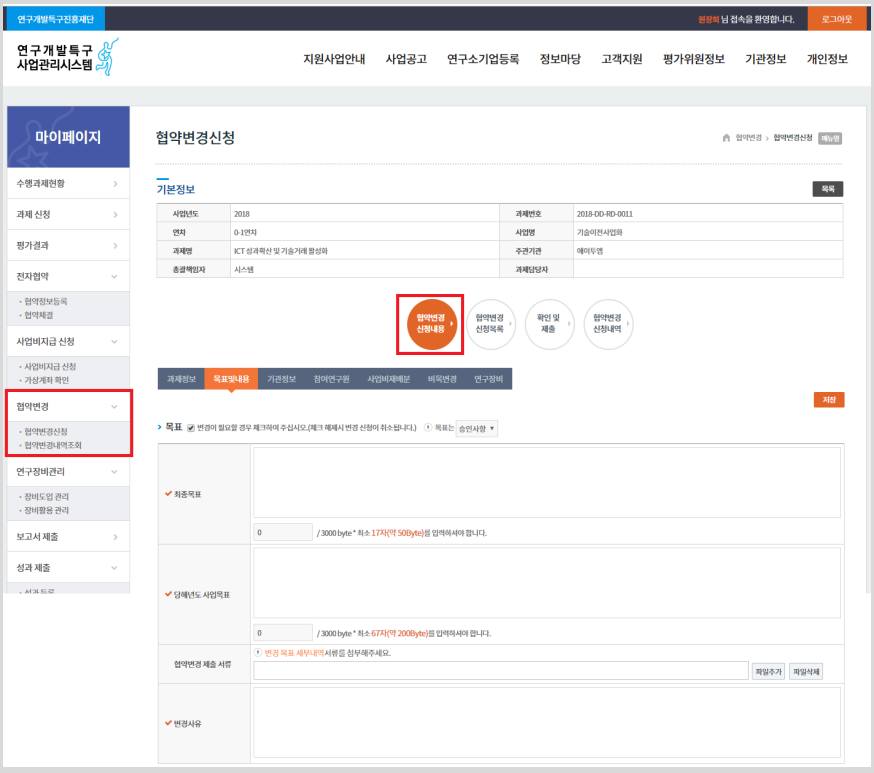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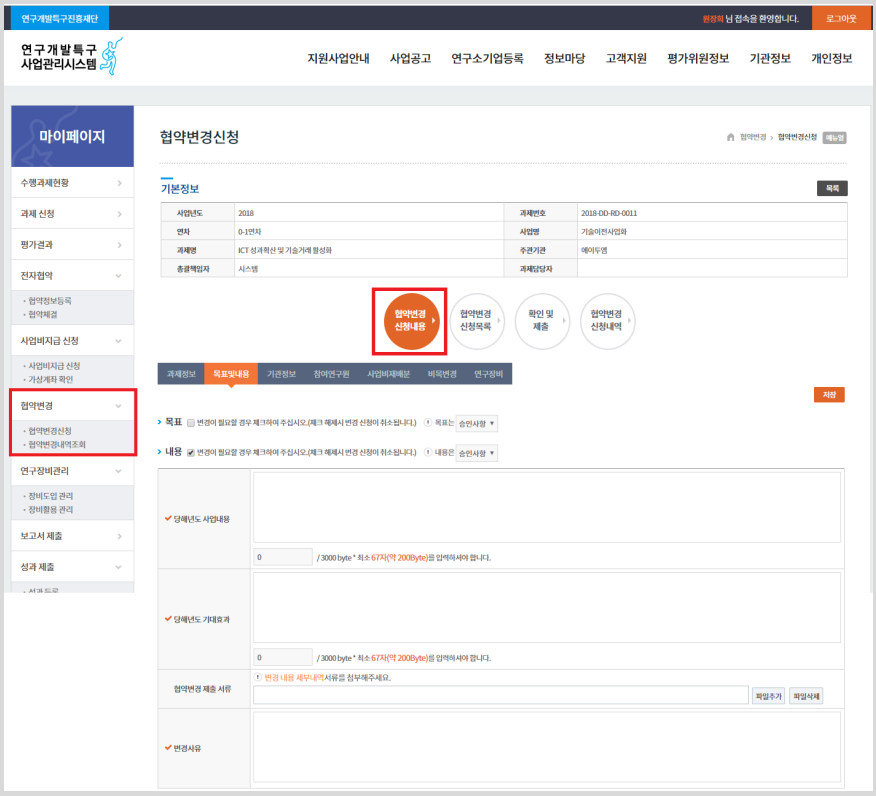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과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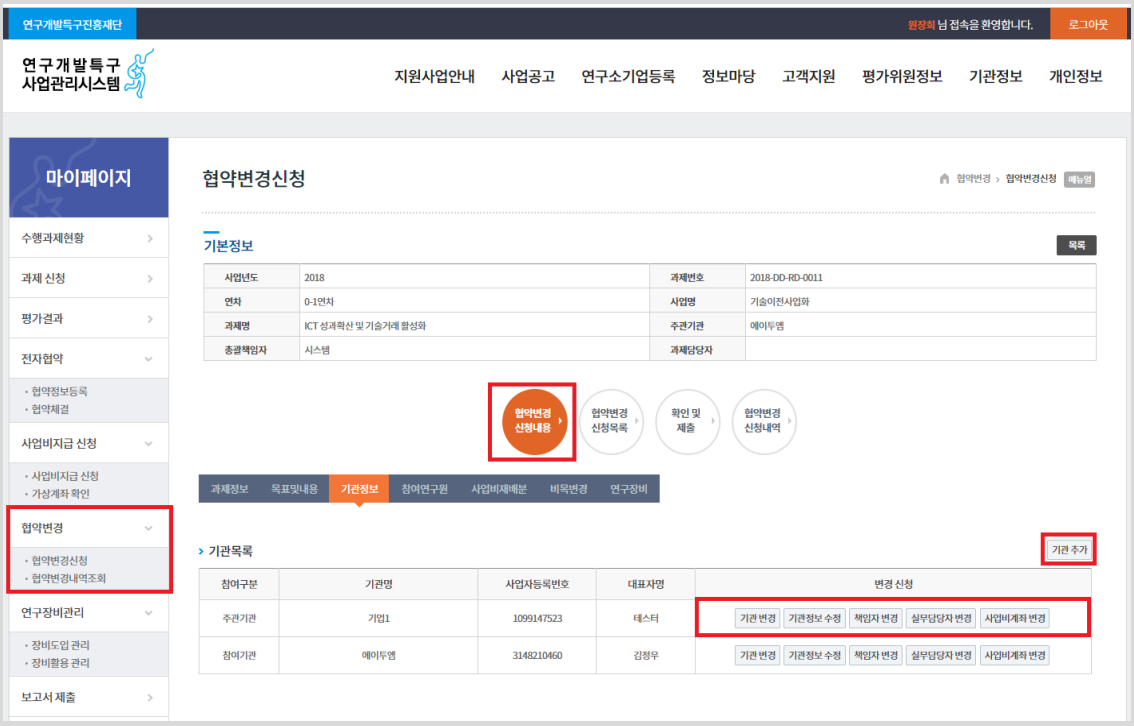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목표및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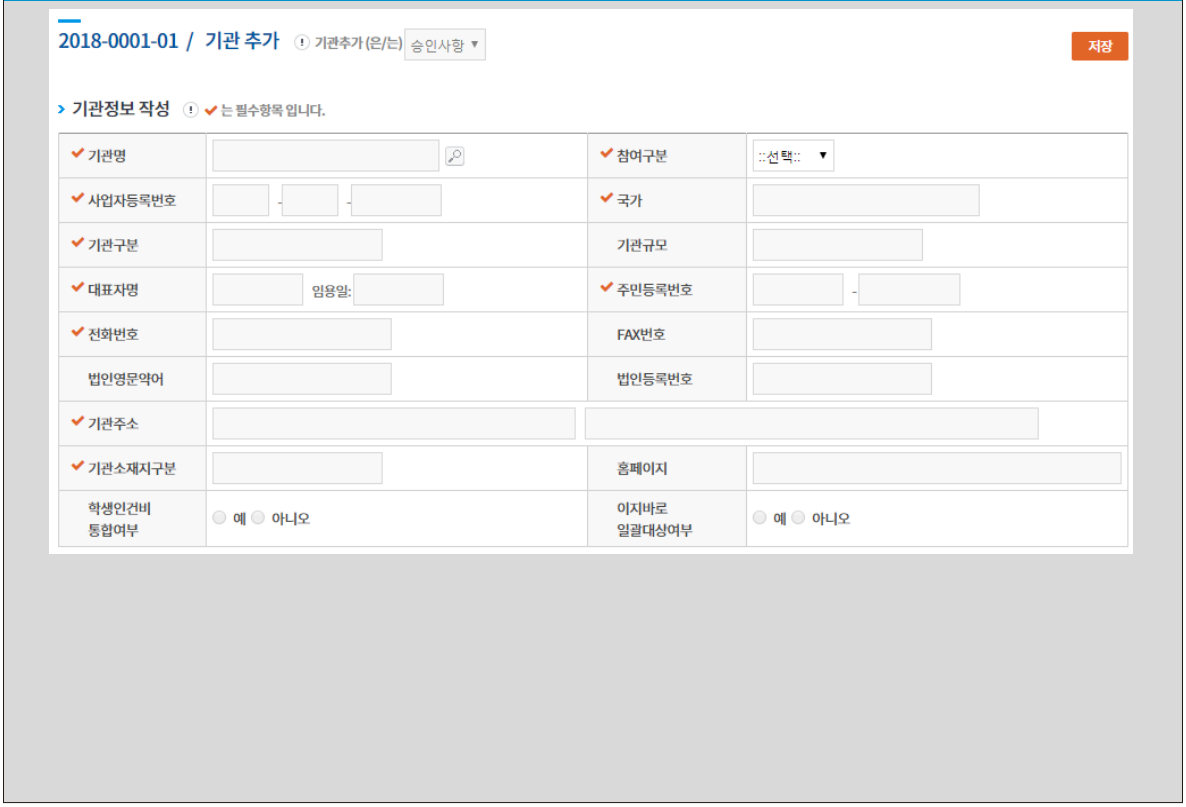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목표및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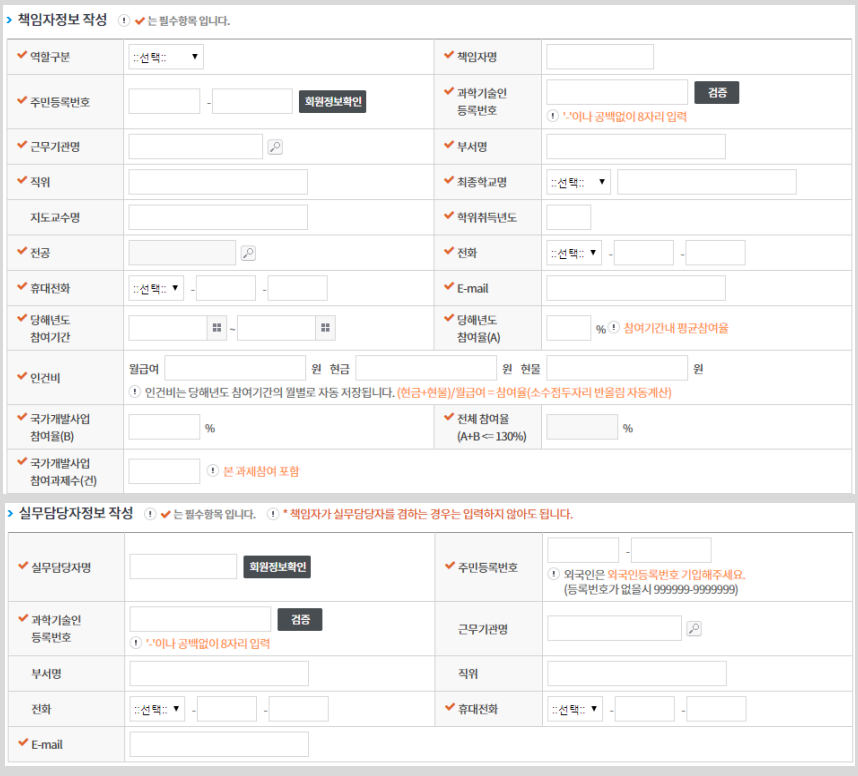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기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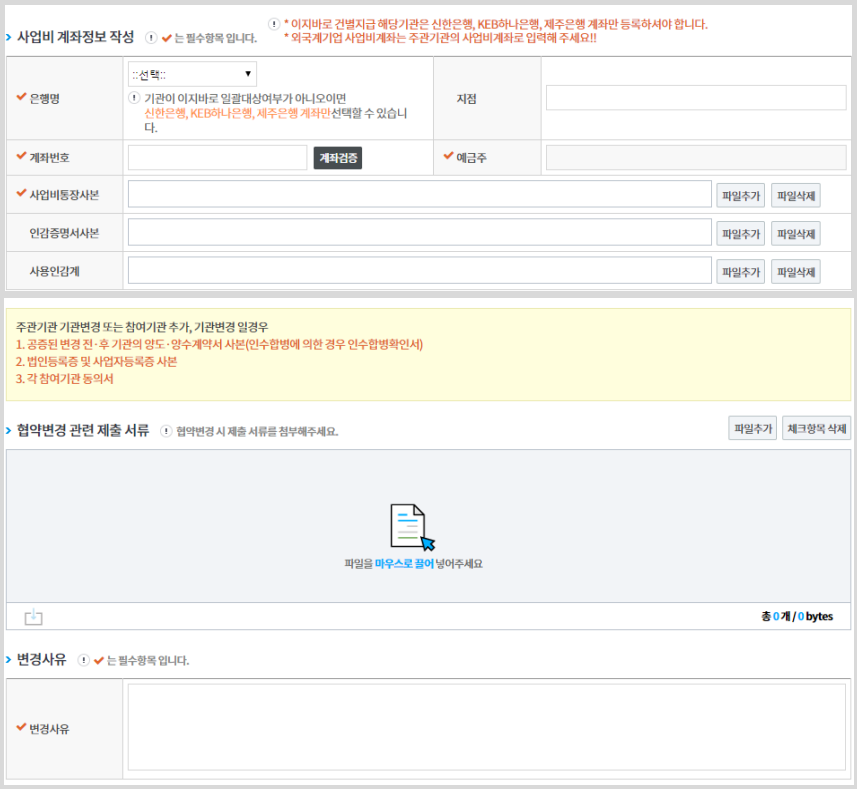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기관정보 – 기관추가/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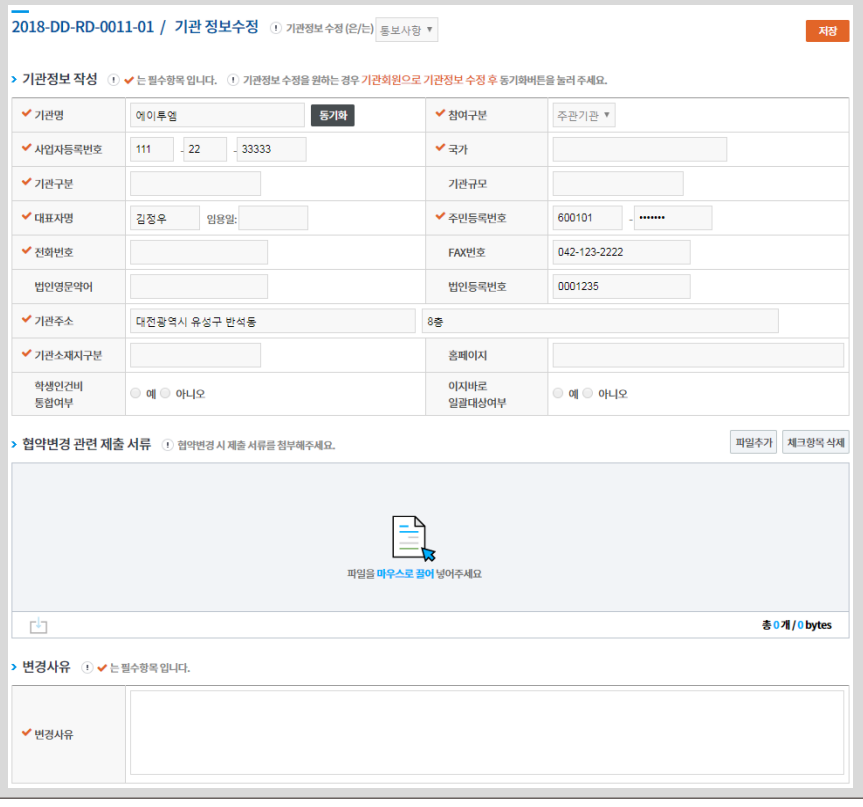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기관정보 – 기관추가/변경



협약변경신청 – 기관정보 – 기관추가/변경



협약변경신청 – 기관정보 – 기관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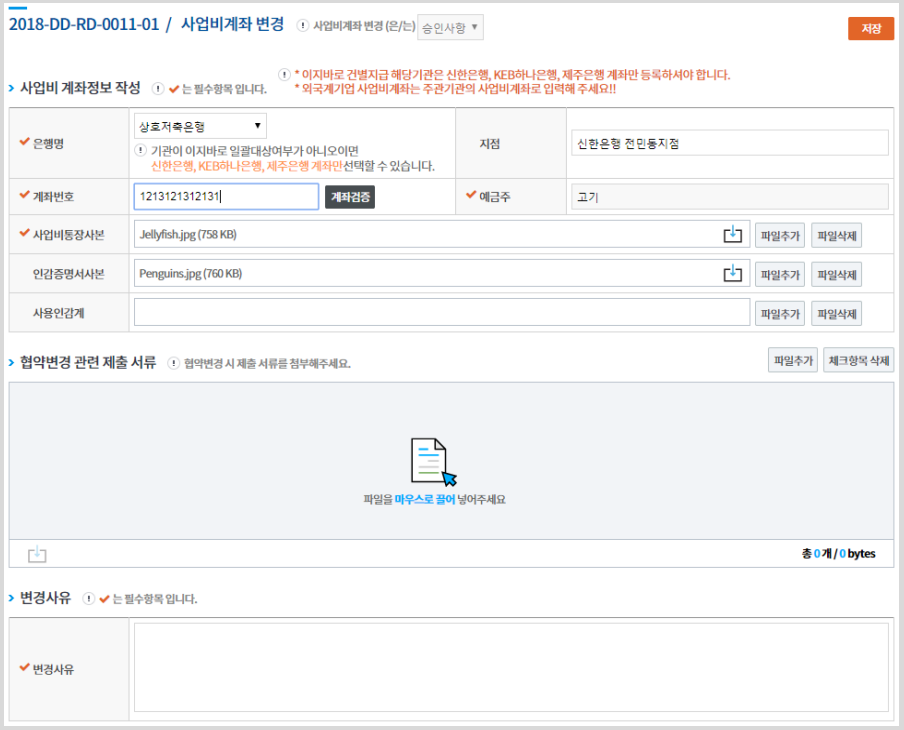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기관정보 – 책임자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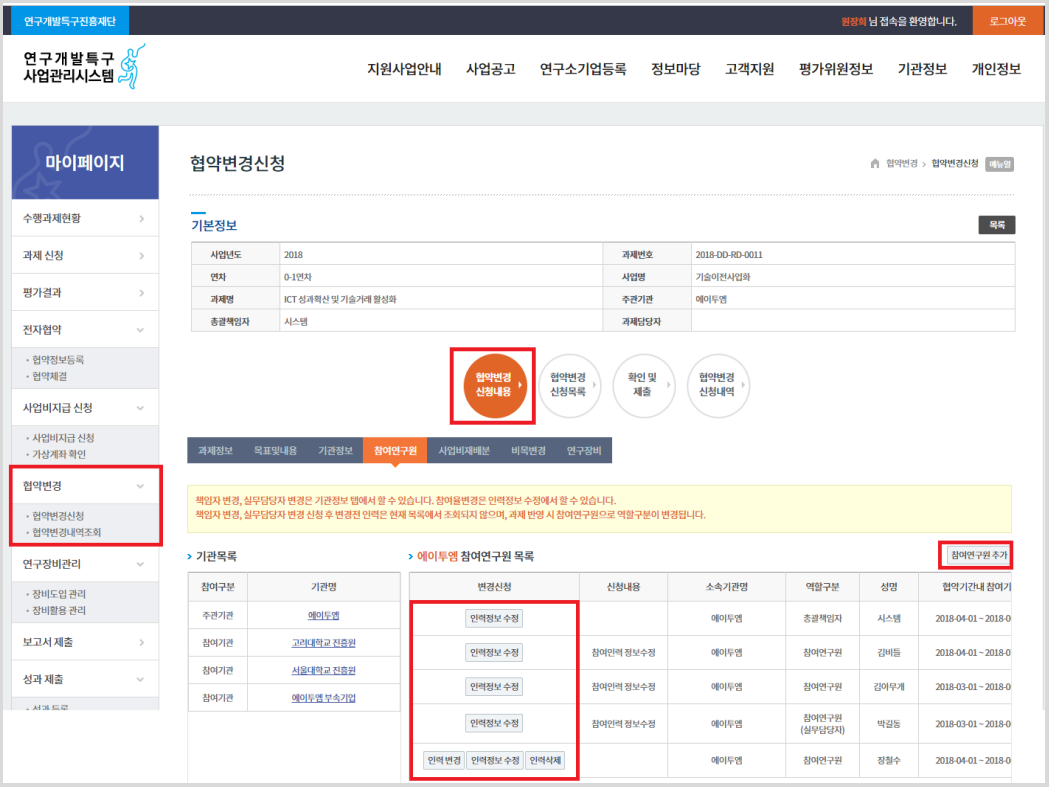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기관정보 – 실무담당자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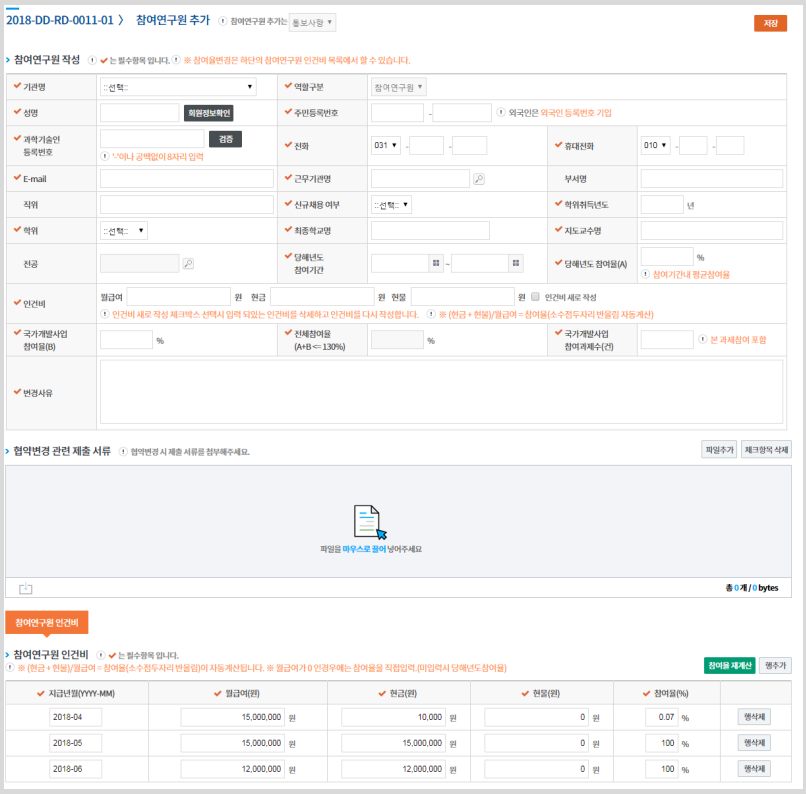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기관정보 – 사업비계좌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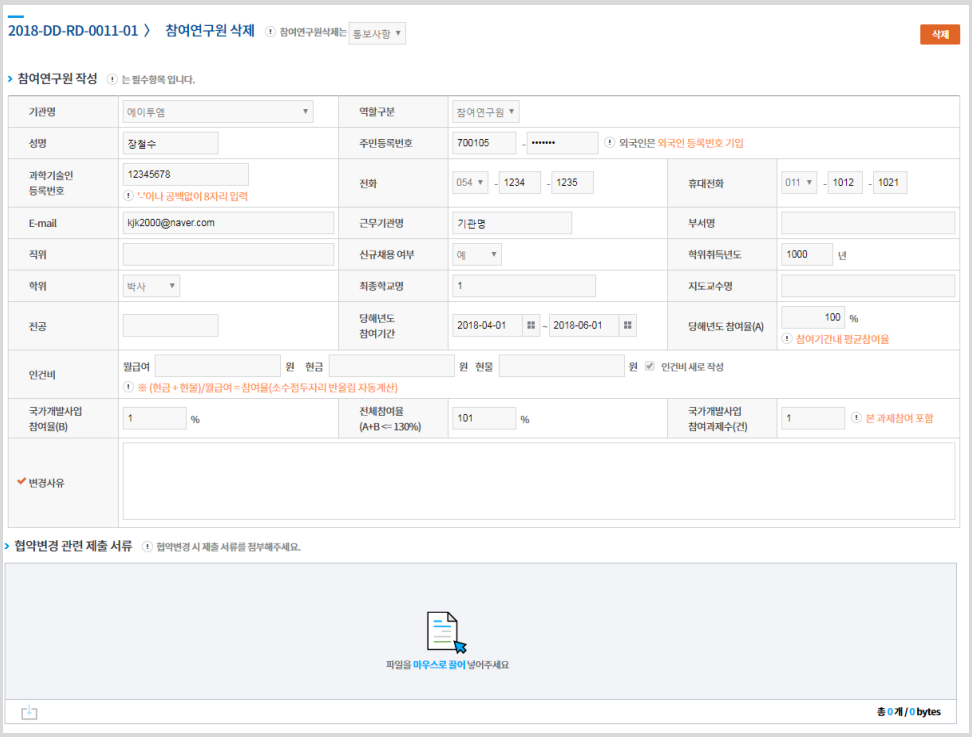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참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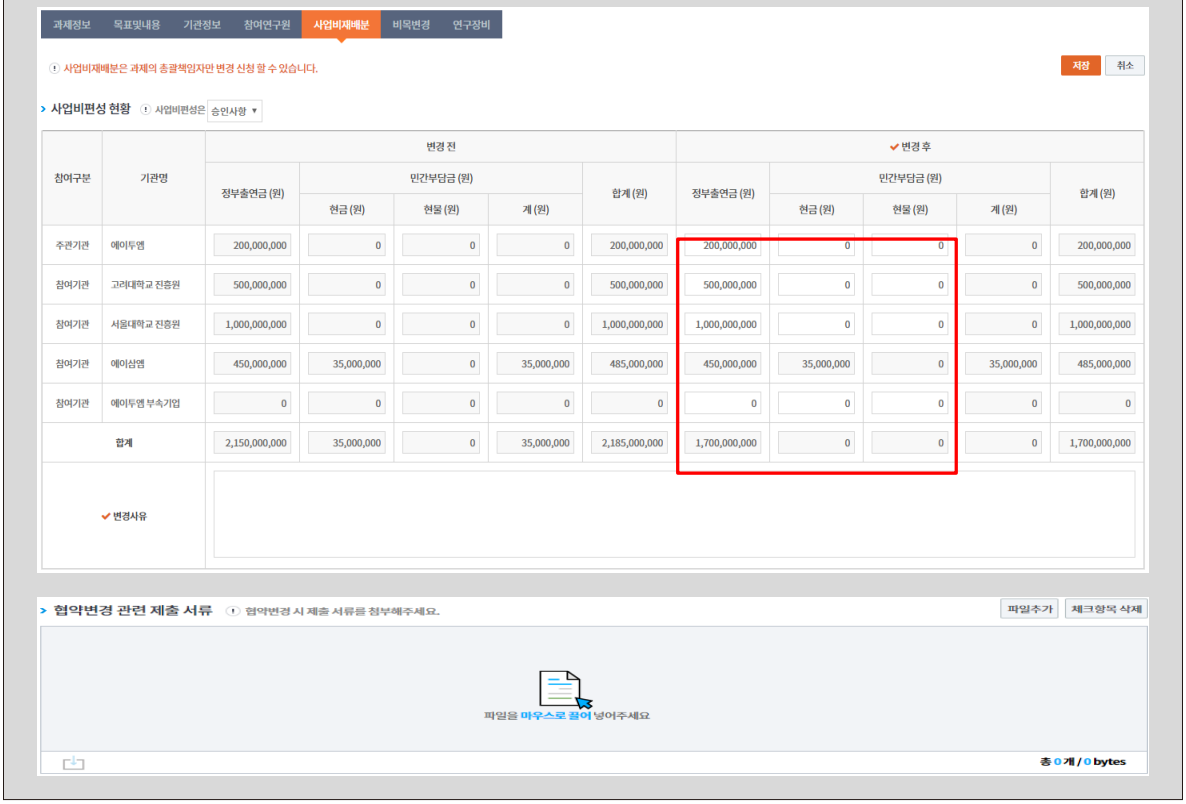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추가/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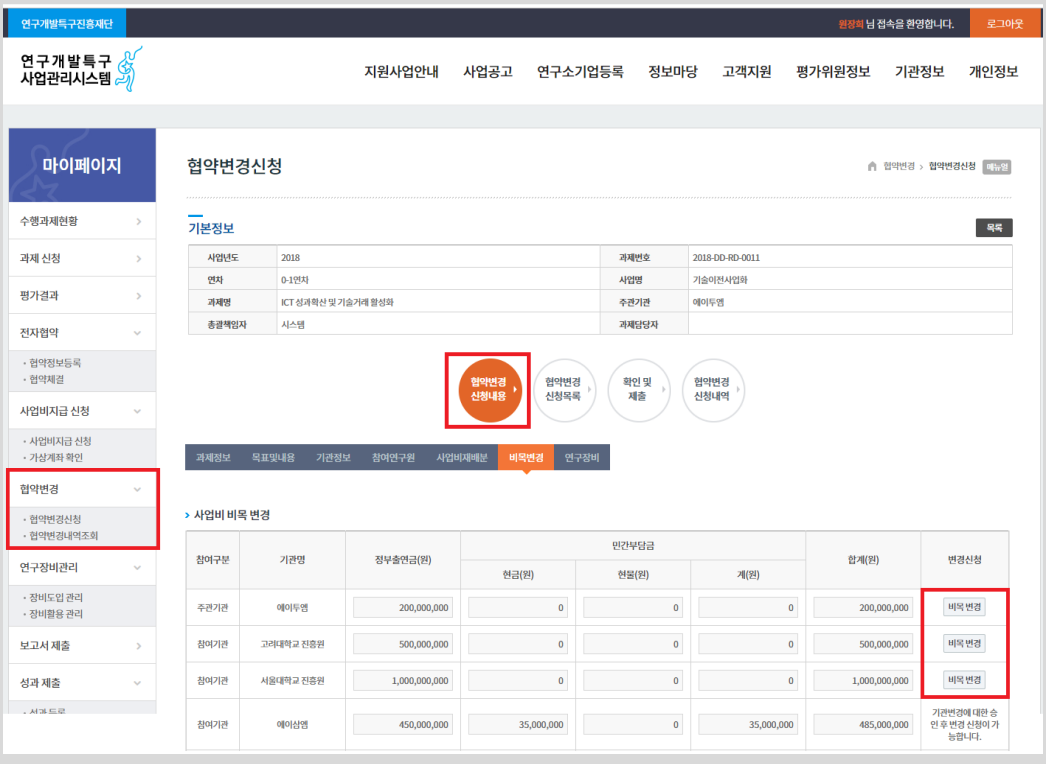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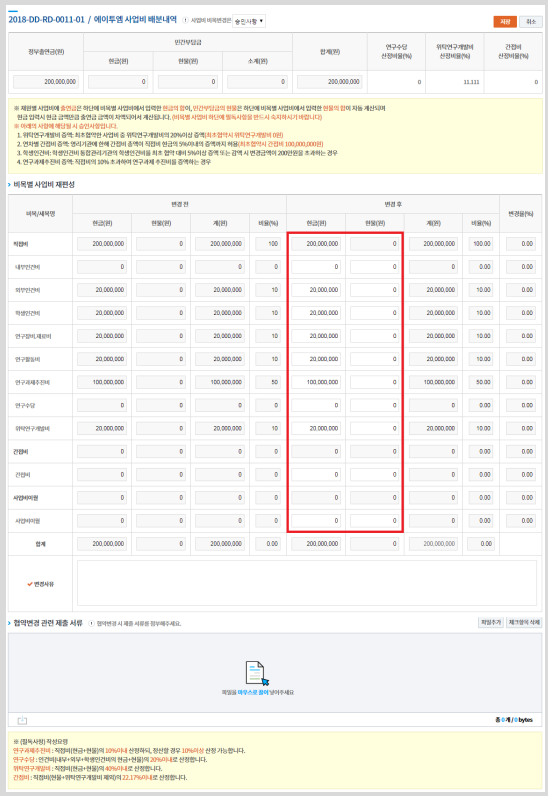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사업비재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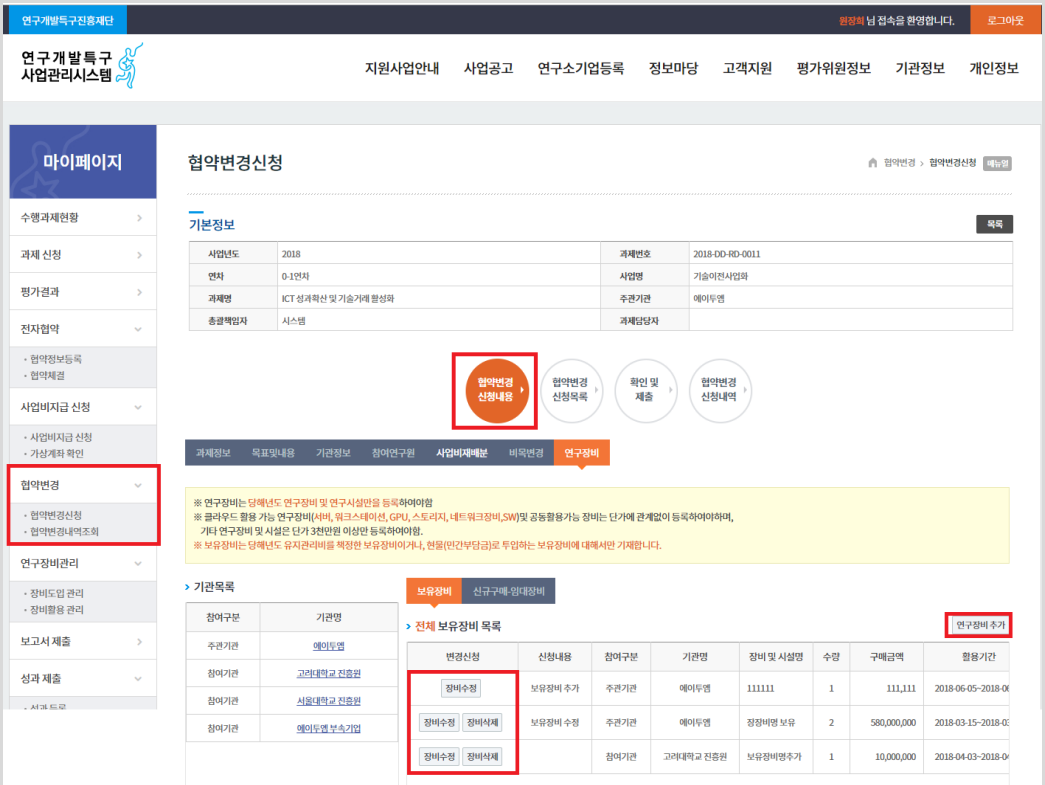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비목변경



협약변경신청 – 비목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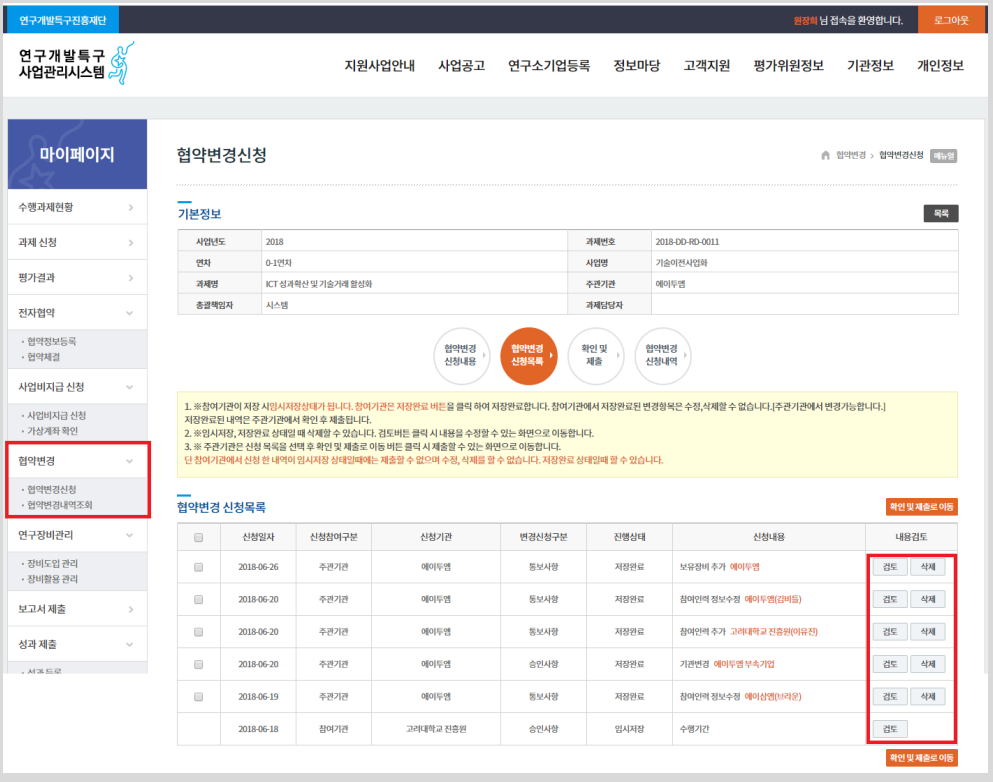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연구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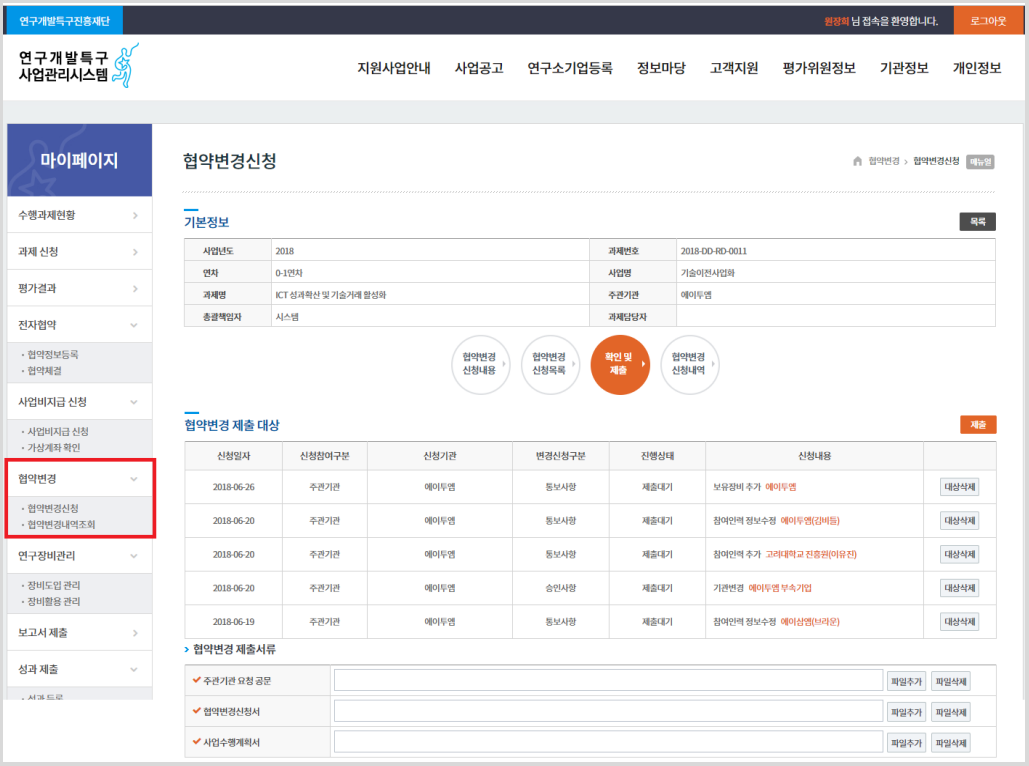
협약변경신청 – 연구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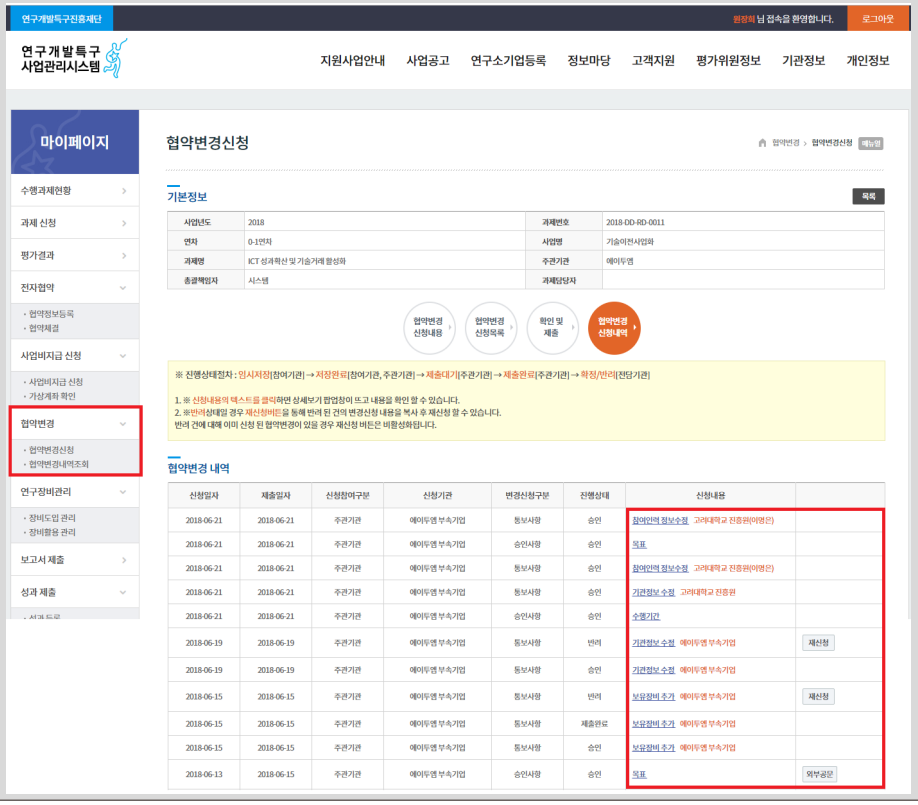
협약변경 신청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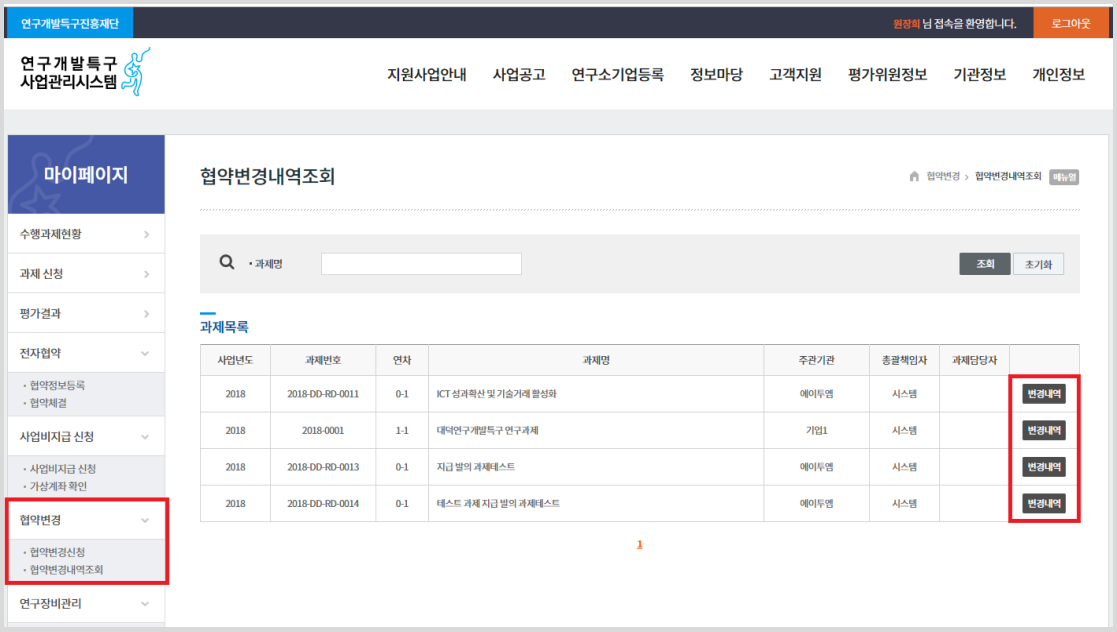
확인 및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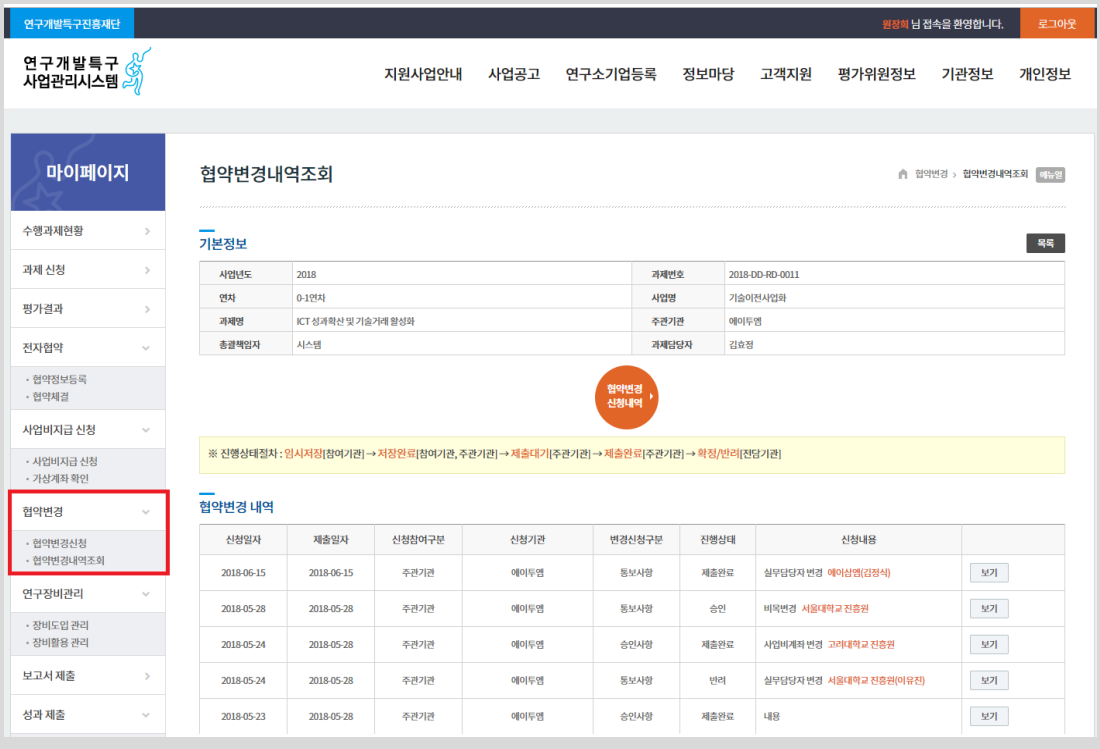
협약변경 신청내역



협약변경내역조회 - 목록



협약변경내역조회 - 상세



발표2. 연구비 산정 및 정산 기준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Confidential

목 차

Presentation
Contents

Ⅰ. 사업비 관리 일반_2
1. 사업비 관리 일반 기준_3
2. 사업비 구성_4
Ⅱ.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_5
1. 세목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_6
2. 부당집행금액의 회수 기준_25
3. 사업비변경 승인사항_26

Chapter

Presentation
Contents

Ⅰ. 사업비 관리 일반



1. 사업비 관리 일반기준

연구개발비의 관리

- 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함
-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
-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 기록·관리

연구개발비의 사용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
- 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
-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

2. 사업비 구성

Confidential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지자체부담금 포함)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은 현금으로 구성되며,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로 구성

※ 현물은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재화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비목	세목	용도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장비, 시약(試藥) · 재료 구입비, 시제품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공공요금, 전문가활용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회의식대 등
	연구수당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Confidential

Chapter

Presentation
Contents

Ⅱ.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산정기준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인건비

내부 인건비

- 연구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외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인건비

인건비 계상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및 정산 시 제출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인건비

인건비 현물산정 대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인건비 현금산정 대상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 신규 채용연구원의 인건비(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8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내부인건비	●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9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인건비

학생 인건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연구원 :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박사 후 연구원 포함)
 - ※ 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구분	세부산정내용
학생연구원	•참여율 100% 기준으로 미래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학사과정 : 월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월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월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 후 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구분	부당집행 기준
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단,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참여율100% 이내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최종 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협약 시 연구장비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 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제출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으로 산정하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

12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현물산정기준)

- 구매, 생산.판매중인 견본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 구입 금액 또는 생산· 판매가로 책정한 금액
- 해당과제로 구입한 장비 등은 총 수행기간 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 불가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수행기관 간의 임차료 및 수행기관 자체 임차의 경우 임차료를 현물로 계상

13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장비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 · 시설 · 공간에 대한 임차료 ●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기기 · 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 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14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구분	부당집행 기준
시약 · 재료비 등	●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 · 재료구입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 · 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제품 제작비	●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15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규정이 있는데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여비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하여 여비를 과다 계상 해서는 안되며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한다.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 복사 · 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 시험 · 분석 ·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특허정보 조사 ·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는 제외)

*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 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 핵심.원천특허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전략' 으로 지칭됨.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구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여비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과제
기타 활동비	●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 ●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 · 세미나 참가비 ● 종신 학회비,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 · 참가비 등 ● 선물(기념품) 구입비(일반인 대상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연구과제추진비

연구과제추진비

- 정산하지 않는 경우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내 산정 (10% 초과 집행 시 불인정)
-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 등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및 비품, 유지비용 등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회의 및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구비)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불인정)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구분	부당집행 기준
국내여비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연구환경 유지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 구입 · 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식대, 다과비)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야근식대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20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연구수당

연구수당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실 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산정 (단, 사업계획서 상 금액 초과 불가)

부당집행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21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초과 불가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간접비

간접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장비운영 전문인력과 사업비정산 지원인력(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등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등
- 성과활용지원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 홍보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 제작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 등록 · 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이전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경비
 -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 : 수행기관의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세목 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Confidential

간접비

간접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기업 포함)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 기준

Confidential

부당집행 기준 범위

-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등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 가능)
-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 보호 · 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한 금액은 제외)
-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3. 사업비 변경 승인사항

구분	내용
연구개발비 변경 관련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의 연구장비 · 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연구장비 · 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 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 · 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그 밖에 승인 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 최종 목표의 변경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변경 – 과제 수행기간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Confidential

Contact Us

일신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성우

02-539-7090

rnd@ilshincpa.com

발표3.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사용자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新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사용자 설명자료
신한카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목 차
I 시스템 개요
II 주요 프로세스 소개 - 협약
III 주요 프로세스 소개 - 집행
IV 주요 프로세스 소개 – 정산
1

I. 시스템 개요

▷ 주요 핵심기능

01 연구 수행기관 유형별 실시간모니터링 구현 (건별/일괄)

02 Data 수집, 전자증빙 관리 체계 구현

03 금융거래내역 보안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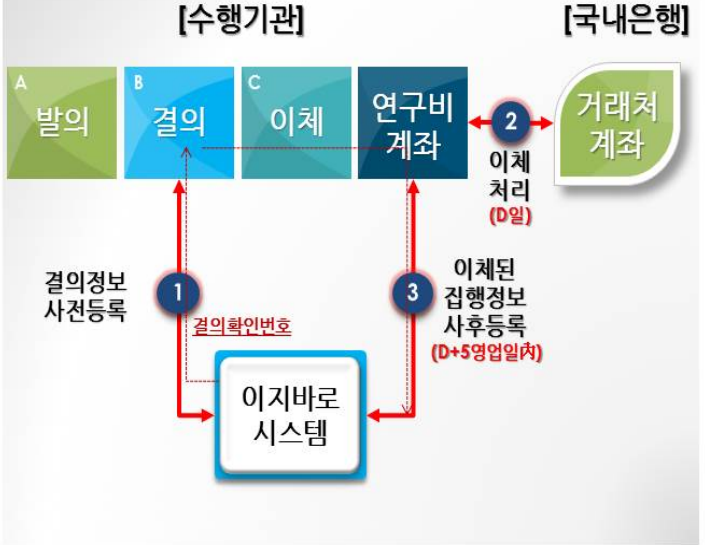
04 시스템 사용자 관리 기능 및 편의 기능 강화

2

I. 시스템 개요

▷ 연구비관리방식 – 일괄지급방식

일괄지급방식 - 비영리기관



연구비집행 절차

① 결의정보 사전등록

연구비 집행을위한 결의 정보 사전 등록
- 全 Data 등록건만 결의확인번호부여
- 연구비카드: 카드사용 후 결의등록
 ☛ ① 결의등록(결의확인번호)만 진행

② 연구비 실제 이체처리

검증된 결의내역만 수행기관 집행
- 시스템 집행 등록건에 한하여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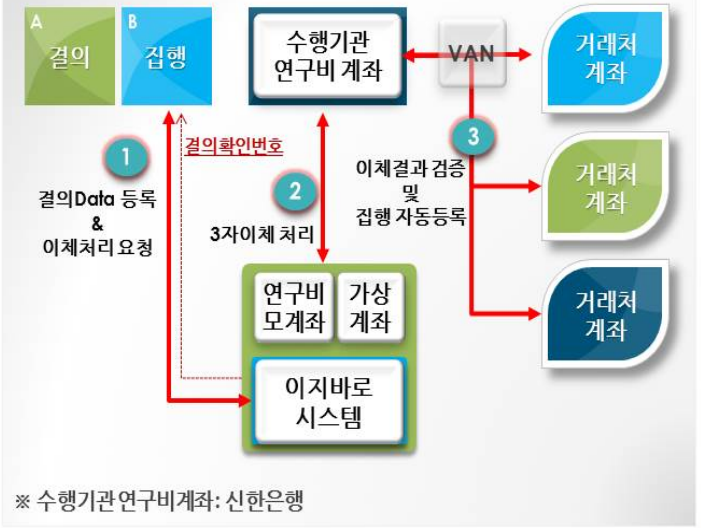
③ 집행정보 사후 등록

실 이체 정보(날짜/금액 등) 등록
- 사전 등록된 결의 정보와 비교 후 일치여부 관리 (①=③ 체크)

▷ 업무처리: ① → ② → ③

3

건별지급방식 - 영리기관



연구비집행 절차

① 건별 Data 등록

연구비 집행을 위한 결의 정보 사전 등록
- 全 Data 등록건만 결의확인번호 부여
- 연구비카드: 결의등록만 진행
 (1) 카드사용 후 건별 결의등록 (결의확인번호)
 (2) 월별 결제 대금 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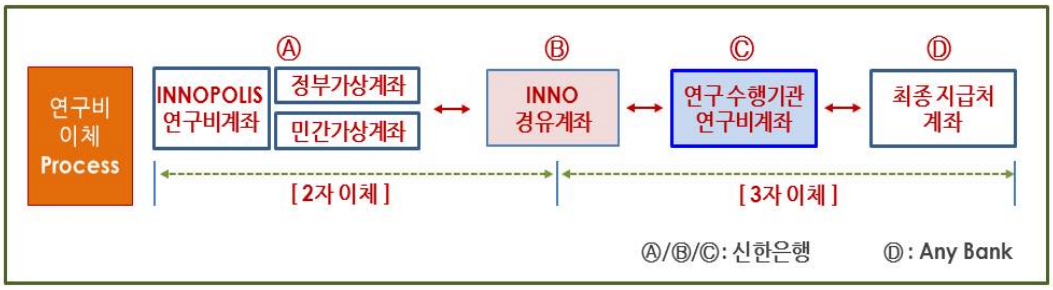
② 3자이체 처리 (Firm Banking)

- 3자이체: 재단 → 수행기관 → 거래처
- 펌뱅킹을 이용하여 연구비 실집행

③ 집행정보 자동등록

- 이체를 이지바로가 수행하여 집행정보 자동등록(날짜/금액등)

▷ 업무 처리 ① → ② & ③



이체처리

· 단건이체
· 다건이체 (5건)

- ① 잔액조회 : 재원별 가상계좌 잔액 조회 → 집금비율 산정
- ② 2자이체(집금) : INNO 연구비계좌 → INNO 경유계좌 (Ⓐ → Ⓑ)
- ③ 3자이체 : INNO 경유계좌 → 수행기관 계좌 → 지급처 (Ⓑ → Ⓒ → Ⓓ)
- ★ 연구비카드대금: ① → ② → INNO경유계좌 → 수행기관 계좌 (ⓒ or Ⓓ)

▶ 지급처 계좌 (D)
- 거래처 계좌 (구매 등)
- 수행기관 법인계좌
- 인건비 계좌

환입처리

① 이지바로 등록 → ②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
☞ 유형 : 지급취소, 카드 승인취소(환불), 부가세등록, 정산미표기, 체크카드 지급삭제

이자

분기별 이자 발생 & 불인정금액 등 정산금과 연계하여 이자 지급 (정산완료후 지급)

I. 시스템 개요

▷ 연구비관리방식 – **지급방식 비교**

구 분		건별지급방식	일괄지급방식	건별상태
계좌이체	① 결의등록	집행건별 결의등록 → 세세목별 Data 등록 → **확인완료 (결의확인번호)**		확인완료
	② 이체처리	결의확인번호 부여건만 이체 가능		
		이지바로 3자이체 (사용금액 限)	수행기관 자체 이체	
	③ 집행등록	이체처리와 동시에 자동 집행등록	이체처리(D일) 이후 5영업일內 등록	지급
연구비카드	① 결의등록	집행건별 결의등록 → 세세목별 Data 등록 → **확인완료 (결의확인번호)**		확인완료
	② 이체처리	**카드 결제대금 이체 (월1회, 총금액)**	카드사 자동이체	
	③ 집행등록	결제대금 이체 : 확인완료→지급	결제일 도래 : 확인완료→지급	지급
현물	① 결의등록	집행건별 결의등록 → 세세목별 Data 등록 → **확인완료 (결의확인번호)**		확인완료
	② 이체처리 ③ 집행등록			

※ 연구비카드 건별 진행상태 자동변경 (확인완료 → 지급)

- 건별지급방식 : 카드결제대금 이체시 실시간 변경 (이체 후 확인완료시 익영업일 변경)
- 일괄지급방식 : 결제일 도래

※ 정산신청시 건별 진행상태 체크 : 계좌이체 - 지급, 연구비카드 - 확인완료, 현물 - 확인완료

I. 시스템 개요

▷ 결의/집행 개요

01 집행 방법 정의

사용 용도별 결의 정보의 필수 항목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결의확인번호를 발급받은 이후에 이체가능
실제 이체처리 후 5영업일 內 집행등록(일괄)

02 인건비 지급 요건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시 지급한도(현금/현물)를 확인하여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지급한도/참여율 월별 설정

03 세금계산서 처리

세금계산서와 연동되는 결의 정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하여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국세청 연동을 통해 등록
(정책상 세금계산서 조회 시 법인 공인인증서는 필수 사항)

04 집행 5영업일 예외

- 허용대상: 학생인건비(통합기관), 내부 시험분석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총 3개 항목
- 운영요건: 결의(①) 정보 필수 입력, 이체결과(③) 등록 시 5영업일 미체크

I. 시스템 개요

▷ 업무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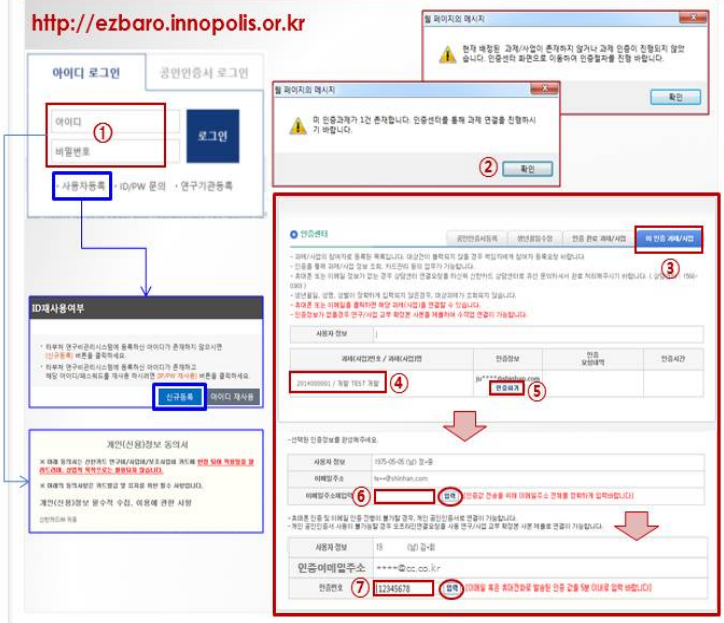
	[기존]	[개선]
연구비지급	주관연구기관 지급	- 연구기관(주관/참여)별 각각 지급 비영리: 일괄지급방식 / 영리: 건별지급방식
연구비집행	연구기관 자체 이체 후 집행등록	- 건별 : 결의등록→ 3자이체(이지바로에서 이체) - 일괄 : 결의등록→ 이체→ 5영업일內 집행등록
실시간모니터링	연구기간 중 모니터링 불가	◦ 연구비 결의시점 실시간모니터링
증빙자료	카드매출 전표 연동 기타 증빙 연구기관 보관	◦ 카드매출전표, 전자증빙 연동 등록 - 증빙 최소화를 위한 Data 등록 - 전자증빙 연동 (전자세금계산서, NTIS등록번호) ◦ 기타 증빙 연구기관 보관

8

I. 시스템 개요

▷ ID 등록 & 과제연결

사용자등록(ID생성) / 로그인 & 과제연결



세부 내용

■ 사용자등록→ 신규등록

- 아이디 재사용 : 신한카드 운영 타부처 연구비 시스템 ID/PW와 동일한 정보 재사용 등록
- 개인정보 동의 : ID 접속 후 동의절차 진행 카드발급,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동의 필요

■ 아이디 로그인 및 과제연결

① ID/PW를 입력한 후 "로그인"

② 확인 → 인증센터 이동

③ 미 인증 과제/사업 선택

- 과제가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재단 관리자에게 과제정보 전송 요청

④ 인증대상 과제/사업 확인

⑤ 인증하기 (이메일 : 재단 PMS 정보와 동일)

⑥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 후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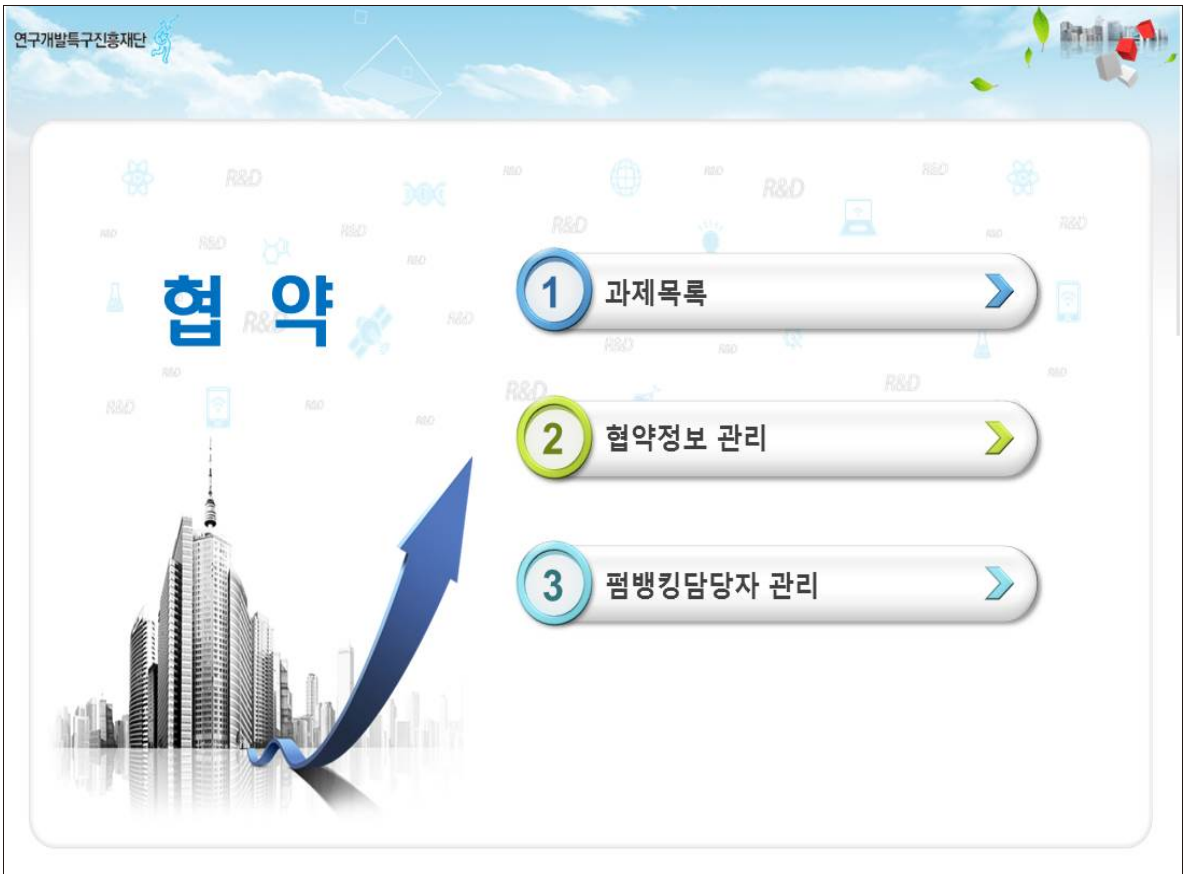
⑦ 이메일로 송부된 인증값 입력 후 "입력"

▷ ID와 과제 매핑 완료

9


인증센터 : 앞 페이지 인증절차 수행하는 메뉴
사용용도 : 세세목과 동일한 개념으로 운영
시스템소개
협약관리
연구비카드관리
집행관리
정산관리
통계관리
시스템정보
사용용도별 필수항목
고객지원센터
1566-0369
협약과제
사용자정보
공지사항
과제수할당 115
과제종료 2

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협 약
1 과제목록
2 협약정보 관리
3 펌뱅킹담당자 관리

11



화면 / 메뉴 세부내용

아이디와 과제 매핑이 완료되면, 접속한 아이디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제목록이 조회됨.

▶ 협약관리 → 협약과제목록

1. 협약과제목록

- 협약과제 목록
 - 과제상태 : 과제수행중, 과제종료 등
 - 과제형태 : 주관/참여, 총괄
 - 검색조건 : 책임자명, 연구기관명 과제번호, 과제명, 카드번호
- 협약과제목록 기본 검색조건
 - 과제 수행중, 주관/참여

2. 과제목록

- 협약과제 목록 출력
- ⓐ 더블클릭 : 특정과제 선택
- ⓑ 우측클릭 : 바로가기 활성화



화면 / 메뉴 세부내용

재단 PMS에서 과제정보 전송
- 과제별 가상계좌 3개, 단체유형 등

← 상세보기 기능으로 선택한 과제정보 확인
- 재단 관리자 및 담당 회계법인 정보 등

1. 접근 방법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협약관리 → 협약상세정보

2. 협약과제상세정보

- 협약과제정보, 책임자정보, 과제유형 및 전년도과제정보, 당해년도연구비 등을 일괄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집행가능금액 : 정부/민간가상계좌 잔액 합계금액 조회 가능(펌뱅킹담당만 가능)
- 이자소득세 과세유형 (법인/개인사업과세)
 - 신한은행 영업부 (02-2151-5772)
- 단체/과제 유형 및 계좌정보 확인

2. 협약정보 – 예산관리

당해년도예산정보



화면 / 메뉴 세부내용

재단 PMS에서 과제정보 전송
- 재원별/비목별 예산

1. 접근 방법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협약관리 → 당해년도예산정보 비목별 예산관리

2. 비목별 예산 확인

- 접근 대상자는 책임자, 참여연구원, 수행기관관리자, 부처총괄관리자이며 예산은 재원별예산, 현금/현물 예산을 확인할 수 있음.
- 비목별 예산 : 최초예산/최종예산 확인

2. 협약정보 – 참여연구원관리

참여연구원관리



화면 / 메뉴 세부내용

재단 PMS에서 과제정보 전송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 월참여율, 지급한도 등 인건비 정보

1. 접근 방법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협약관리 → 참여연구원 관리

2. 참여연구원 확인

- PMS 시스템에서 등록한 참여연구원의 정보가 조회됨.
- 참여연구원의 정보 변경은 재단 PMS 에서만 가능
- 참여연구원 년월 정보 : 참여연구원 목록에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클릭하면 해당 연구원의 년월별 정보 조회 가능
 - 현금/현물금액 : 월 인건비 상한금액

▷ 펌뱅킹담당자 등록 – 책임자만 가능 (건별)

2. 협약정보 – 펌뱅킹담당자 관리



화면 / 메뉴 세부내용

건별지급방식

1. 접근 방법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협약관리 → 펌뱅킹담당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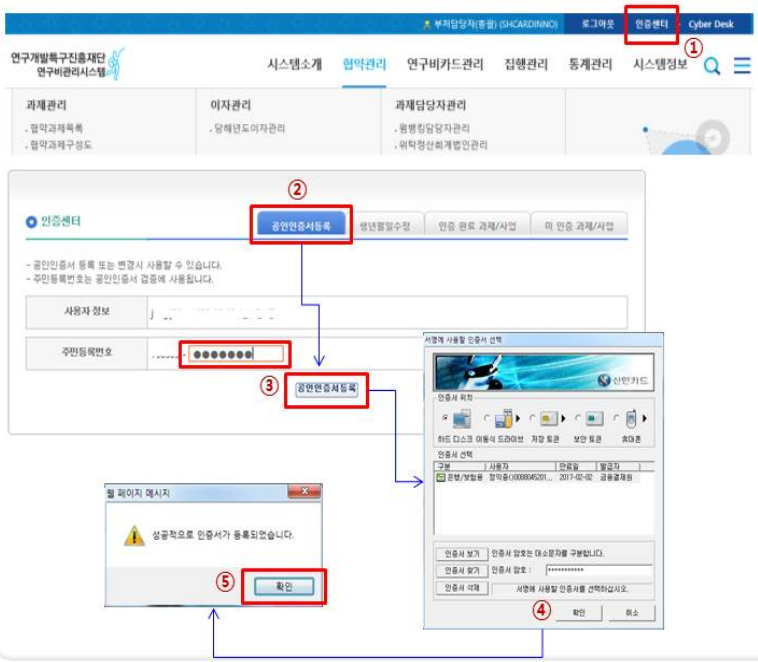
※ 펌뱅킹담당자관리 : 책임자만 접근가능
- 책임자ID로 접속하여 담당자 등록
 ※ 이지바로ID만 있으면 펌뱅킹담당자로 등록가능 (과제 참여여부 무관)
- 펌뱅킹담당자 : 구매/회계담당자, 참여연구원 및 책임자 中 복수등록 가능

2. 펌뱅킹담당자 관리

- 책임자ID 접속 → 협약 → 펌뱅킹담당자
① 사용자ID 검색
 - 참여자 or 구매/회계담당자ID 검색
 ※ 검색前 반드시 사용자(이지바로ID) 등록 필수
② ID입력 → ③ 검색 → ④ 대상자 선택
⑤ 등록 : 등록 후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

▷ 펌뱅킹담당자 인증서 등록 – 각 ID별 진행 (건별)

2. 협약정보 – 펌뱅킹담당자 관리



화면 / 메뉴 세부내용

건별지급방식

1. 접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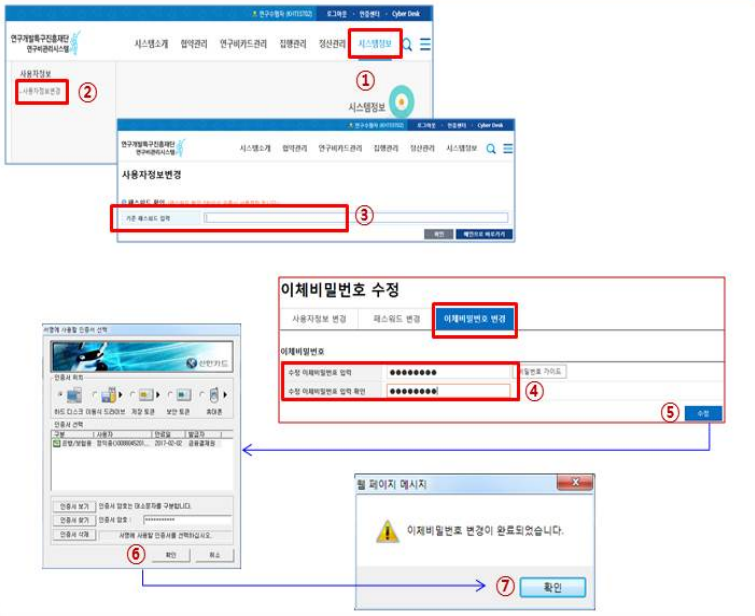
- 본인 ID/PW로 시스템 접속 후 상단 "인증센터" 화면 이동

※ 펌뱅킹담당자가 이체비밀번호를 설정하시려면, 반드시 개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합니다.

2. 펌뱅킹담당자 관리

- 책임자가 지정한 펌뱅킹담당자ID 접속
① 인증센터
② 공인인증서 등록
③ 공인인증서 등록
④ 개인공인인증서 승인
⑤ 확인

2. 협약정보 – 펌뱅킹담당자 관리



화면 / 메뉴 세부내용

건별지급방식

1. 접근 방법

- 본인 ID/PW로 시스템 접속 후 상단 "사용자정보 변경" 화면 이동

※ 이체비밀번호 변경 메뉴
- 책임자가 펌뱅킹담당자로 등록해야만 활성화 (이체시간 : 평일 09~21시)

2. 펌뱅킹담당자 관리

- 책임자가 지정한 펌뱅킹담당자 ID 접속
① 시스템 정보
② 사용자 정보변경
③ 로그인 할때 ID와 함께 입력하는 패스워드 입력
④ 이체비밀번호 입력 (재입력) →
※ 책임자가 등록한 ID만 활성화
⑤ 수정 → ⑥ 개인공인인증서 승인 →
⑦ 확인

2. 협약정보 – 이자 관리



화면 / 메뉴 세부내용

일괄지급방식

1. 접근 방법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협약관리 → 당해년도이자관리

2. 이자관리 확인

- 이자등록: 행추가 → 이자 입력 → 저장
- 저장취소: 해당목록에서 삭제

참고 : 건별지급방식은
- 가상계좌별 이자발생 (분기단위)
- 발생한 이자는 정산과 연계하여 처리



화면 / 메뉴 세부내용

건별지급방식

1. 접근 방법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협약관리 → 이월금관리

2. 이월금관리 확인

- 이월금 : 당해년도 과제종료1개월전 신청

① 차년도 과제정보 및 이월금 확정
- PMS에서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면 이지바로에 과제정보/금액 전송

② 이월 가능금액 조회
- 가상계좌 잔액 조회하여 이월금액이 잔액 범위에 있는지 확인 (잔액이 부족할 경우 PMS에서 재신청/승인/확정전송 全과정 다시 진행 필요)

③ 이월금 이체
- 차년도 과제 가상계좌로 이월금 이체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접근 방법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연구비카드관리 → 연구비카드발급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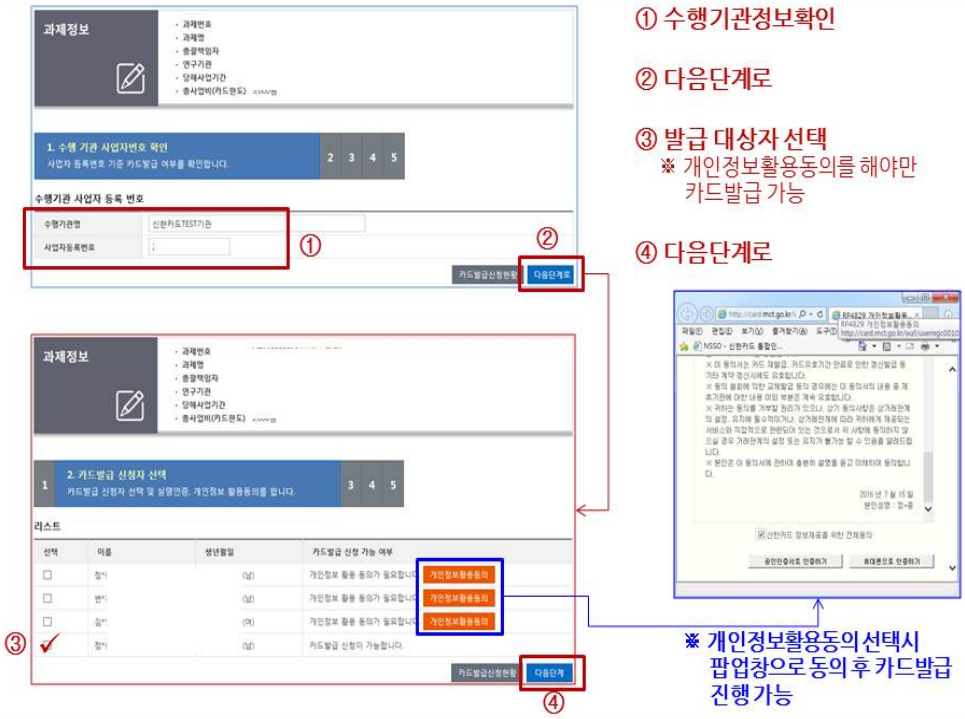
2. 진행 방법

- 카드발급신청 선택
- 약관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단계별 카드발급 진행 화면으로 이동

- 책임자 ID에서만 카드신청 가능
- 과제별 참여연구원 당 1개카드 발급가능
 - 과제에 책임자만 있으면 카드 1개 발급
 - 과제에 책임자 & 참여연구원 4명이면, 연구비카드 최대 5장 발급 가능

Ⅱ. 주요 프로세스 소개 - 카드 ▷ 연구비카드 신청 - ① 수행기관 정보 확인 → 대상자 선택

[Step 1] → [Step 2]



① 수행기관정보확인

② 다음단계로

③ 발급 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해야만 카드발급 가능

④ 다음단계로

※ 개인정보활용동의 선택시 팝업창으로 동의 후 카드발급 진행 가능

Ⅱ. 주요 프로세스 소개 - 카드 ▷ 연구비카드 신청 - ② 실명인증 → 카드종류/계좌 등록

[Step 2] → [Step 3]



①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실명인증 → 확인

③ 카드종류 및 결제계좌 정보 입력

④ 다음 단계

▶ 신청카드
- 다년도 과제카드 : INNO 연구비 신용카드
- 다년도 체크카드 : INNO 연구비 체크카드 (신한은행 Only)

※ 체크카드 사용 후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 신청시 반드시 잔고가 있는 계좌로 연결 필수

▶ 카드한도방식
- 과제한도 : "0" 입력 (자동입력)
- 카드별 월간한도 : 희망한도 입력

※ 한도는 단체 신용도에 따라 요청하신 희망한도와 다르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Ste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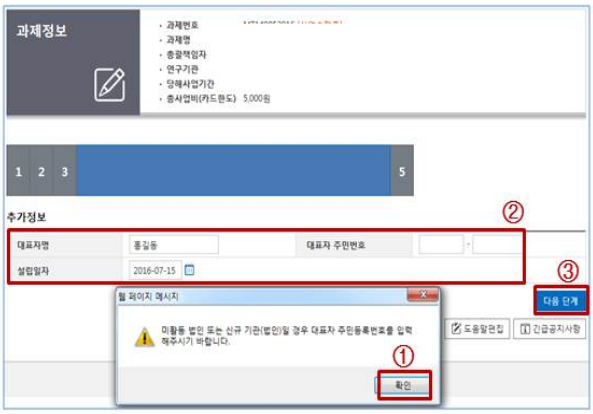
① 카드신청정보 입력
- 카드신청정보
- 수행기관정보
- 수행기관 관리자정보
- 신청자 정보

② 다음 단계

▶ 수령지선택:
- 연구관리자(수행기관관리자) 주소 or 신청자주소 中 선택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0000000000000" 입력
☞ '0' 13개

※ 연구비카드를 최초로 발급받거나, 카드 최종사용 후 **3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
→ 대표자정보, 설립일자 등록



① 확인

② 대표자정보, 단체 설립일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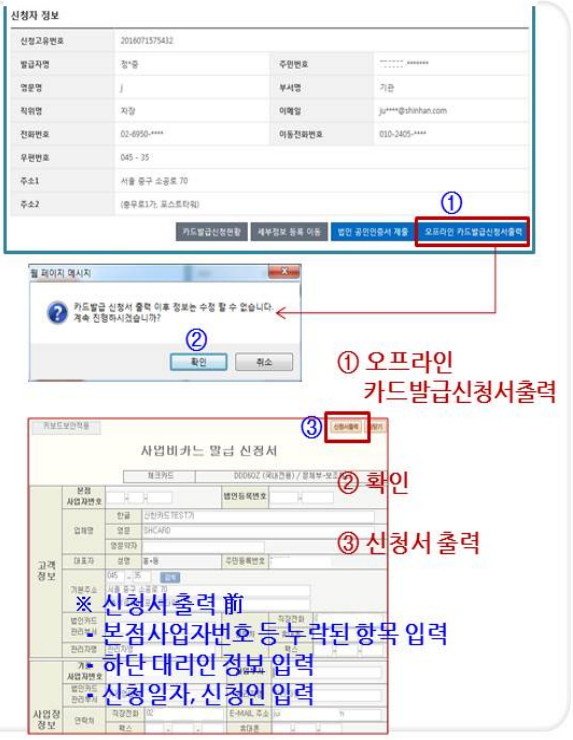
③ 다음 단계

④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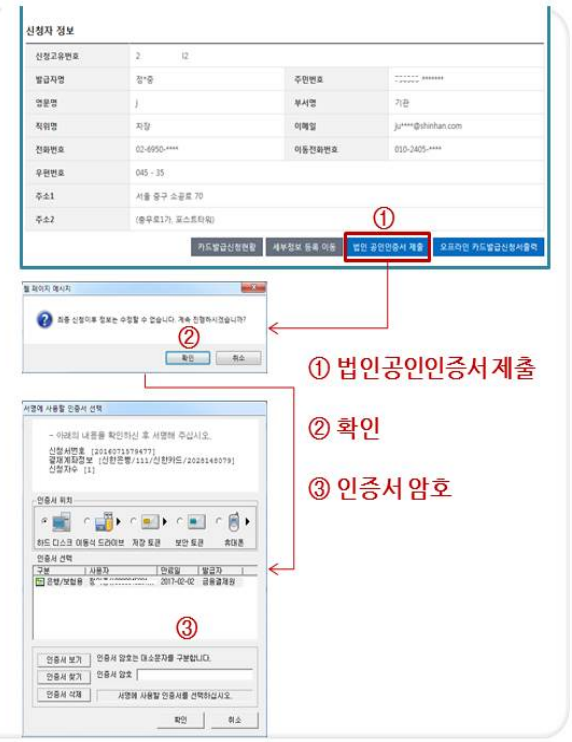


※ 카드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법인 공인인증서 제출하면 카드사 접수 완료 됨
- 오프라인 출력: 신청서 출력 후 우편접수


과제정보
4. 세부정보 등록
카드신청정보
수행기관정보
수행기관 관리자 정보
※ 수행기관 관리자는
- 카드 관리 담당자 정보 기재


신청자 정보
①
② 확인
취소
① 오프라인
카드발급신청서출력
③
사업비카드 발급 신청서
② 확인
③ 신청서 출력
※ 신청서 출력 前
- 본점사업자번호 등 누락된 항목 입력
- 하단 대리인 정보 입력
- 신청일자, 신청인 입력


과제정보
4. 세부정보 등록
카드신청정보
수행기관정보
수행기관 관리자 정보


신청자 정보
①
② 확인
① 법인공인인증서 제출
② 확인
③ 인증서 암호
③

Ⅱ. 주요 프로세스 소개 - 카드

오프라인 출력 신청서 外 첨부서류

오프라인으로 출력된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첨부서류를 신한카드 본사로 우편발송
- 서울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신한카드 공공영업팀 연구비/사업비카드 발급담당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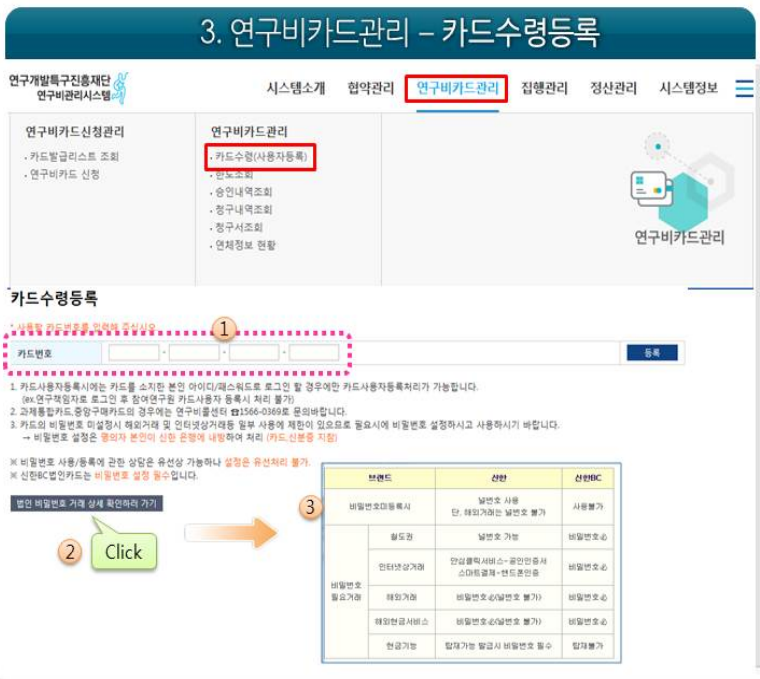
기관별 카드신청 첨부서류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신분증 사본(대리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재무제표, 주주(출자자)명부, 정관 사본
 ※ 재무제표 : 회계사확인필이 있는 재무제표확인원이 포함된 양식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신분증 사본(대리인), 예결산내역, 주주(출자자)명부, 정관 사본
-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상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2인경우) :
 고유번호증 內 법인등록번호가 표기 된 경우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 서류와 동일
 법인등록번호가 없거나 고유번호증 內 대표자 생년월일 표기 시 개인사업자와 동일
- **정부기관 신청 시** (고유번호증 상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3인 경우) :
 고유번호증사본, 발급요청공문(신청서 날인과 동일한 직인 必), 신청자 공무원증 사본 or 재직증명서

※ 신용정보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법인동의서-법인인감, 대표자동의서-대표자 개인인감)
※ 원본서류는 최근 3개월 內 발급분,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지점의 경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본점의 서류일체(상기 기관별 추가서류)
※ 기관의 성격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Ⅱ. 주요 프로세스 소개 - 카드

▷ 카드수령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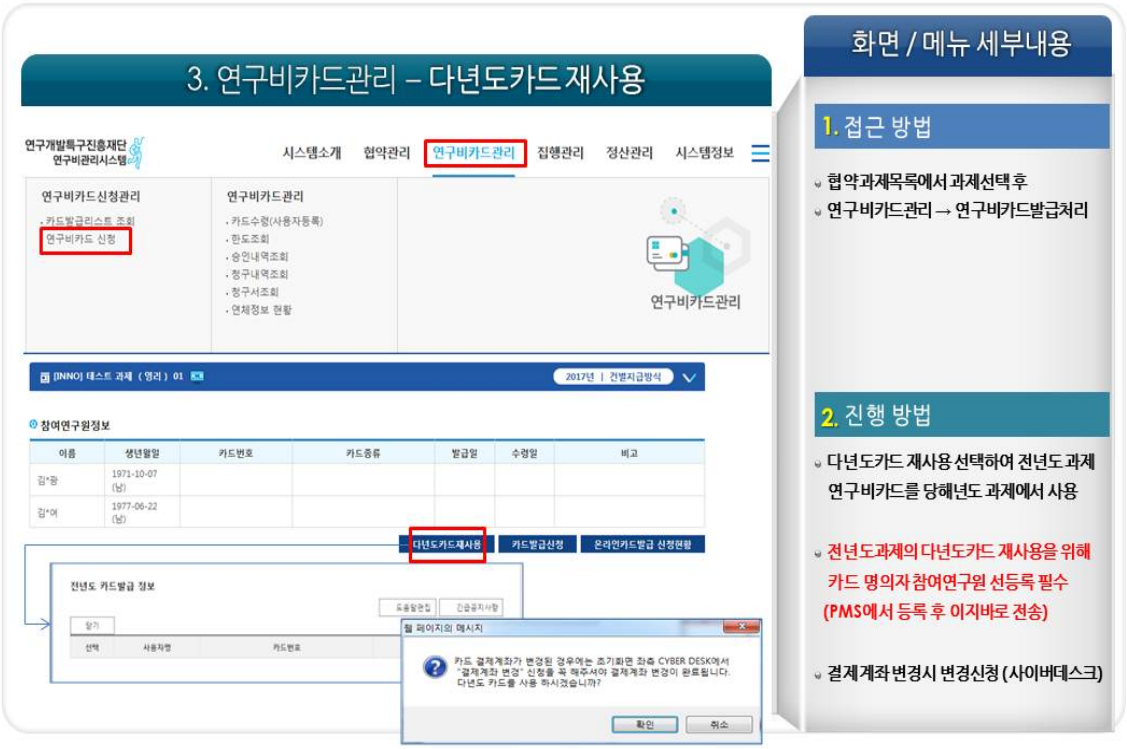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접근 방법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연구비카드관리 → 카드수령(사용자등록)

2. 진행 방법

- 카드사용등록은 본인 아이디에서만 가능
 - 책임자ID : 책임자 카드만 등록 가능
- 비밀번호 거래상세 확인
 - 비밀번호 필요거래 확인
 - 비밀번호는 신한은행 내방하여 설정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접근 방법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연구비카드관리 → 연구비카드발급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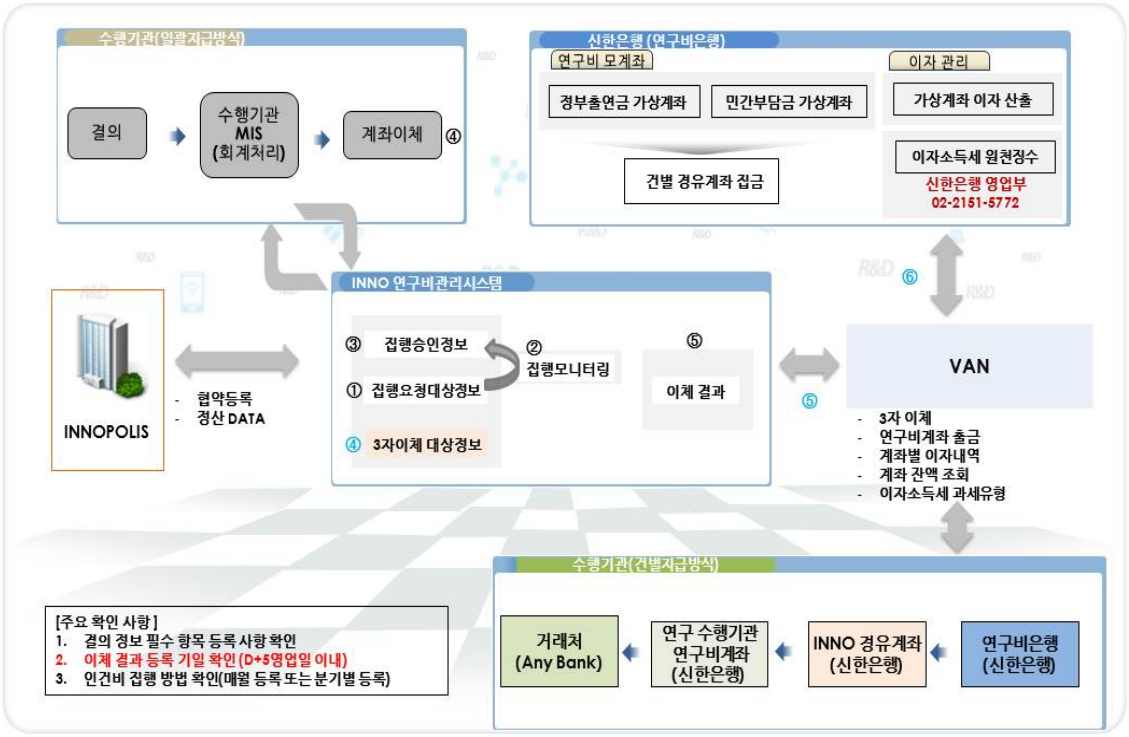
2. 진행 방법

- 다년도카드 재사용 선택하여 전년도 과제 연구비카드를 당해년도 과제에서 사용
- 전년도과제의 다년도카드 재사용을 위해 카드 명의자 참여연구원 선등록 필수 (PMS에서 등록 후 이지바로 전송)
- 결제계좌 변경시 변경신청 (사이버데스크)



Ⅲ. 주요 프로세스 소개 - 집행

▷ 집행 프로세스 주요사항 - 유형1,2



Ⅲ. 주요 프로세스 소개 - 집행

▷ 예실대비표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접근 방법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집행관리 → 예산실적대비표

2. 진행 방법

- 검색조건 입력
 - 사용기간 : 달력 아이콘 클릭
 - ☛ '1개월', '3개월'등 단위지정 가능
- 검색 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예실대비표' 영역 : 해당 조건에서의 협약과제 예산과 집행 현황 파악
- '집행방법 별 집행 내역' 영역 : 해당 조건에서의 집행 방법에 따른 집행 내역 확인 가능

- 결의등록기준/집행등록기준 각각 안내
- 연구비한도는 결의등록기준으로 관리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접근 방법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집행관리→ 결의/집행 정보조회

2. 진행 방법

- 검색조건 입력
- 각 결의 정보의 등록 방법에 따라 각각의 결의정보등록 화면으로 이동
 - 언더라인 항목 클릭(결의일, 등록방법 등)
 - 이동 : 계좌이체/연구비카드 각 등록화면
- 이동된 화면에서는 상세 정보를 조회 가능하고 확인완료 이전 단계인 결의등록 건은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음.



※ 한건(①번 정보)의 계좌이체로 두개(②번 정보) 이상의 세목으로 나누어서 결의등록 가능 (+행추가)

화면 / 메뉴 세부내용

⓪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① 집행관리
② 결의/집행 정보 등록(계좌이체)

③ 항목 입력
- 출금금액 입력
 - ☞ 건별 : 출금금액=사용금액
 - ☞ 일괄 : 출금금액=사용금액+부가세
- 계좌번호 : 입금될 최종 목적지 계좌번호
- 수취인조회 : 건별지급방식만 운영

※ 건별지급방식 :
실제 이체금액 = 출금금액 = 사용금액
(부가세는 이지바로에서 이체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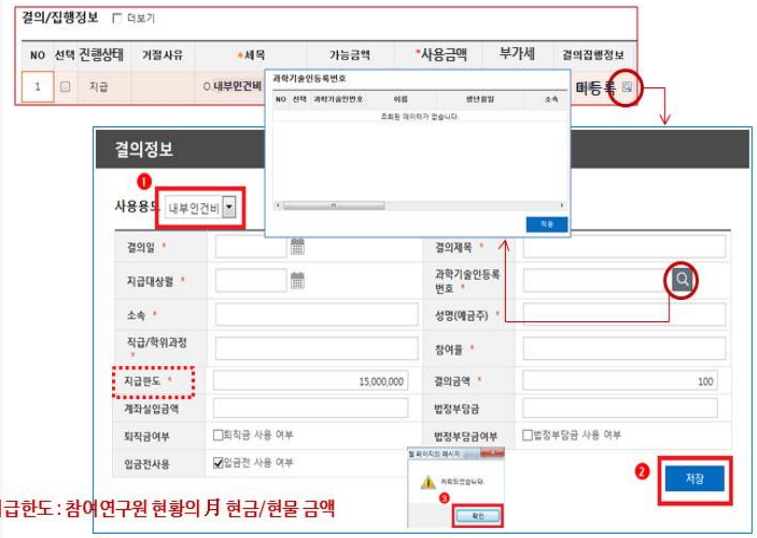
④ 결의/집행 정보 입력
- 세목별 가능금액 확인
- 사용금액에 입력한 금액만 예산에서 처리
 - ☞ 연구비 한도 차감 : 사용금액 기준

※ 부가세 환급 : 사용금액에 공급가액만 입력
- 사용금액 = 공급가액 입력
- 부가세 = 부가세 입력

※ 부가세 미환급 : 사용금액에 합계금액 입력
- 사용금액 = 공급가액+부가세 입력
- 부가세 = 0

⑤ 저장

결의/집행관리 – 계좌이체



지급한도 : 참여연구원 현황의 月 현금/현물 금액

입금 전 사용 : 사업비 예산 입금전 집행건 입력시 (D+5영업일 미체크)

법정부담금여부 : 실지급액과 법정부담금을 나누어서 결의할 경우, 해당월 전체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 합계를 한번에 결의 (과학기술인번호는 책임자 정보 선택)

퇴직금여부 : 퇴직금여부를 체크하면, 인건비 상한관리 없음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접근 방법

- 결의/집행정보 항목 중 '결의집행정보' 항목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용도별 결의정보 입력 팝업 화면 이동

※ 인건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항목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참여연구원 선택 → 정보 자동입력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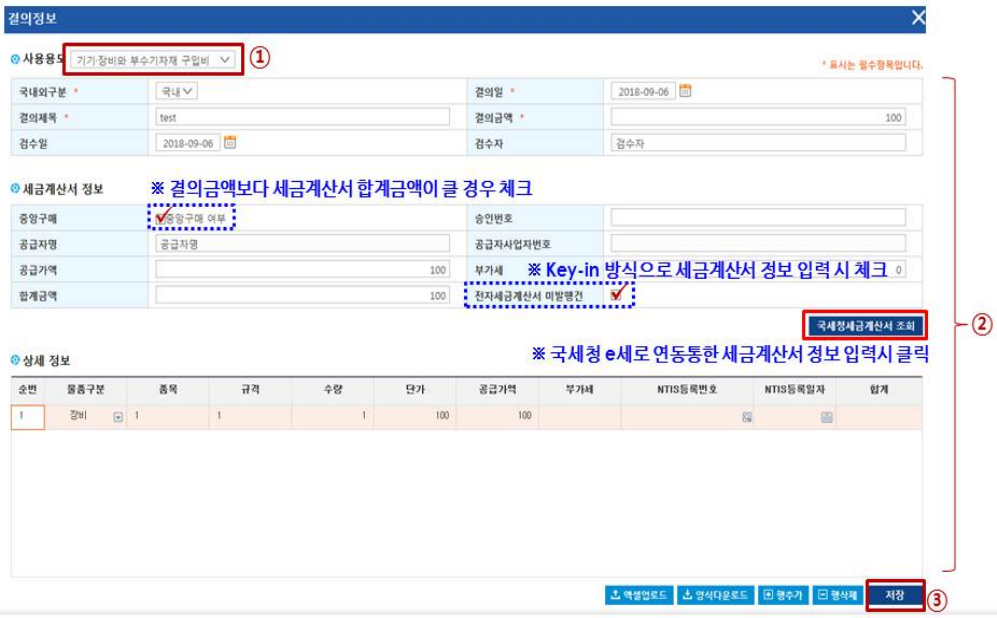
※ 지급한도 : 인건비 상한관리 (초과입력 不)
- ☛ 참여연구원현황의 月 현금/현물 금액
- ☛ 정보변경 : 재단 PMS 수정 후 이지바로 전송하여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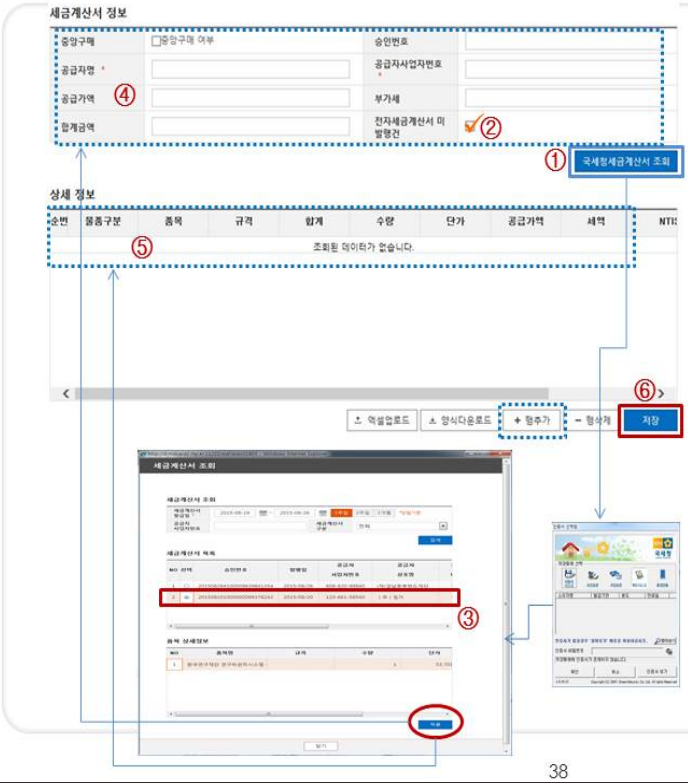
2. 진행 방법

- 결의집행정보를 선택하면 해당 사용 용도에 맞는 입력 양식이 표시됨
 - 사용 용도는 前단계에서 선택한 세목에 따라 메뉴가 구성
- 필수 항목들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표시됨.

▷ 집행 업무 주요 사항 : 연구장비재료비

☛ ① 사용용도 선택 → ② 세금계산서 정보 등 입력 (국세청 e세로 연동 or Key-in) → ③ 저장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방법]

▶ 국세청 e세로 연동을통한 정보입력

① 국세청 세금계산서 조회
- ☛ 법인 공인인증서 승인

③ 세금계산서 목록 중 선택 → 적용
- ☛ **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다음장 참조**

④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자동입력
- ☛ **자동입력 정보 수정 불가**

⑤ 상세정보 자동입력
- ☛ 수정가능하나, 전체 품목의 합계가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함.

⑥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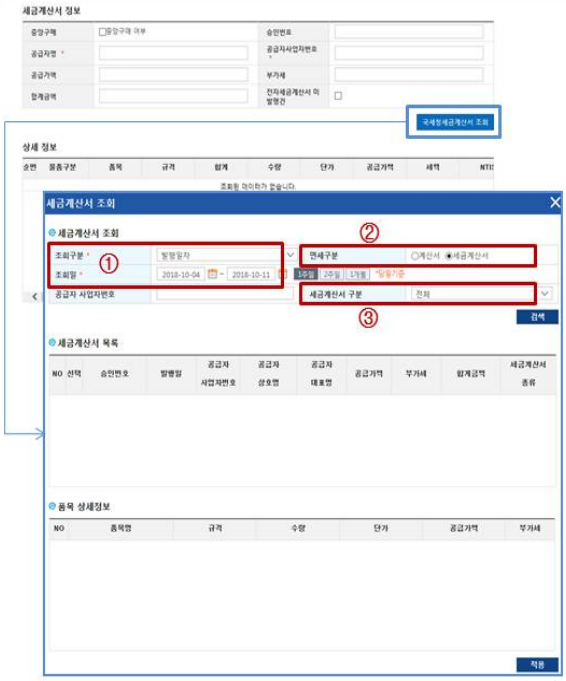
▶ 세금계산서정보를 직접 입력

②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건 체크

④ 세금계산서 정보 : Key-in 입력
- ☛ 승인번호, 공급자명, 공급자사업자번호
- ※ 금액은 ⑤상세정보 입력을 통해 진행

⑤ 상세정보 : Key-in 입력
- ☛ '+ 행추가' 선택 후 입력, 전체 품목의 합계가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일치

⑥ 저장



[국세청 e세로 연동통한 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① 조회구분/조회일
- 조회구분 : 발행일자, 작성일자, 전송일자 중 선택
- 조회일 : 조회구분에 해당하는 기준의 일자

조회일 시작/종료일 범위를 길게 설정 후 검색

※ **발행**일자 선택시, 입력한 조회일에 **발행**한 계산서 조회

※ **작성**일자 선택시, 입력한 조회일에 **작성**한 계산서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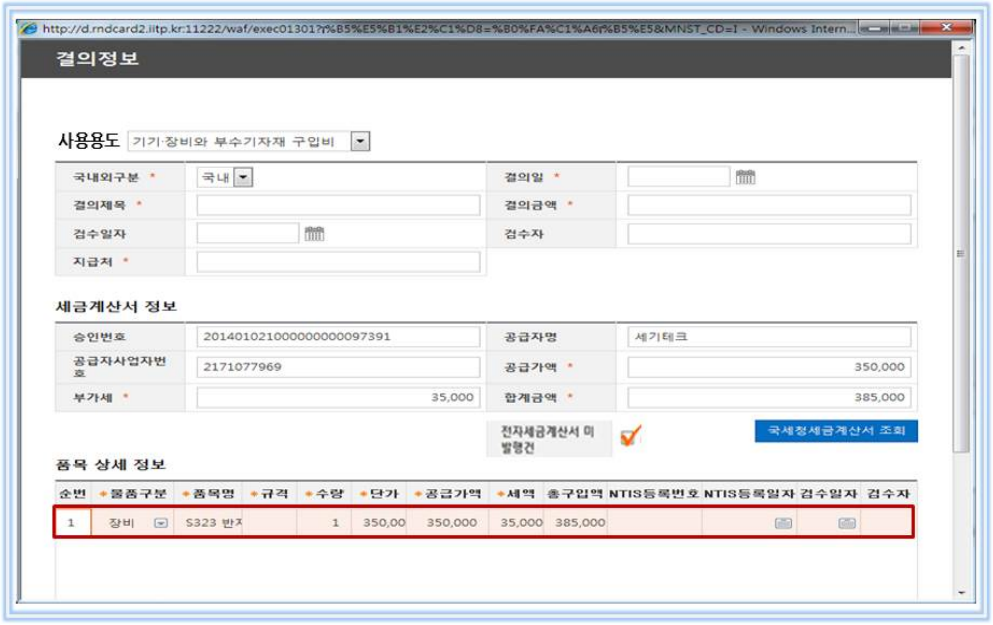
※ **전송**일자 선택시, 입력한 조회일에 **전송**한 계산서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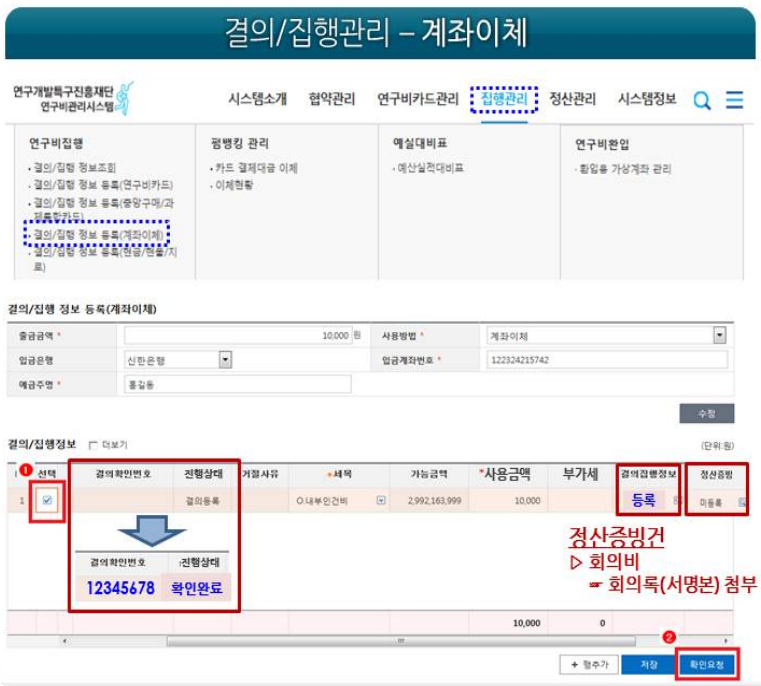
② 면세구분
- 계산서, 세금계산서 중 선택

③ 세금계산서 구분
- 전체 or
- 일반, 영세율, 위수탁, 수입, 위수탁영세율 중 선택

▷ **Data** 등록 완료

☞ 세금계산서 연동 or Key-in을 통하여 사용용도 등록완료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접근 방법

- 사용용도별 결의 정보 등록 후 확인 버튼 클릭 시 입력 정보 저장 후 결의/집행정보등록(계좌이체) 화면으로 이동
- 정산증빙: 하단 돋보기 선택하여 첨부 - 서류 첨부기능

2. 진행 방법

- '결의 정보' 목록의 '선택' 열(2번째 열)에서 확인 요청하려는 건을 선택함.
- 하단의 '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결의 건을 최종 등록
- 확인 요청 → 진행상태 '확인완료'로 변경 결의확인번호 채번

결의/집행관리 – 계좌이체



화면 / 메뉴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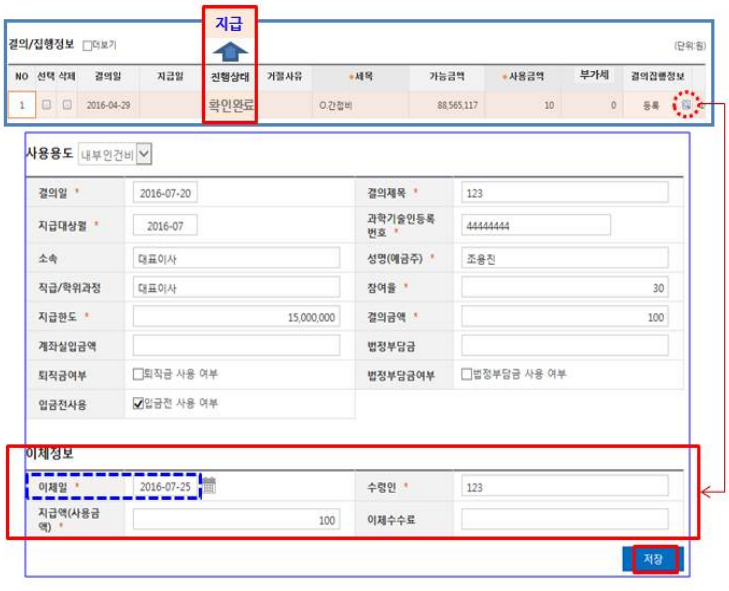
건별지급방식

1. 진행 방법

1. 진행상태가 '확인완료' 인 건 선택
2. '지급' 버튼을 클릭
 → 이체 팝업화면으로 이동
3. '출금정보(연구비계좌)' 확인
4. '입금정보(거래처계좌)' 확인
5. 펌뱅킹담당자 이체비밀번호 입력
6. '이체' 버튼을 클릭 → 법인공인인증서 검증 후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 표시
7. '확인'
8. '진행상태' '지급'상태로 변경됨.

※ 계좌이체진행상태
- 결의등록 → 확인완료 → 지급

결의/집행관리 – 집행 정보 등록



화면 / 메뉴 세부내용

일괄지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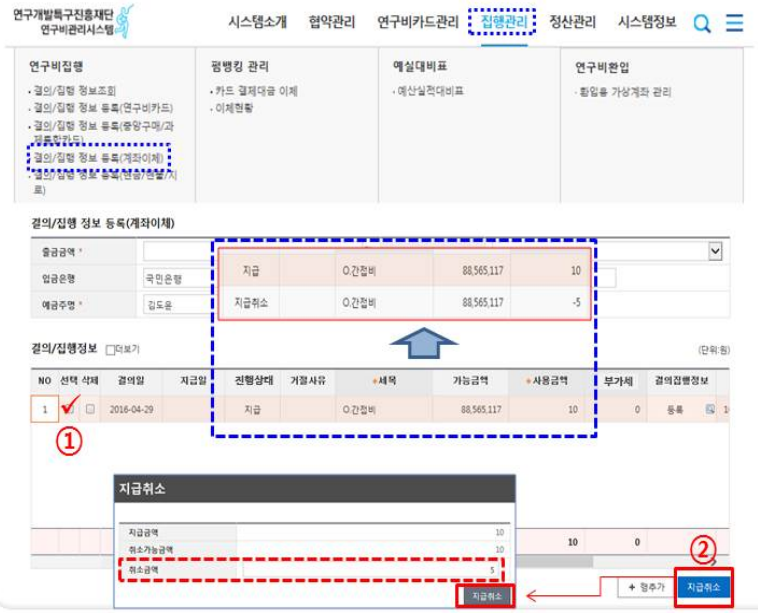
1. 접근 방법

- 결의/집행정보 항목 중 '결의집행정보' 하단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체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함.

2. 진행 방법

- 결의등록한 정보 하단에 이체정보 입력란 생성
- 이체정보의 필수 항목들을 입력하고 저장
 - 이체일 : 연구기관에서 실제 이체한 날짜
 - D+5영업일 여부 확인 : 입력한 이체일과 시스템에 입력하는 현재시점의 날짜를 비교하여 체크
 - 저장시 상태변경 : 확인완료 → 지급

예산실적대비표/결의/집행관리 – 지급취소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접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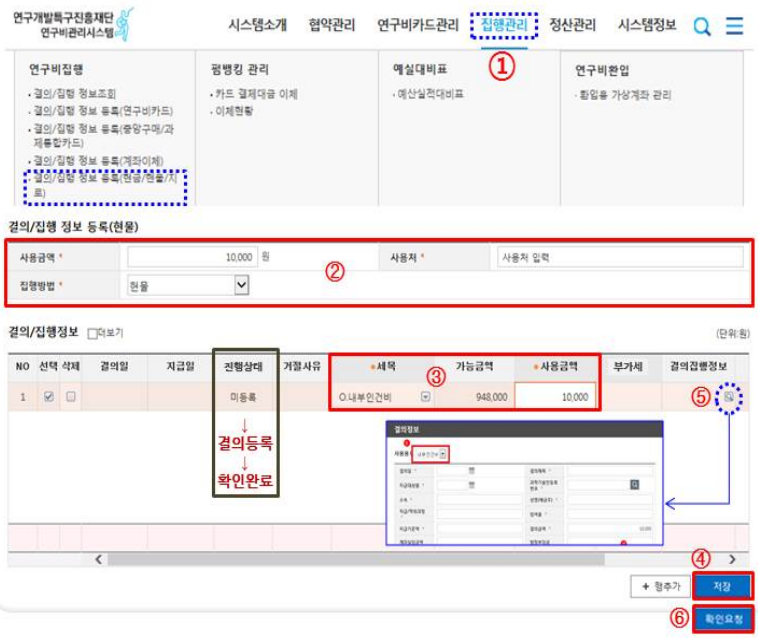
- 지급이 완료된 집행건을 선택하여 지급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진행 방법

- '결의/집행 정보' 목록의 지급취소하려는 "결의/집행정보" 선택
- 하단의 '지급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취소창 팝업 실행
- 지급 취소금액 입력 후 "지급취소" 선택
 - 전체취소/부분취소 가능
- 원건과/취소건이 한쌍으로 표시

계좌이체/연구비카드 지급취소 가능

결의/집행관리 – 현물



화면 / 메뉴 세부내용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① 집행관리→
결의/집행 정보 등록(현금/현물/지로)

② 사용금액/사용처/집행방법(현물)

③ 세목/사용금액 입력
- 세목 선택 : 해당 세목의 가능금액 확인
 ☛ 사용금액은 가능금액 이하

④ 저장 (미등록→ 결의등록)

⑤ 별도 화면에서 세목별 Data 등록

⑥ 확인요청 (결의등록→확인완료)

※ 현물 입력시 주의사항
1. 현물은 지급단계가 없으므로, 결의등록→ '확인완료' 까지만 입력
2. 현물이라도 인건비는 매월 입력
3. 연구장비의 경우 과제시작 후 1개월 이내 입력

결의/집행관리 – 연구비카드



화면 / 메뉴 세부내용

⓪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① 집행관리→결의/집행정보등록(연구비카드)
② 카드사용건 선택

③ 세목/사용금액/세액 입력
- 세목 선택 : 가능금액 ≥ 사용금액
- 사용금액과 부가세 입력
 ☛ 사용금액만 연구비 예산에서 처리
 (세액은 예산에서 처리되지 않음)

※ 부가세 환급 : 사용금액에 공급가액만 입력
- 사용금액 = 공급가액 입력
- 부가세 = 부가세 입력

※ 부가세 미환급 : 사용금액에 합계금액 입력
- 사용금액 = 공급가액+부가세 입력
- 부가세 = 0

※ 한건(②)의 카드사용건으로 두개(③) 이상의 결의등록 가능
- 하단 행추가 후 정보 입력
- ②의 총사용액 = ③의 사용금액+부가세

④ 저장 (미등록→결의등록)
⑤ 별도 화면에서 세목별 Data 등록
⑥ 확인요청 (결의등록→확인완료)

※ 진행상태 자동변경 : 확인완료→지급
- 일괄 : 결제일 도래 / 건별 : 결제대금 이체

결의/집행관리 – 연구비카드



화면 / 메뉴 세부내용

건별지급방식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집행관리→카드결제대금 이체

1. 진행 방법

① 카드결제대금 입금정보
☛ 연구비카드 자동이체 계좌

② 이체 대상건 선택
☛ 당월금액만 이체

③ 카드결제대금이체

※ 매달 결제일 전에 카드 자동이체 계좌로 카드결제대금 이체 (연체 방지)

※ 청구내역은 카드사 청구데이터이고, 대략 결제일 5~7일 前 확인 가능

체크카드는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 범위內에서 사용가능
건별지급방식 : 건별 결의등록/확인완료 후 건별 지급



① 결의/집행정보 등록 (연구비카드)

② 카드사용건 선택

③ 세목/사용금액/세액 입력
- 세목 선택 : 가능금액 ≥ 사용금액
- 사용금액과 부가세 입력
 ☞ 사용금액만 연구비 예산에서 처리
 (세액은 예산에서 처리되지 않음)

※ 부가세 환급 : 사용금액에 공급가액만 입력
- 사용금액 = 공급가액 입력
- 부가세 = 부가세 입력

※ 부가세 미환급 : 사용금액에 합계금액 입력
- 사용금액 = 공급가액+부가세 입력
- 부가세 = 0

※ 한건(②)의 카드사용건으로 두개(③) 이상의 결의등록 가능
- 하단 행추가 후 정보 입력
- ②의 총사용액 = ③의 사용금액+부가세

④ 저장 (미등록 → 결의등록)

⑤ DATA 등록

⑥ 확인요청 (결의등록 → 확인완료)

⑦ 지급 (다음장)
- 건별지급방식만 해당
- 일괄지급방식은 결제일이 도래되면 자동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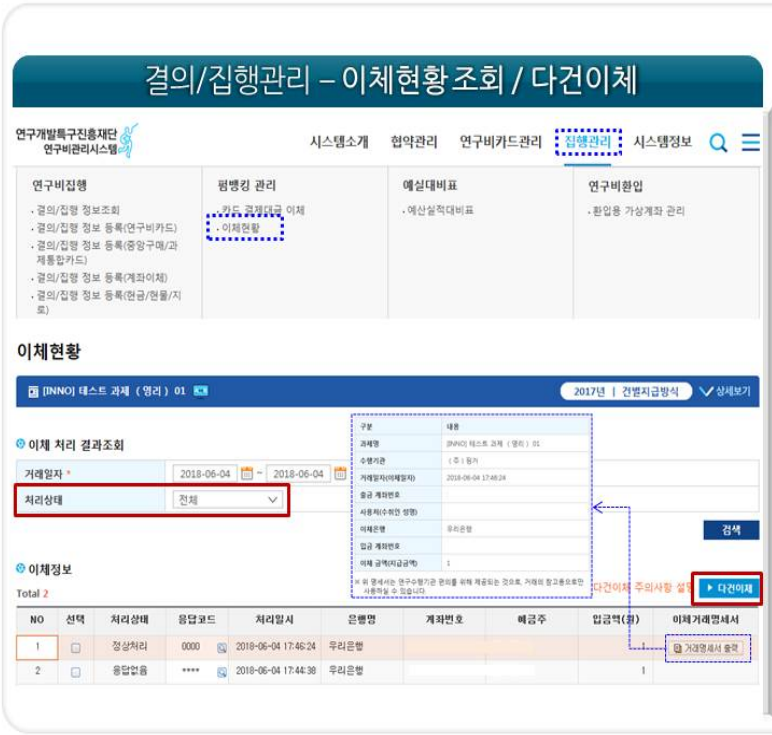


건별지급방식

① 지급
- 실제 이체되는금액 = 입금액
 = 사용금액+부가세

② 펌뱅킹이체비밀번호
- 출금정보 : 연구기관 연구비계좌
- 입금정보 : 연구기관 체크카드 연결 계좌

③ 이체
- 법인공인인증서 승인
- 이체금액=입금액=사용금액+세액
- 진행상태 : 확인완료 → 지급



화면 / 메뉴 세부내용

건별지급방식

- 협약과제목록에서 과제선택 후
- 집행관리 → 이체현황

◆ 처리상태
- 정상: 이체가 정상적으로 완료 건
- 실패: 이체가 실패한 건
- 대기: 진행상태가 '확인완료'인 상태로 다건 이체가 가능한 상태
- 응답없음: 응답코드가 '____'인 상태로 서버로부터 응답결과를 못 받은 상태

▶ 다건이체
1. 다건 이체 대상 "대기" 선택
 - 처리상태가 '확인완료'만 선택 됨.
2. [다건이체] 버튼을 클릭 하여 이체 팝업 창에서 이체대상을 확인합니다.
 - 최대 5건까지 선택 가능
 - 법인공인인증서 승인 후 이체

구 분		건별지급방식	일괄지급방식	건별상태
계좌이체	① 결의등록	집행건별 결의등록 → 세세목별 Data 등록 → 확인완료 (결의확인번호)		확인완료
	② 이체처리	결의확인번호 부여건만 이체 가능		
		이지바로 3자이체 (사용금액 限)	수행기관 자체 이체	
	③ 집행등록	이체처리와 동시에 자동 집행등록	이체처리(D일) 이후 5영업일內 등록	지급
사업비카드 [체크카드] 건별처리	① 결의등록	집행건별 결의등록 → 세세목별 Data 등록 → 확인완료 (결의확인번호)		확인완료
	② 이체처리	카드 결제대금 이체 (월1회, 총금액)	카드사 자동이체	
	③ 집행등록	결제대금 이체 : 확인완료→지급	결제일 도래 : 확인완료→지급	지급
현물	① 결의등록	집행건별 결의등록 → 세세목별 Data 등록 → 확인완료 (결의확인번호)		확인완료
	② 이체처리 ③ 집행등록			

※ 연구비카드 건별 진행상태 자동변경 (확인완료 → 지급)

- 건별지급방식 : 카드결제대금 이체시 실시간 변경 (이체 후 확인완료시 익영업일 변경)
- 일괄지급방식 : 결제일 도래

※ 정산신청시 건별 진행상태 체크 : 계좌이체 - 지급, 연구비카드 - 확인완료, 현물 - 확인완료

건별지급방식

결의/집행관리 – 환입처리

[환입용 가상계좌 환입]

- 업무정의 : 취소 등 사유로 연구비의 환입이 필요한 경우 **사유별로 이지바로에 등록 후 지급된 연구비를 환입용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업무**

- 업무 처리절차
 ① **이지바로 등록** : 발생 업무 사유별 각각의 화면에서 등록
 ② **환입용 가상계좌**에 **환입금액 입금** ※ 등록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입금 가능
 ③ **익일 오전 9시** 처리완료

- 발생 사유
 (1) 지급취소(계좌이체/연구비카드) : ① 이지바로 취소 등록 → ②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
 (2) 지급삭제(연구비카드 체크카드) : ① 이지바로 삭제 등록 → ②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
 (3) 연구비카드 승인취소 : **상계 - 이지바로 결의등록(확인완료)**
 환불 - ① 이지바로 결의등록(확인완료) → ② 환입용 가상계좌입금
 (4) 연구비카드 정산미표기 : ① 이지바로 결의등록(확인완료) → ② 환입용 가상계좌입금
 (5) 연구비카드 결제 후 부가세 환입
 ① 건별 결의등록 → ② 카드 결제대금 이체 →
 ③ 이지바로 부가세 등록 → ④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

상태 정보

1. 환입 상태정보

- **입금계획** : 사유별 이지바로 등록
- **입금계획 취소** : 등록 후, 입금 前 취소
- **입금처리중** : 입금 후 이지바로 반영 前
- **입금완료** : 환입용가상계좌 입금반영
- **입금취소** : 연구비계좌로 환불
 ☞ 당일 이체 가능시간까지 입금취소
- **처리완료** : 익일 9시 일괄변경
 (입금완료 → 처리완료)
- **처리취소** : 연구비계좌로 환불

2. 연구비카드 승인취소

- **상계** : 결제 예정금액에서 취소금액 제외한 후 청구
- **환불** : 청구 후 취소건 발생하여, 결제일 이후 취소금액 환불

건별지급방식

● **지급취소(계좌이체, 연구비카드)**

- 업무 처리절차
 (1) **이지바로 '지급취소' 등록** : 진행상태가 "**지급**"인 경우 등록 가능
 (2) 환입용 가상계좌에 **취소금액 입금** ※ 인터넷뱅킹 등 연구기관 자체 이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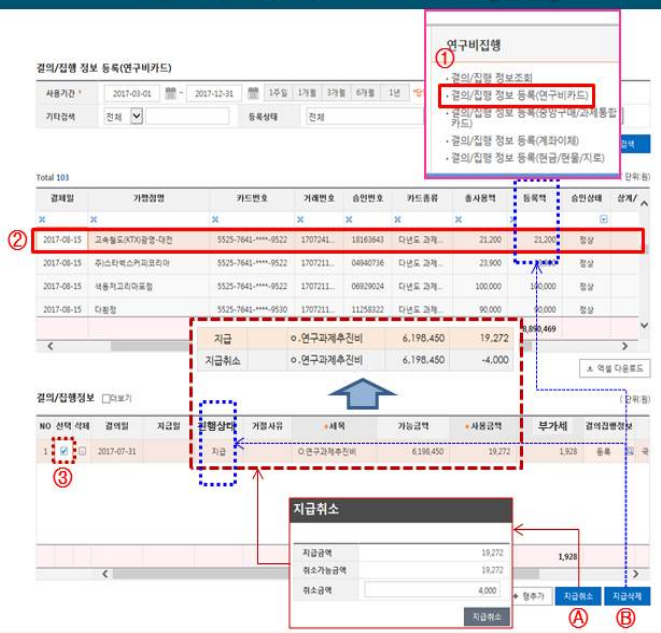


① 원건 선택
② 하단의 '지급취소' 버튼 클릭
- 지급취소 화면실행
③ 취소금액 입력
④ '지급취소' 선택
※ 지급취소시점에 환입용 가상계좌에 취소금액 입금계획 셋팅
⑤ 환입용가상계좌 취소금액 입금
☞ 취소금액=입금금액
※ 금액이 다르면 입금 불가

환입용가상계좌 관리화면으로 이동

건별지급방식

결의/집행관리 – 연구비카드(신용)



화면 / 메뉴 세부내용

① 결의/집행 정보 등록(연구비카드) 선택
② 카드사용건 선택
③ 지급취소/삭제 대상건 선택
※ 진행상태가 지급일 경우만 가능

Ⓐ 지급취소
- 연구비카드 취소는 원건의 가맹점에서 승인취소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맹점 승인취소가 불가하거나, 가맹점이 취소수수료 징구할 경우 "지급취소" 처리

[지급취소 예시] – KTX 승차권
- 정상승인 1만원, 승인취소 8천원
취소수수료 2천원
→ 정상승인건에서 2천원 지급취소

※ 지급취소 등록시 환입용 가상계좌에 취소금액 입금계획 셋팅
→ 취소금액을 입금해야 처리완료
→ 미입금시 정산신청 불가

Ⓑ 지급삭제 - 등록정보 삭제 (초기화)
☞ 진행상태 : 지급 → 미등록
☞ 등록액 : 21,200 → 0
※ 지급삭제 후 재등록 가능 (우회적 수정)
※ 신용카드 지급삭제는 입금계획 없음
※ 부가세 환입등록 후 지급삭제 불가

건별지급방식



● 결의/집행 정보 등록(연구비카드) 선택

① 체크카드 지급이 완료된 건 선택

② 지급취소/삭제 대상건 선택
※ 진행상태가 지급일 경우만 가능

Ⓐ 지급취소
- 연구비카드 취소는 원건의 가맹점에서 승인취소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맹점 승인취소가 불가하거나, 가맹점이 취소수수료 징구할 경우 "지급취소" 처리

[지급취소 예시] – KTX 승차권
- 정상승인 1만원, 승인취소 8천원
취소수수료 2천원
→ 정상승인건에서 2천원 지급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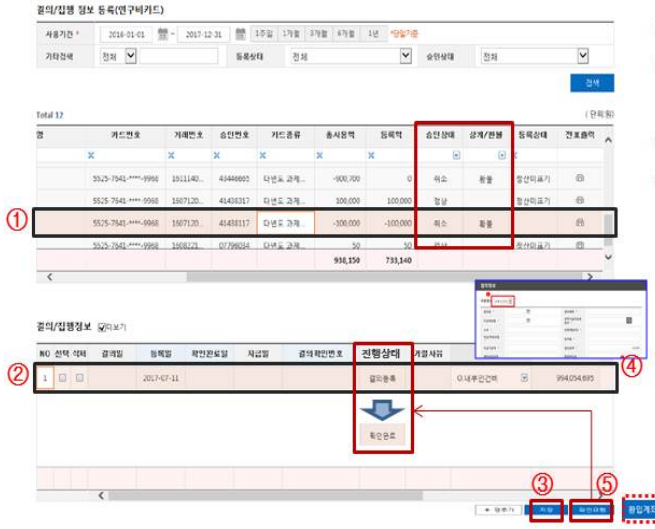
※ 지급취소 등록시 환입용 가상계좌에 취소금액 입금계획 셋팅
→ 취소금액을 입금해야 처리완료
→ 미입금시 정산신청 불가

Ⓑ 지급삭제 - 등록건 삭제 후 재등록 가능
☞ 진행상태 : 지급 → 미등록
☞ 등록액 : 3,000 → 0
※ 지급삭제 시점에 환입용가상계좌 입금계획 셋팅
→ 취소금액을 입금해야 처리완료
→ 미입금시 정산신청 불가

※ 부가세 등록 후 지급삭제 불가

건별지급방식

● 연구비 신용카드 승인취소
- 상계건 : 이지바로 '결의등록(확인완료)'
- 환불건 : (1) 이지바로 '결의등록(확인완료)' → (2) 환입용 가상계좌에 승인취소금액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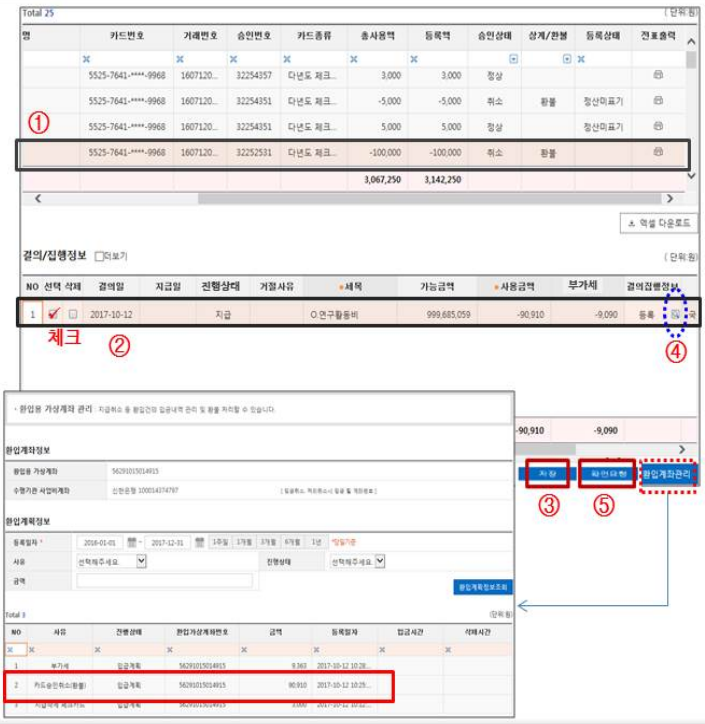


① 대상건 선택: 승인상태 취소건
② 세목선택 및 금액 입력
③ 저장
☞ 진행상태: 미등록 → 결의등록
④ 결의/집행정보: 세세목별 Data 등록
⑤ 확인요청
☞ 진행상태: 결의등록 → 확인완료
※ 환불건은 확인완료시점에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계획 셋팅

⑥ 환불건 환입용 가상계좌에 입금
☞ 취소금액=입금금액
※ 금액상이시 입금 불가

환입용가상계좌 관리화면으로 이동

건별지급방식



체크카드 승인취소는 전건 환불되어 전건 환입용가상계좌 입금계획

따라서, 정상승인 원건 반드시 지급처리 필수

① 대상건 선택: 승인상태 취소건
② 세목선택 & 사용금액/세액 입력
③ 저장
☞ 진행상태: 미등록→결의등록
④ 결의/집행정보: 세세목별 Data 등록
⑤ 확인요청: 진행상태가 "지급"으로 변경
☞ 진행상태: 결의등록→지급
※ 지급시점에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계획 셋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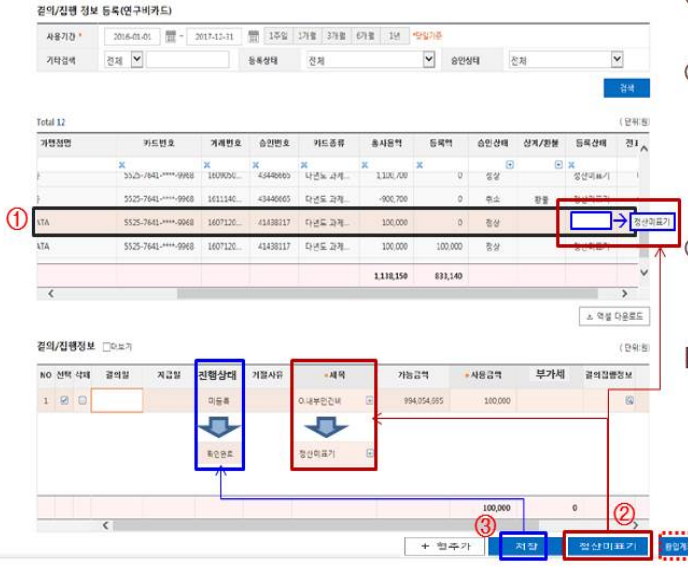
⑥ 환입용 가상계좌에 입금
☞ 취소금액=입금금액
※ 금액상이시 입금 불가

건별지급방식

● 연구비 신용카드 정산미표기

(1) 이지바로등록: 정산미표기→ 저장 : 반드시 확인완료 단계까지 등록

(2) 환입용 가상계좌에 정산미표기금액 입금 ※ 인터넷뱅킹 등 연구기관 자체 이체처리



① 대상건 선택

② 정산미표기(진행상태 미등록건만 가능)

☞ 등록상태/세목변경: 정산미표기

③ 저장

☞ 진행상태 변경: 미등록→ 확인완료

※ 확인완료시점에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계획 셋팅

④ 환입용 가상계좌에 입금

[승인취소건] 정상승인 원건과 함께 정산미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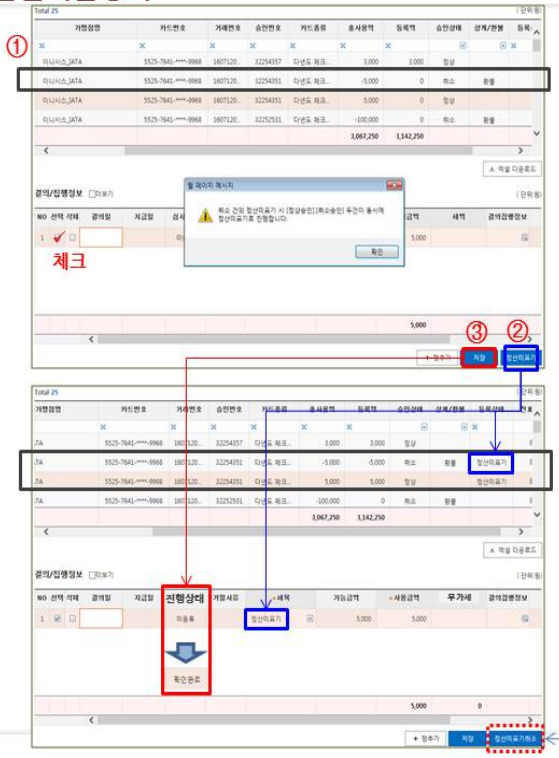
- 상계 : 정상건/취소건 모두 입금계획 없음
- 환불 : 취소건만 입금계획 셋팅

☞ 승인취소건 단독 정산미표기 불가

☞ 부분 승인취소건 정산미표기 불가

환입용가상계좌 관리화면으로 이동

건별지급방식



- 등록기준 : 미등록 상태에서만 등록 가능
 - ☞ 미등록 상태에서는 연구비 지급 없음
 - ∴ 입금계획 없음
- 정상승인건 단독 : 정산미표기 가능
- 승인취소건 : 정상승인 원건과 함께 정산미표기
 - ☞ 승인취소건 단독 정산미표기 불가
 - ☞ 부분 승인취소건 정산미표기 불가

※ 전체취소 예정시 원건/취소건 동시등록하여 이체 없이 진행 가능

① 대상건 선택

② 정산미표기

☞ 등록상태/세목변경 : 정산미표기

③ 저장

☞ 진행상태 변경 : 미등록 → 확인완료

▶ 정산미표기 : 미등록 상태에서만 가능

체크카드 미등록 :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

따라서, 체크카드 정산미표기는 입금계획 없음

◁ 정산미표기 등록건 취소 가능

건별지급방식

● 연구비카드 부가세 등록

(1) 이지바로등록: 부가세조회 → 카드부가세등록: '당월금액= 사용금액합계+부가세합계'이면 부가세등록 가능

(2) 환입용 가상계좌에 부가세 합계금액 입금 ※ 인터넷뱅킹 등 연구기관 자체 이체처리



① 대상건 선택

② 부가세 조회

③ 카드부가세등록(당월=사용금액+부가세)

☞ 부가세등록상태 변경: 입금계획

※ 부가세등록 시점에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계획 셋팅

④ 환입용 가상계좌에 입금

☞ 부가세등록상태 변경: 입금완료 → 처리완료 (익일 09시)

※ 연체금액은 카드사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이체 (연체금액은 일단위로 변경될 수 있음)

※ 부가세 등록 후 연구비카드 지급삭제 불가

건별지급방식



① 대상건 선택

② 부가세 조회

③ 체크카드부가세 등록(당월=사용금액+부가세)

☞ 부가세등록상태 변경: 입금계획

※ 부가세등록 시점에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계획 셋팅

④ 환입용 가상계좌에 입금

☞ 부가세등록상태 변경: 입금완료 → 처리완료 (익일 09시)



당월금액 : 동일한 결제일자를 갖고 있는 체크카드 거래 합계

환입용가상계좌 관리화면으로 이동

※ 당월금액 : 동일한 결제일을 가진 카드 매출건의 합계

※ 지급금액 : 진행상태 '지급'건의 '사용금액+부가세' 합계

※ 이체상태 : '당월금액=지급금액' 이면 '입금완료'로 변경

※ 체크카드 부가세 등록은 결제일 당일부터 가능

※ 부가세 등록 후 연구비카드 지급삭제 불가



건별지급방식



① 환입 사유별 등록시 입금계획 자동셋팅

②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처리

③ 익일 9시 처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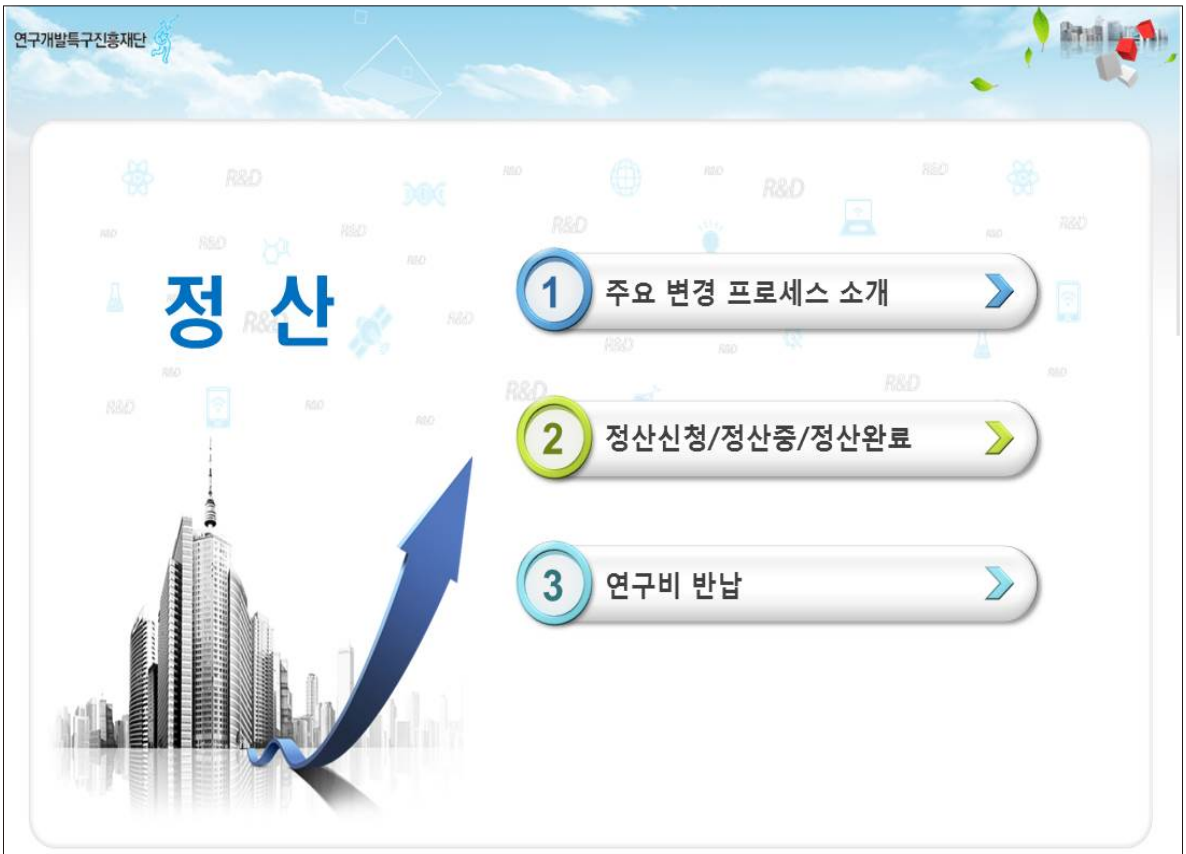
※ 연구기관 가능업무
- 입금계획 취소 : 원건 미등록 상태로 변경
- 임금취소 : 연구비계좌 환불 및 원건 미등록 상태로 변경

※ 입금계획, 입금처리중, 입금완료, 오류건 존재시 정산신청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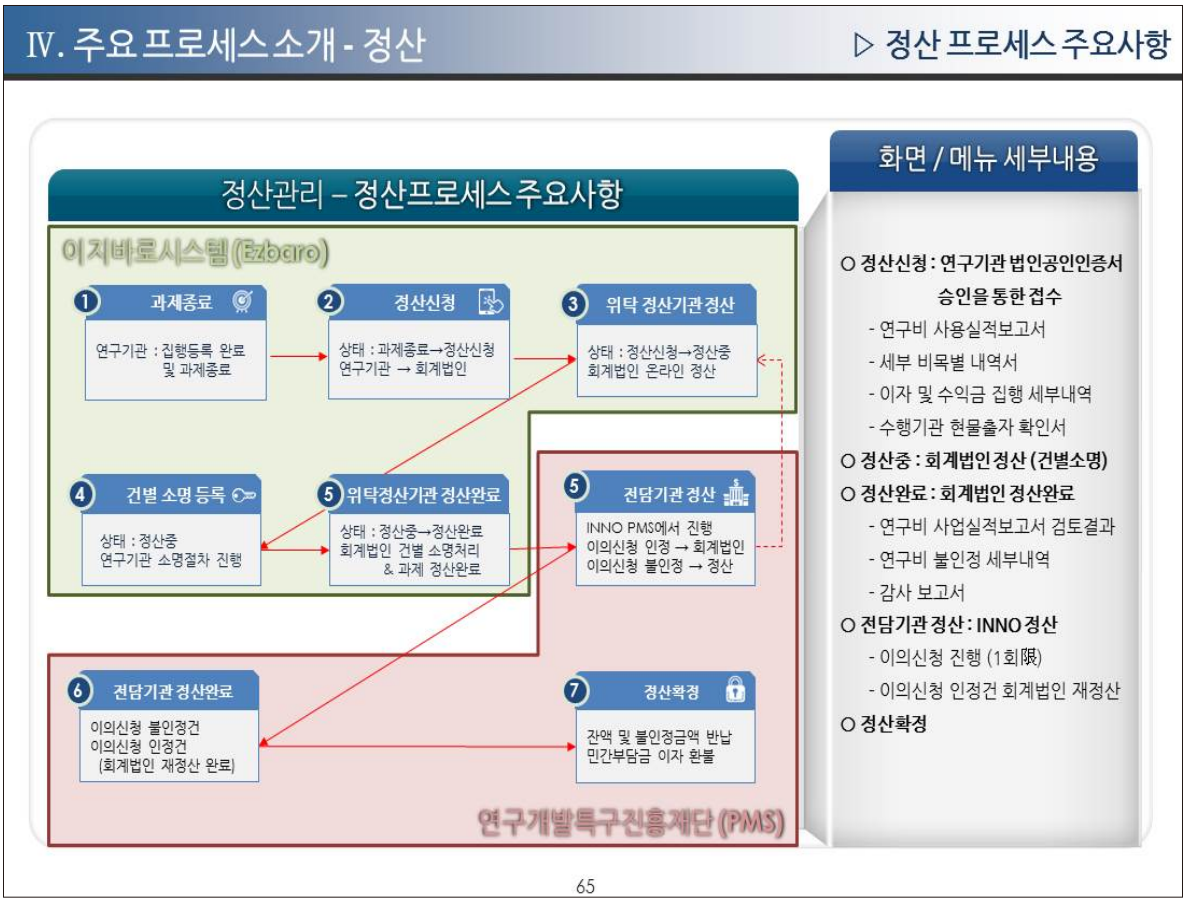
▶ 진행상태
- **입금계획** : 사유별 이지바로 등록
- **입금계획 취소** : 등록 후, 입금 전 취소
- **입금처리중** : 입금 후 이지바로 반영 前
- **입금완료** : 환입용가상계좌 입금반영
- **입금취소** : 연구비계좌로 환불
 ☞ 당일 이체 가능시간까지 입금취소
- **처리완료** : 익일 9시 일괄변경
 (입금완료 → 처리완료)
- **처리취소** : 연구비계좌로 환불

건별지급방식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고
0. 브랜드	Mater	VISA	
1. 카드대금이체	- 카드사 청구 Data 활용 월 1회 - 카드결제대금이체 별도화면 구성	- **매입건별 결의등록 후 지급 (카드 연결계좌 이체)** - 결의등록화면에서 이체 처리 : 건별 결의등록→확인완료→지급	* 이체는 총금액 기준 (세액포함 전체금액)
2. 부가세 환입등록	- 등록기준 : 카드사 月청구 Data 당월금액 = 이지바로 "사용금액+부가세" 합계 - 등록시점 : 카드사 청구 이후 등록 가능	- 등록기준 : **동일 청구일 카드사용건 합계** = 이지바로 "사용금액+부가세" 합계 - 등록시점 : **결제일 당일부터 등록가능**	* 월별 환입 등록 - 등록 후 확인취소, 지급삭제 불가
3. 심사상태	- 결의등록 → 확인완료 - 확인완료 → 지급 : 카드대금이체시 자동변경 - **지급취소 : 전체취소/부분취소** **전건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계획** - 지급삭제 : 미등록건으로 변경 (초기화)	- 결의등록 → 확인완료 - 확인완료 → 지급 : 건별로 이체처리 ☞ 정상승인 : 결의등록 → 확인완료 → 지급 ☞ 승인취소 : 결의등록 → 지급 **※ 취소건은 확인요청을 누르면 지급으로 변경** - 지급취소 : 신용동일 - 지급삭제 : 미등록건으로 변경 (초기화) **전건 환입용가상계좌 입금계획**	* 지급취소 최대금액 = 원건-승인취소금액 ☞ 취소수수료 처리용 (항공/KTX 등) * 지급삭제 : 부가세 등록시 불가
4. 승인취소	- 취소건 中 환불건 환입용가상계좌 입금계획	- **취소 전건 환입용가상계좌 입금계획** ∴ 원건(정상승인건) 반드시 지급처리 필수	- 체크는 전건 환불
5. 정산미표기	- 등록기준 : 미등록건일 경우만 가능 - 정상건 단독 : 환입용가상계좌 입금계획 - 취소건 : 환불건만 환입용가상계좌 입금계획 원건과 함께 정산미표기 (단독불가)	- 등록기준 : 미등록만 가능하여 입금계획 없음 - 정상건 단독 : **입금계획 없음** - 취소건 : **입금계획 없음** 원건과 함께 정산미표기 (단독불가)	* 카드 승인취소건 중 부분취소 건은 정산미표기 불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 산
1 주요 변경 프로세스 소개
2 정산신청/정산중/정산완료
3 연구비 반납

64


Ⅳ. 주요 프로세스 소개 - 정산
▷ 정산 프로세스 주요사항
정산관리 – 정산프로세스 주요사항
이지바로시스템(Ezbaro)
1 과제종료
연구기관 : 집행등록 완료 및 과제종료
2 정산신청
상태 : 과제종료→정산신청
연구기관 → 회계법인
3 위탁 정산기관 정산
상태 : 정산신청→정산중
회계법인 온라인 정산
4 건별 소명 등록
상태 : 정산중
연구기관 소명절차 진행
5 위탁정산기관 정산완료
상태 : 정산중→정산완료
회계법인 건별 소명처리 & 과제 정산완료
5 전담기관 정산
INNO PMS에서 진행
이의신청 인정 → 회계법인
이의신청 불인정 → 정산
6 전담기관 정산완료
이의신청 불인정건
이의신청 인정건
(회계법인 재정산 완료)
7 정산확정
잔액 및 불인정금액 반납
민간부담금 이자 환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PMS)
화면 / 메뉴 세부내용
○ 정산신청 : 연구기관 법인공인인증서 승인을 통한 접수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 세부 비목별 내역서
-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세부내역
-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 정산중 : 회계법인 정산 (건별소명)
○ 정산완료 : 회계법인 정산완료
- 연구비 사업실적보고서 검토결과
- 연구비 불인정 세부내역
- 감사 보고서
○ 전담기관 정산 : INNO 정산
- 이의신청 진행 (1회限)
- 이의신청 인정건 회계법인 재정산
○ 정산확정

65

▷ 연구기관 규정등록



화면 / 메뉴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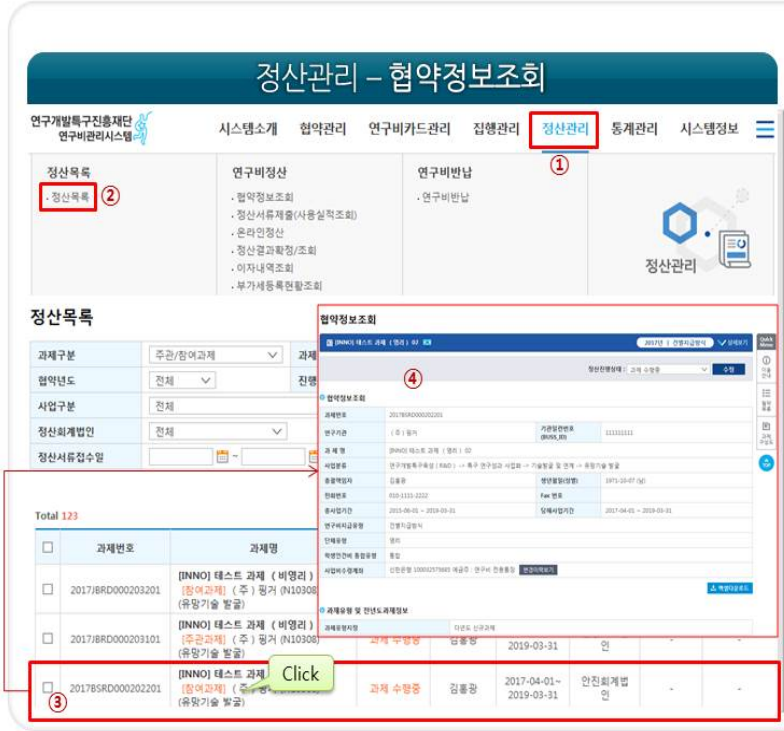
연구기관 관리자 ID 접속
→ 기관정보관리 → 연구기관 관련규정

① 연구기관 규정 추가
- 규정분류 선택
- 파일 선택 → 등록

② 업로드 규정 조회
- 규정분류 선택 →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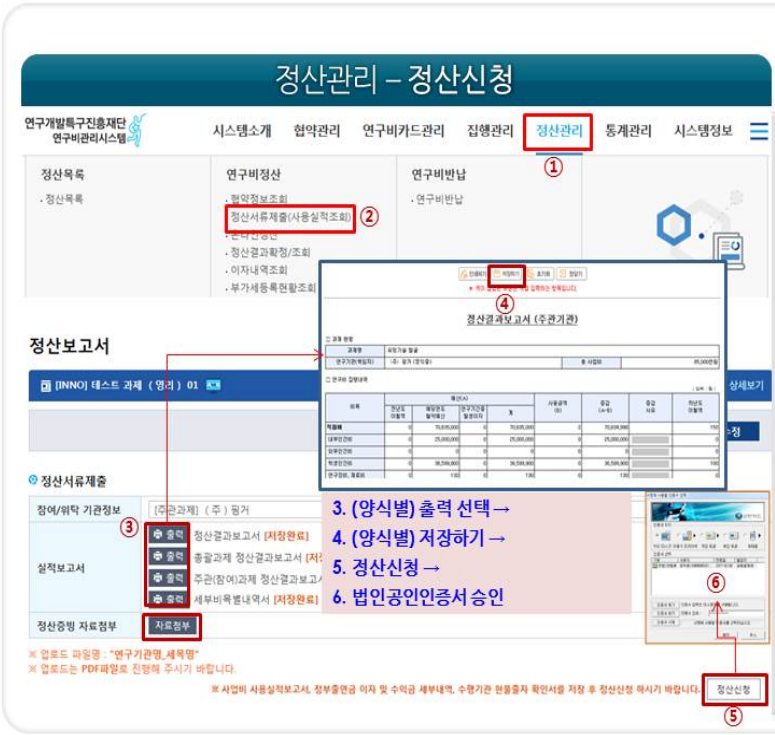
[규정분류]
- 국내외여비 관련규정
- 회의비(식비) 관련규정
- 전문가활용비(회의수당) 관련규정
- 연구수당 지급기준 관련규정
- 구매 및 검수 관련규정
- 기타

▷ 정산목록



화면 / 메뉴 세부내용

■ 업무수행
1. 정산관리
2. 정산목록
3. 정산과제선택
 - 과제명 클릭
4. 협약정보조회 이동
 - 정산신청할 과제 확인



화면 / 메뉴 세부내용

■ 정산신청 절차

1. 정산관리 → 2. 정산서류제출 →
3. 실적보고서 출력 → 4. 저장하기 →
5. 정산신청 → 6. 법인공인인증서 승인

공인인증서승인일 = 정산신청일

■ 정산신청 시 체크 기준

- 기준 미 충족시 정산신청 불가

▷ 집행건 진행상태 체크

- 계좌이체 : 지급
- 카드/현물 : 확인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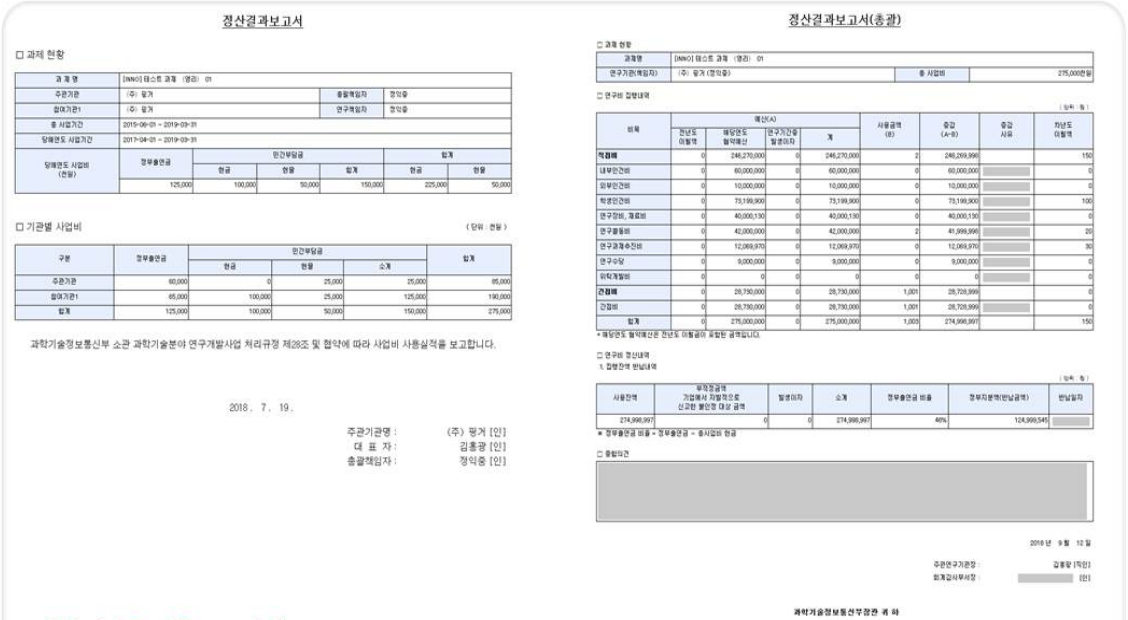
▷ 주관과제에서 정산신청시

- 참여과제 정산신청여부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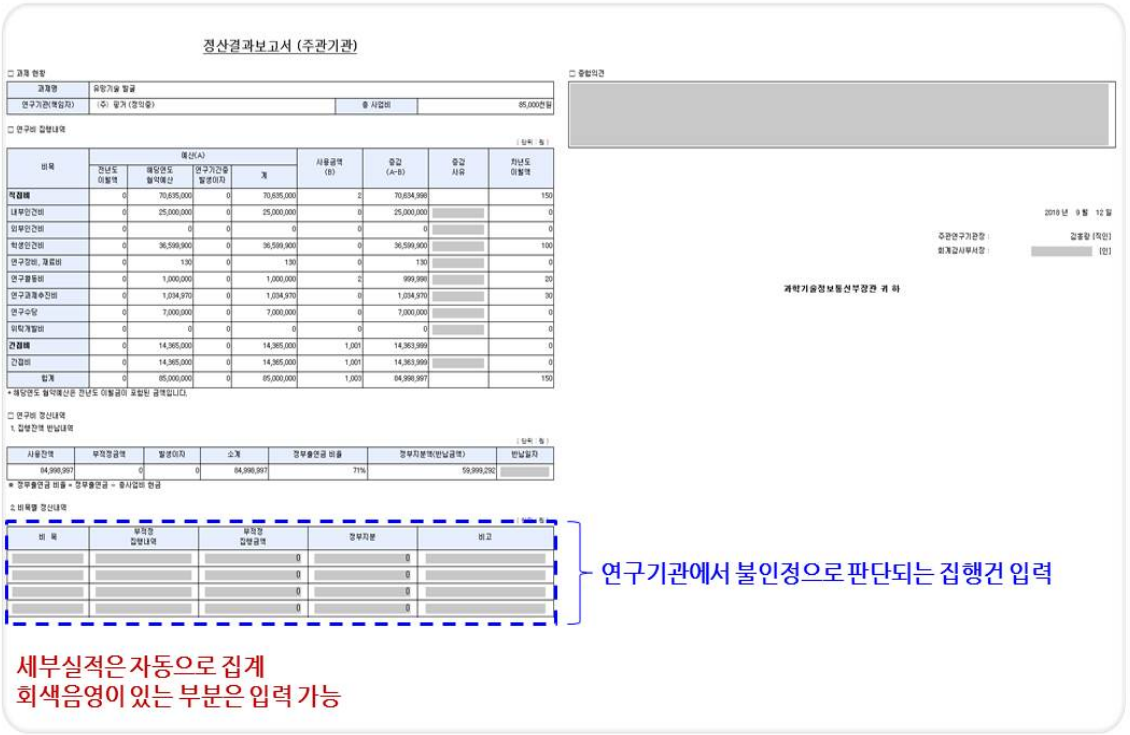
▷ 건별지급방식 : 환입건 입금여부 체크

- 입금계획, 입금처리중, 입금완료, 오류건 존재시 정산신청 불가

자료첨부 : 협약서 등 과제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류 업로드



세부실적은 자동으로 집계
회색음영이 있는 부분은 입력 가능



정산결과보고서 (주관기관)

□ 과제 현황

과제명	유망기술 발굴		
연구기관(책임자)	(주) 맡겨 (정익중)	총 사업비	85,000천원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비목	예산(A) 전년도 이월액	예산(A) 해당연도 협약예산	예산(A)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예산(A) 계	사용금액 (B)	증감 (A-B)	증감 사유	차년도 이월액
직접비	0	70,635,000	0	70,635,000	2	70,634,998		150
내부인건비	0	25,000,000	0	25,000,000	0	25,000,000		0
외부인건비	0	0	0	0	0	0		0
학생인건비	0	36,599,900	0	36,599,900	0	36,599,900		100
연구장비, 재료비	0	130	0	130	0	130		0
연구활동비	0	1,000,000	0	1,000,000	2	999,998		20
연구과제추진비	0	1,034,970	0	1,034,970	0	1,034,970		30
연구수당	0	7,000,000	0	7,000,000	0	7,000,000		0
위탁개발비	0	0	0	0	0	0		0
간접비	0	14,365,000	0	14,365,000	1,001	14,363,999		0
간접비	0	14,365,000	0	14,365,000	1,001	14,363,999		0
합계	0	85,000,000	0	85,000,000	1,003	84,998,997		150

* 해당연도 협약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 원)

사용잔액	부적정금액	발생이자	소계	정부출연금 비율	정부지분액(반납금액)	반납일자
84,998,997	0	0	84,998,997	71%	59,999,292	

* 정부출연금 비율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현금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0	0	
		0	0	
		0	0	
		0	0	

□ 중합의견

2019 년 9 월 12 일

주관연구기관장 : 김동장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 하

연구기관에서 불인정으로 판단되는 집행건 입력

세부실적은 자동으로 집계
회색음영이 있는 부분은 입력 가능



세부 비목별 내역서

[과제정보]

과제번호	2017-BS-RD-0002-02-101	총사업기간	2015-06-01 ~ 2019-03-31
과제명	[INNO] 테스트 과제 (영리) 01		
연구기관/총괄책임자	(주) 맡겨 / 정익중	당해사업기간	2017-04-01 ~ 2019-03-31
프린트조건	전체비목내역	인쇄하기	엑셀파일 다운로드

[연구활동비]

(단위 : 원)

번호	구분(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전자세금계산서여부	집행방법
1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2018-06-04	김혜경			0	0	1		계좌이체
소계								1		집행건수 : 1 건

[연구활동비]

(단위 : 원)

번호	구분(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전자세금계산서여부	집행방법
1 (1)	연구인력활용비		김혜경			0	0	1		계좌이체
소계								1		집행건수 : 1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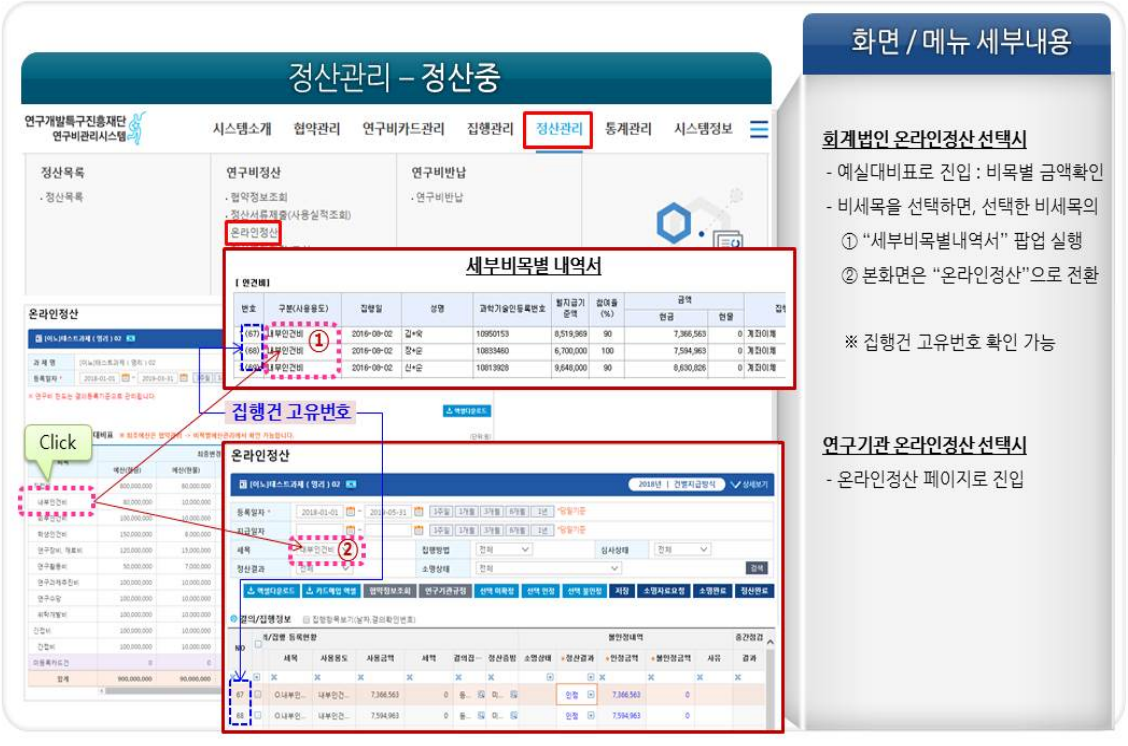
[간접비-인력지원비]

(단위 : 원)

번호	구분(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	금액	집행방법
1 (3)	인력지원비		간접비11			1	계좌이체
2 (7)	인력지원비		홍길동			1,000	계좌이체
소계						1,001	집행건수 : 2 건

() : 집행건 고유번호


정산관리 – 정산접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비관리시스템
시스템소개 협약관리 연구비카드관리 집행관리 정산관리 통계관리 시스템정보
정산목록
연구비정산
연구비반납
정산목록
협약정보조회
정산서류제출(사용실적조회)
온라인정산
정산결과확정/조회
이자내역조회
부가세등록현황조회
연구비반납
정산목록
과제구분
협약년도
사업구분
정산회계법인
정산서류접수일
과제검색
진행구분
액셀다운로드
검색
제목록
정산회계법인변경
정산회계담당자변경
정산접수
Total 123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상태
총괄 책임자
당해 연구기간
회계법인 (담당자)
정산 신청일
정산서류 접수일
2017JBRD000203201
[INNO] 테스트 과제 (비영리) 02
2017JBRD000203101
[INNO] 테스트 과제 (비영리) 01
접수일등록
정산서류접수일
정산서류접수일자 등록 및 변경
2018-01-02
정산회계담당자
화면 / 메뉴 세부내용
○ 기관별 권한
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리자
- 위탁정산기관/회계담당자 변경
② 위탁정산기관
- 회계담당자 저장
- 정산접수 (정산신청 → 정산중)
☛ 주관/공동과제 모두 정산신청된 후 정산중으로 변경 가능
☛ 단건/다건 접수


정산관리 – 정산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비관리시스템
시스템소개 협약관리 연구비카드관리 집행관리 정산관리 통계관리 시스템정보
정산목록
연구비정산
연구비반납
정산목록
협약정보조회
정산서류제출(사용실적조회)
온라인정산
세부비목별 내역서
집행건 고유번호
Click
온라인정산
화면 / 메뉴 세부내용
회계법인 온라인정산 선택시
- 예실대비표로 진입 : 비목별 금액확인
- 비세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비세목의
① "세부비목별내역서" 팝업 실행
② 본화면은 "온라인정산"으로 전환
※ 집행건 고유번호 확인 가능
연구기관 온라인정산 선택시
- 온라인정산 페이지로 진입

정산관리 – 정산중

■ 업무수행: 정산관리 → 정산목록 → 과제선택 → 온라인정산 → 세목선택

위탁 정산기관



연구기관



화면 / 메뉴 세부내용

위탁정산기관

① 정산결과 등록
- 인정 : 인정금액
- 불인정 : 불인정금액 & 사유 & '소명상태 : 소명요청'
- 부분인정 : 인정/불인정금액 & 사유 & '소명상태 : 소명요청'

② 저장 → 소명자료요청
- 건별 정산결과 등록 후 저장 or 소명요청

⑤ '소명상태 : 소명접수' 건
- 정산결과 수정 & '소명상태 : 소명완료'

⑥ 저장 → (全건 소명종료시) 소명완료
※ 연구기관 소명이 부정확한 건은 '소명상태 : 소명요청' 수정 후 재요청

⑦ 정산완료

연구기관

③ 정산결과 中 불인정/부분인정 건
- 보완 후 & 소명상태 : 소명접수

④ 소명자료접수

정산관리 – 정산중

■ 업무수행: 정산관리 → 정산목록 → 과제선택 → 온라인정산 → 세목선택

온라인정산





화면 / 메뉴 세부내용

① 정산 공통 Data

② 건별 결의/집행 등록 Data 확인
- 사용용도별 등록정보, NTIS번호 등

③ 정산증빙 : 건별로 등록한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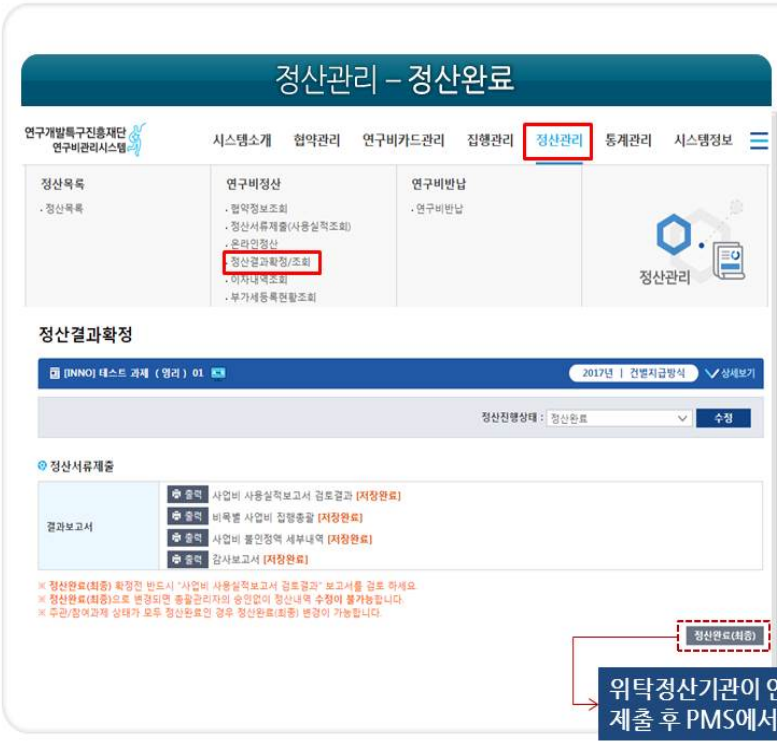
④ 날짜 및 결의확인번호 확인
- 결의확인완료일, 카드결제일, 지급일, 집행등록일(지급일+5영업일內)
- 결의확인번호 부여여부

⑤ 연구기관 관련규정
- 국내외여비 관련규정, 회의비(식비), 전문가활용비(회의수당), 연구수당 지급기준, 구매 및 검수 관련규정

⑥ 선택건 정산결과 일괄등록

⑦ 소명
→ 소명자료요청 (위탁정산기관)
→ 소명자료접수 (연구기관)
→ 소명완료 (위탁정산기관)

⑧ 정산완료
→ 건별지급방식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 '가상계좌 잔액' 확정



화면 / 메뉴 세부내용

정산완료(최종)

→ 위탁정산기관이 전담기관에 제출

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결과

② 사업비 불인정액 세부내역

③ 감사보고서

④ 비목별 사업비 집행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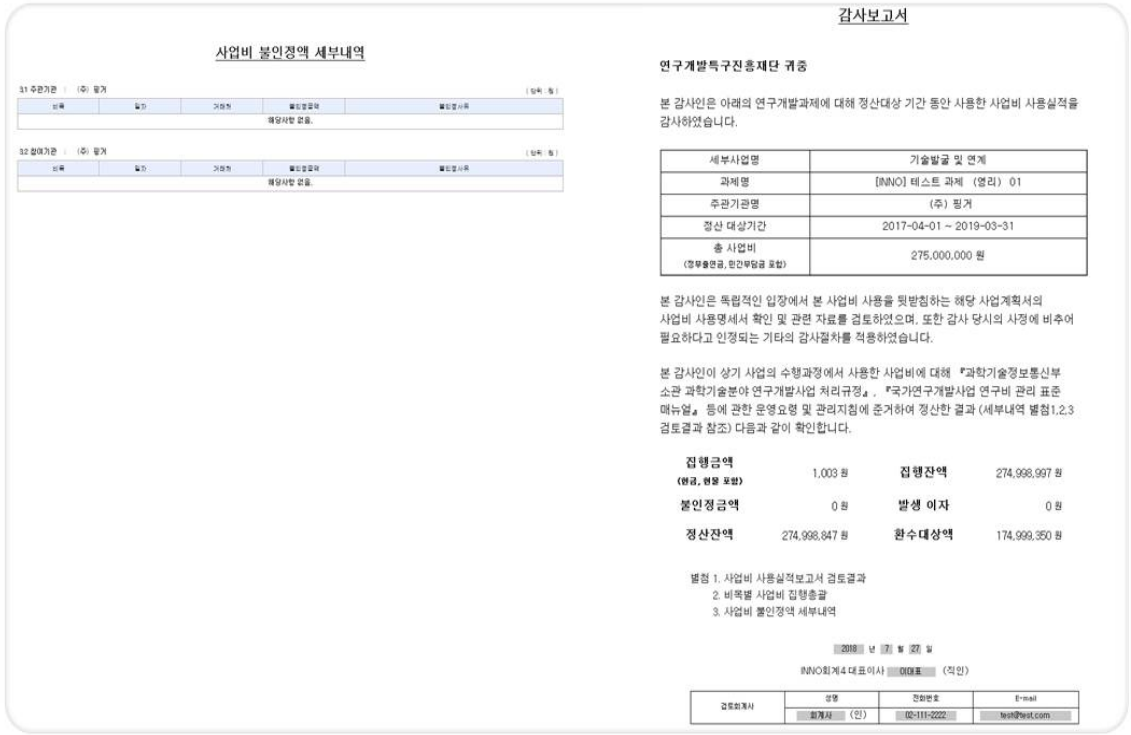
※ 연구기관은 불인정액 세부내역에서 소명인정여부 확인 후 전담기관에 이의신청

전담기관 정산자료 수신 후 이의신청 절차 운영

- 이의신청 수용시 : 회계법인 재정산
 - ☛ 과제상태 : 정산완료(최종)→정산중
- 이의신청 미수용시
 - ☛ 상태 : 정산완료(최종)→정산확정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


비목별 사업비 집행총괄



사업비 불인정액 세부내역

3.1 주관기관 | (주) 핑거 (단위 : 원)

비목	일자	거래처	불인정금액	불인정사유
해당사항 없음.				

3.2 참여기관 | (주) 핑거 (단위 : 원)

비목	일자	거래처	불인정금액	불인정사유
해당사항 없음.				

감사보고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귀중

본 감사인은 아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정산대상 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감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기술발굴 및 연계
과제명	[INNO] 테스트 과제 (영리) 01
주관기관명	(주) 핑거
정산 대상기간	2017-04-01 ~ 2019-03-31
총 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포함)	275,000,000 원

본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사업비 사용을 뒷받침하는 해당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사용명세서 확인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감사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이 상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등에 관한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준거하여 정산한 결과 (세부내역 별첨1,2,3 검토결과 참조)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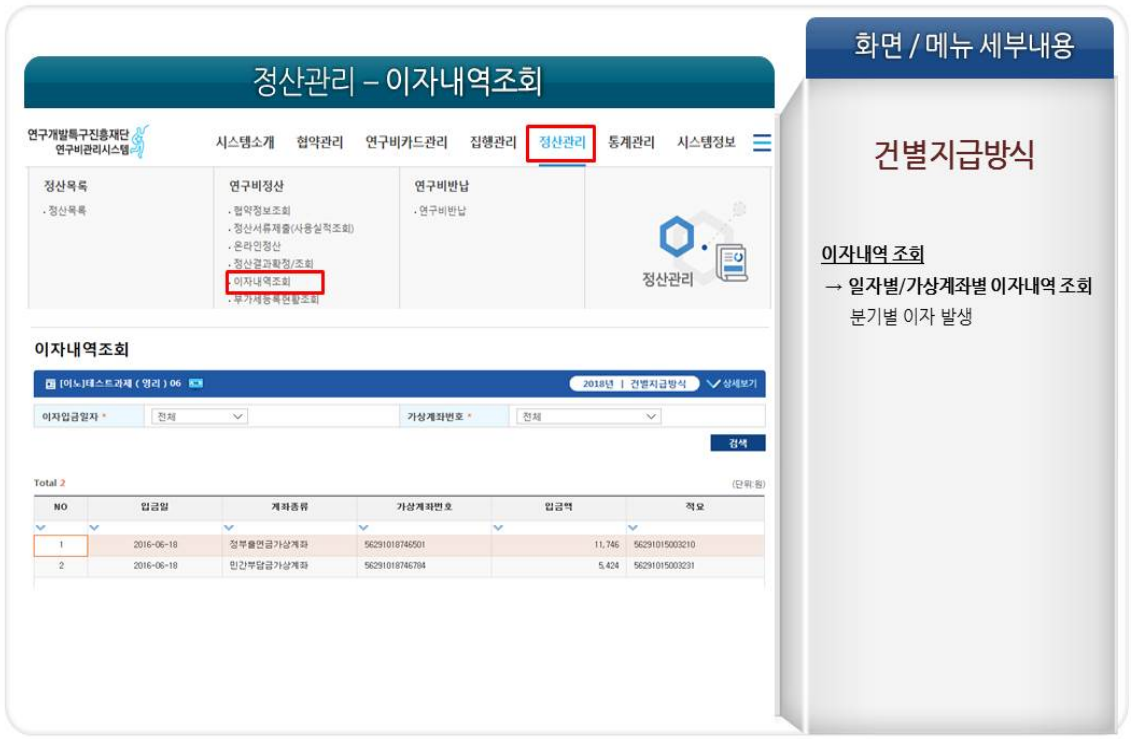
집행금액 (현금, 현물 포함)	1,003 원	집행잔액	274,998,997 원
불인정금액	0 원	발생 이자	0 원
정산잔액	274,998,847 원	환수대상액	174,999,350 원

별첨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
2. 비목별 사업비 집행총괄
3. 사업비 불인정액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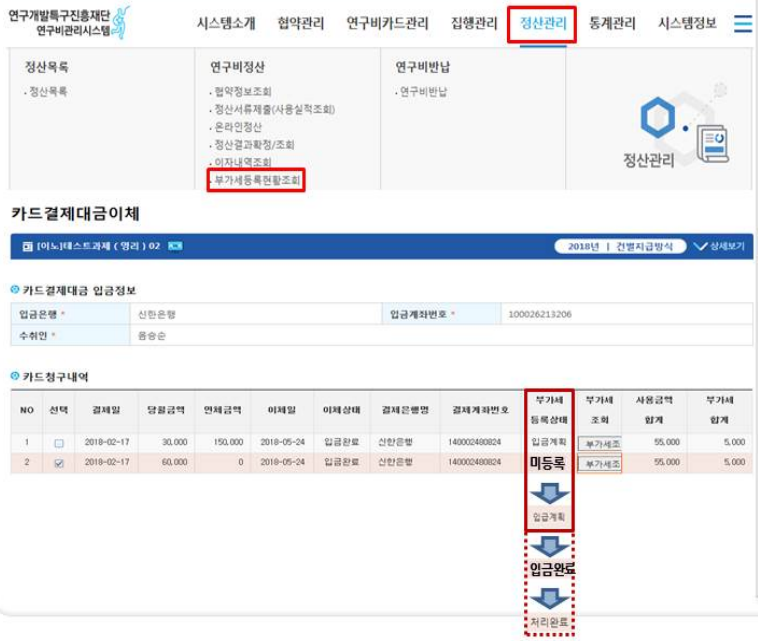
2018 년 7 월 27 일

INNO회계4 대표이사 이대표 (직인)

검토회계사	성명	전화번호	E-mail
	회계사 (인)	02-111-2222	test@test.com



정산관리 – 부가세 등록현황 조회



화면 / 메뉴 세부내용

건별지급방식

부가세 등록현황 조회
→ **카드부가세 등록 및 환입용가상계좌 입금/처리여부 확인**

부가세 등록상태
미등록 : 등록 전 단계
입금계획 : 등록 후 입금 전 단계
입금완료 : 입금완료 단계
처리완료 : 입금 익영업일 9시 처리완료

※ 처리완료 단계일 경우만 정산신청 가능

정산관리 –연구비 반납



정산이 확정되면, 반드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 메뉴 세부내용

건별지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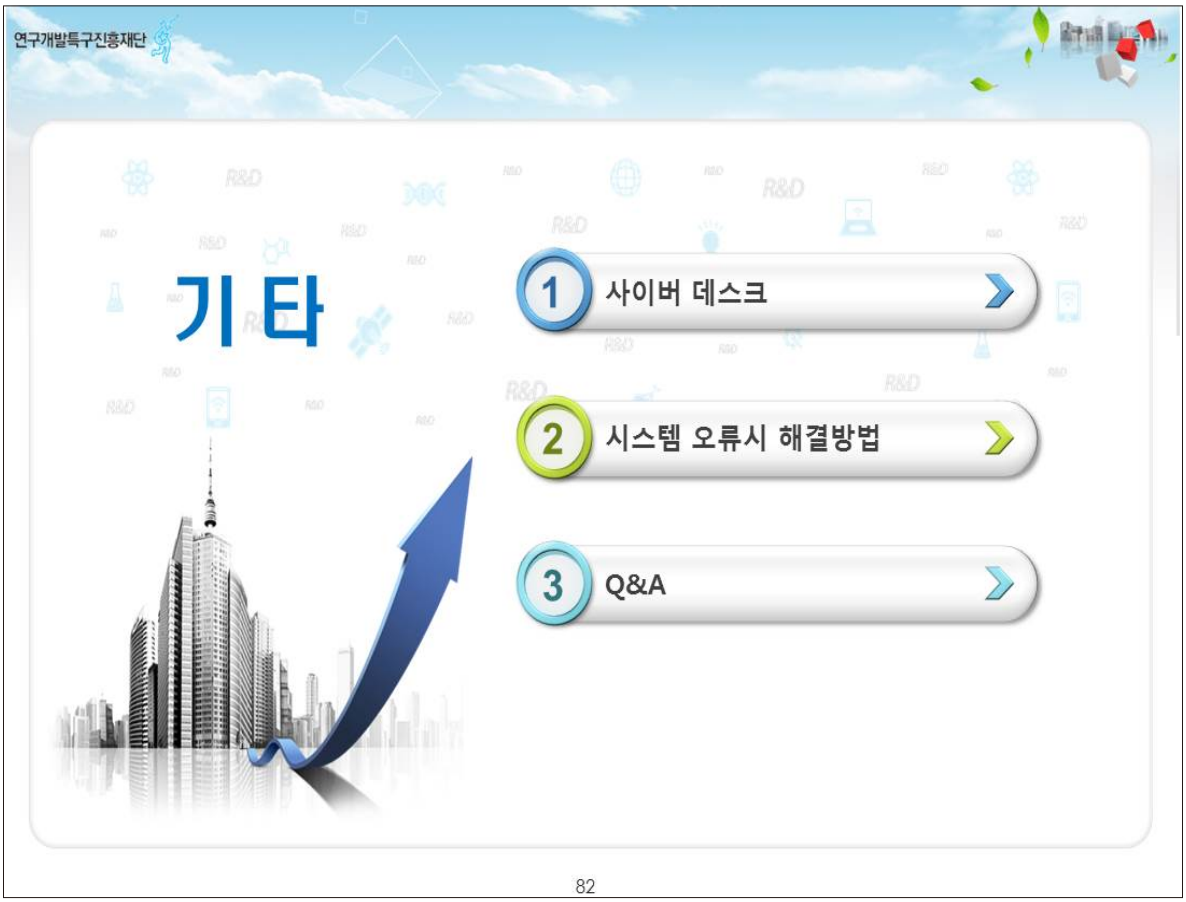
[1.잔액조회] 버튼 클릭
- 가상계좌 잔액 실시간 조회 (정부/민간)

[2.반납금 계산] 버튼 클릭
- 민간 반납액 : PMS 산정 후 이지바로 송부
 * 반납계좌 : 기관 연구비계좌
- 연구비 잔액반납 : 가상계좌잔액에서 민간 반납액 제외한 금액
 * 반납계좌 (PMS가 이지바로에 송부)

[3.이체실행] 버튼 클릭 – 연구기관 수행
- 계산된 민간 반납액을 기관의 연구비수령계좌로 이체 실행

[4.이체실행] 버튼 클릭 – 연구기관 수행
- 계산된 연구비 반납액을 PMS에서 전달받은 반납계좌로 이체 실행

* [1.잔액조회]–[2.반납금 계산]–[3.이체실행]–[4.이체실행] 순서대로 실행해야만 함
* 이체실행 이후에는 반납일이 표시
* 한번 이체실행 된 이후에는 재반납 불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 타
1 사이버 데스크
2 시스템 오류시 해결방법
3 Q&A

82


Ⅴ. 기 타
▷ 사이버데스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비관리시스템
시스템소개 협약관리 연구비카드관리 집행관리 정산관리 시스템정보
Cyber Desk
신한카드 연구비관리시스템 CYBER DESK
카드관련
한도변경관련
시스템관련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변경, 한도관리 등의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CYBER DESK
과제(카드)한도변경
과제(카드)한도변경
화면 / 메뉴 세부내용
메인화면 상단 메뉴 → Cyber Desk
☛ 연구비카드 및 시스템 관련 사항 온라인 상담
☛ 공인인증서 승인 통한 전자접수
카드관련
결제계좌변경/결제일 변경,
명세서주소지변경 등
한도변경관련
회사한도변경 (다음장)
과제(카드)한도변경 : 과제예산증액시
시스템관련
정산미표기 : 일괄지급방식은 사이버 데스크를 통해 정산미표기 진행
☛ 사업비수령계좌 입금증 필첨
※ 건별지급방식은 이지바로 등록 및 환입용가상계좌 입금

83



회사한도변경

- 한도부족으로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
 (대표자 변경시 정보변경 先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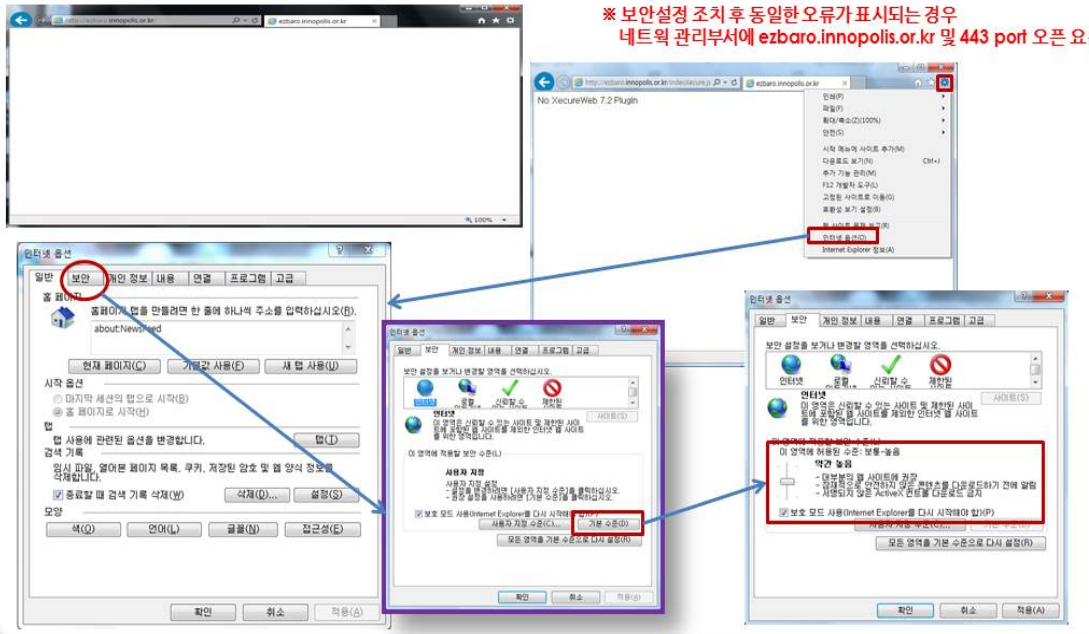
회사한도 신청시 입력한 대표자 정보가 변경되었으면,
대표자 정보변경 화면으로 이동하여
① 대표자 정보 변경 후
② 회사한도 변경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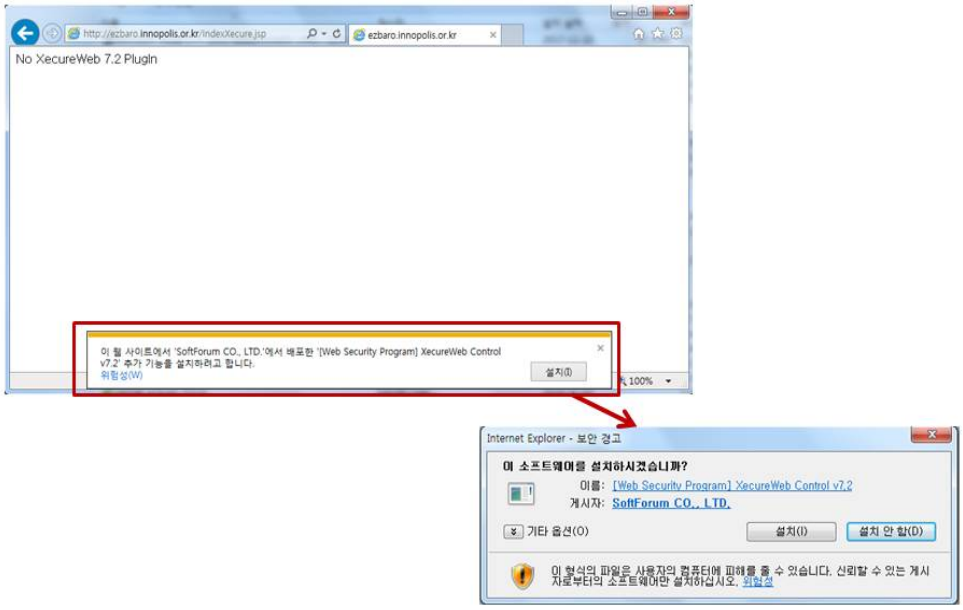
1. 변경정보 작성 및 신용정보 동의 진행
2. 저장완료 선택시 대표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 안내 메시지 : 대표자 정보가 상이합니다.
 대표자 정보 변경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 예 : 이동 (다음장) - 아니오 : 현화면 유지

※ **URL** 접속 시 아무런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가 표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보안설정을 확인바랍니다.

※ 보안설정 조치 후 동일한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
네트웍 관리부서에 ezbaro.innopolis.or.kr 및 443 port 오픈 요청



※ 처음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아래 보안모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 안내가 하단에 표시되므로 브라우저 하단을 확인 바랍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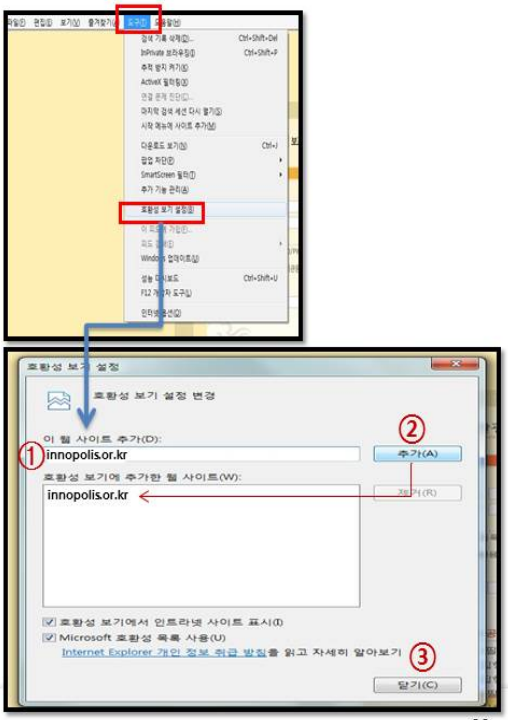
❖ 보안프로그램설치가막힌 경우

방법 1. 관리자권한으로실행

① 바탕 화면의IE 바로가기 실행 아이콘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②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선택해 브라우저를 열고 연구비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 됨

◈ 호환성 보기 설정



❖ 입력 칸이 안보이거나, 계속 오류가 날 경우

방법 1. 호환성문제 해결하기

(1) 인터넷 창을 켜고 [도구]-[호환성보기 설정]

* 도구를 못 찾을 경우 키보드에서 [Alt+T] 동시에 누른 후 [B]를 누르면 나옴

(2) innopolis.or.kr을 추가한 다음 [닫기]-[재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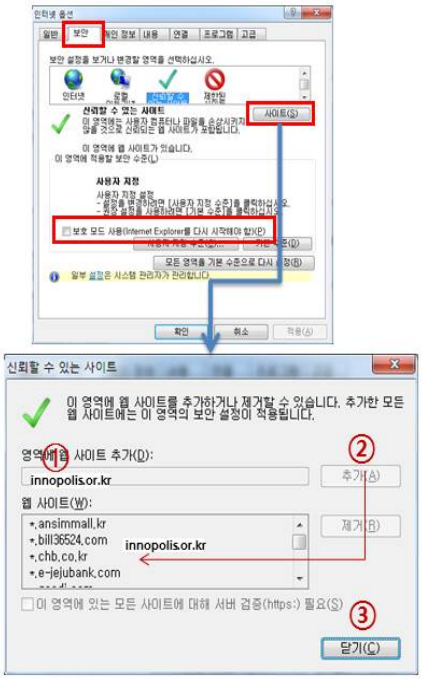
① 웹사이트 추가 : innopolis.or.kr 입력

② 추가 : 입력한 웹사이트 추가 (innopolis.or.kr)

③ 닫기

88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입력 칸이 안보이거나, 계속 오류가 날 경우

방법 2.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추가

(1) 인터넷 창을 켜고 [도구]-[인터넷 옵션]

* 도구를 못 찾을 경우 키보드에서 [Alt+T] 동시에 누른 후 [O]를 누르면 나옴

(2) innopolis.or.kr을 추가한 다음 [닫기]-[재로그인]

① 웹사이트 추가 : innopolis.or.kr 입력

② 추가 : 입력한 웹사이트 추가 (innopol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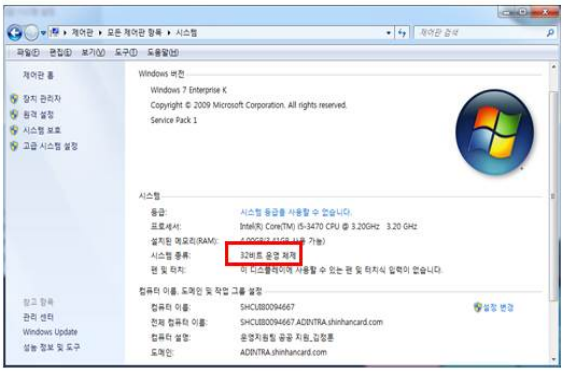
③ 닫기

(3) 보호 모드(Internet Explorer를 ~) 사용 체크 해제

* 64bit PC 인 경우 해제 하면 IE11이 32bit 로 작동

89

◈ 사용자 PC 시스템 종류 확인



시스템 종류 확인

(1) 제어판 > 모든 제어판 항목 > 시스템

* 시스템 종류가 64bit 인지 확인 후

호환성 보기 설정,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설정을 하면

IE 11 브라우저가 32bit 로 자동 실행됨

(연구비 사이트는 32bit 보안 프로그램 사용 중)

호환성 보기 설정,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해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1644-0128 (한컴 시큐어 고객센터) 로 문의

◈ 프로그램 재설치



❖ 입력 칸이 안보이거나, 계속 오류가 날 경우

방법 3. 프로그램 삭제 후 재설치

(1) [제어판]-[프로그램 추가 및 제거] 더블 클릭

(2) softcamp와 xecure webcontrol 삭제

(3) 재 로그인하여 팝업으로 뜨는 모든 프로그램 설치

1. Q : 최초 아이디 생성은 어떻게 부여 하나요?
 A : 아이디는 이지바로시스템 메인화면 사용자 등록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2. Q : 외국인의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A : 국내 거소 외국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3. Q : 참여연구원 정보는 어떻게 등록 되나요?
 A : 모든 연구원 정보는 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PMS에서 이지바로(EZbaro)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신규 및 변경 사항 등 모든 정보)

4. Q : 기업에서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때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없이 학번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A : 모든 연구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및 동명이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5. Q : 인건비 참여율 관리는 소수점 몇자리까지 해야 하나요?
 A : 연구자 월급여와 월별참여율을 통하여 월지급한도를 산정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여 관리합니다.

6. Q : 집행건별 진행상태가 있나요? (결의등록 → 확인완료 → 지급)
 A : 결의등록 (세목 및 사용금액/부가세 입력) → 확인완료 (사용용도별 Data 입력 후 결의확인번호 부여) → 지급 (건별이체 or 이체정보 입력)
 참고로, 결의등록 시 결의금액만큼 사업비 한도가 감액됩니다. (한도관리 = 결의등록기준)

7. Q : 결의정보에 대한 결의확인번호 부여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지연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입력 오류가 아닌 시스템 오류 시에는 신한카드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Q : [건별지급방식] 환입용 가상계좌로 입금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A : 이지바로에 등록 후 환입용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오니, 입금전 이지바로시스템에 사유별로 환입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9. Q : 결의정보가 요건에 맞으면 즉시 승인이 되나요?
 A : 사용용도별 필수항목 입력 후 확인요청 선택시 결의확인번호는 실시간 부여 됩니다.

10. Q : 결의내용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A : 해당 과제의 총괄책임자, 참여 연구원, 수행기관 관리자ID로 등록 가능합니다.
 단, 건별지급방식의 지급은 펌뱅킹담당자만 가능합니다.

11. Q : 외자구매 이체시 결의확인번호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A : 외자구매의 경우도 결의 단계에서 반드시 결의 확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12. Q : 결의 등록 및 결의확인번호 부여 후 자금이체를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A : 결의등록 후 자금이체의 기간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단, 결의금액으로 사업비한도가 관리되고 있어, 자금이체를 하지 않아도 사업비한도는 차감됩니다.

13. Q : 간접비는 과제별로 분리해서 집행해야 하나요?
 A : 과제별로 분리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14. Q : 결의시 NTIS 번호 미 확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결의, 이체시까지도 NTIS 번호가 미 확정시에는 당해년도 연구기간종료 이전까지 NTIS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15. Q : [건별지급방식] 결의 후 이체처리는 건별로 진행하나요?
 A : 이체처리는 확인완료 후 건별로 진행할 수 있고, 다건이체 기능을 통해 "확인완료"상태 5건을 동시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16. Q : 결의 시 계좌정보와 이체 시 계좌정보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결의시점의 정보와 실제 집행시점의 계좌정보가 불일치하면 취소후 재결의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17. Q : 이지바로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 이지바로시스템 등록건만 온라인정산이 가능합니다.

18. Q : 연구자등록번호(KRI) 번호가 있는데,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또 발급해야 하나요?
A : 연구자등록번호(KRI)를 신규로 등록하시면 과학기술인등록번호도 동일한 번호로 자동등록됩니다. (단, 신규로 채번하는 경우)
또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go.kr)에서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연구자등록번호로 전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9. Q : 정상 집행 완료한 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 결의 후 집행등록이 완료된 건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단, 거래처로부터 사업비가 환불되었을 경우 원건에 대한 지급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체취소, 부분취소)
지급취소는 별도의 결의등록 절차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비카드는 지급삭제를 통하여 미등록으로 초기화 가능

20. Q : 연구원의 인건비가 매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나요?
A : PMS 시스템에서 전송된 참여연구원의 지급기준액과 월참여율로 월별 인건비 지급한도가 결정되므로,
협약시점에 PMS에 월 참여율/지급한도를 차등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지급한도는 PMS 시스템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1. Q :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언제 과제가 확인되나요?
A : 과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후 이지바로에 과제가 등록됩니다.

22. Q : [건별지급방식] 기관관리자도 펌뱅킹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나요? 기관관리자 ID로 펌뱅킹이 가능한가요?
A : 펌뱅킹담당자 등록은 해당과제의 책임자만 가능하고, 사업비 건별 지급처리는 펌뱅킹담당자만 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구매/회계담당자, 참여연구원 및 책임자 본인 중 복수의 인원을 이지바로 ID를 활용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이지바로에 아이디만 있으면 등록 가능)

23. Q : [건별지급방식] 시스템을 통한 이체 가능시간이 있나요?
A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체 가능합니다. 단, 과제 마지막날은 에러시 대응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응답

발표4. 2019년도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지원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太库
Techcode

Techcode Accelerator Korea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지원 사업

Techcode 太库
创业者国度 Startups Nation



Contents

1. 수행기관 소개

2. 프로그램 방향

3. 지속 지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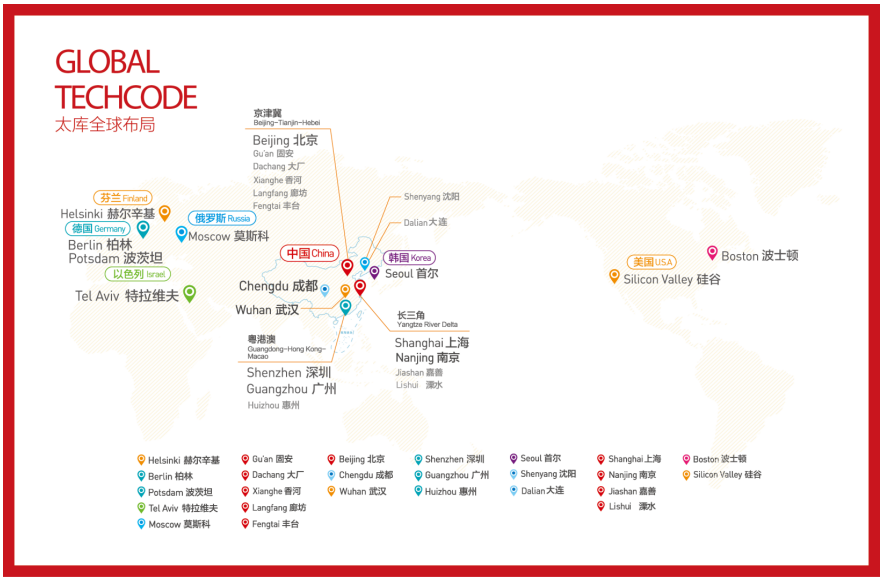
4. 프로그램 신청 방법

5. 월 별 프로그램 계획

1-1. 수행기관 소개

수행기관 전문성

전 세계 7개 국가 25개 도시 31개 액셀러레이터 공간과 사무실, 150명에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미국《Entrepreneur》로 부터 전 세계 10대 액셀러레이터 선정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회사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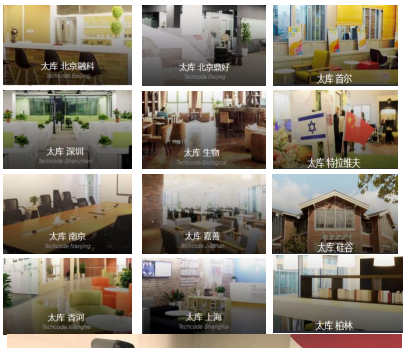
7개국가

25개 도시

31개
액셀러레이터
공간과 사무실

1-2. 수행기관 글로벌 운영 현황

전 세계 31개 액셀레이터 센터(총 공간 면적 40,000m2, 년 평균 45,000 누적 방문객)에 150명에 스탭은 오프라인 인큐베이팅 공간과 글로벌 화상 시스템을 통해 플랫폼 방식 액셀러레이팅 센터를 운영





실리콘밸리(1172 Castro Street Mountain View, CA)



중국 북경(11, Tower B, Raycom Infotech Center, No.2 Academy South Street, Haidian District, Beijing)



중국 상해(11-12F, Building C Changtai Square, No. 3 the 2889 Lane Jinke Road, Pudong New Area, Shanghai)



1-2. 수행기관 글로벌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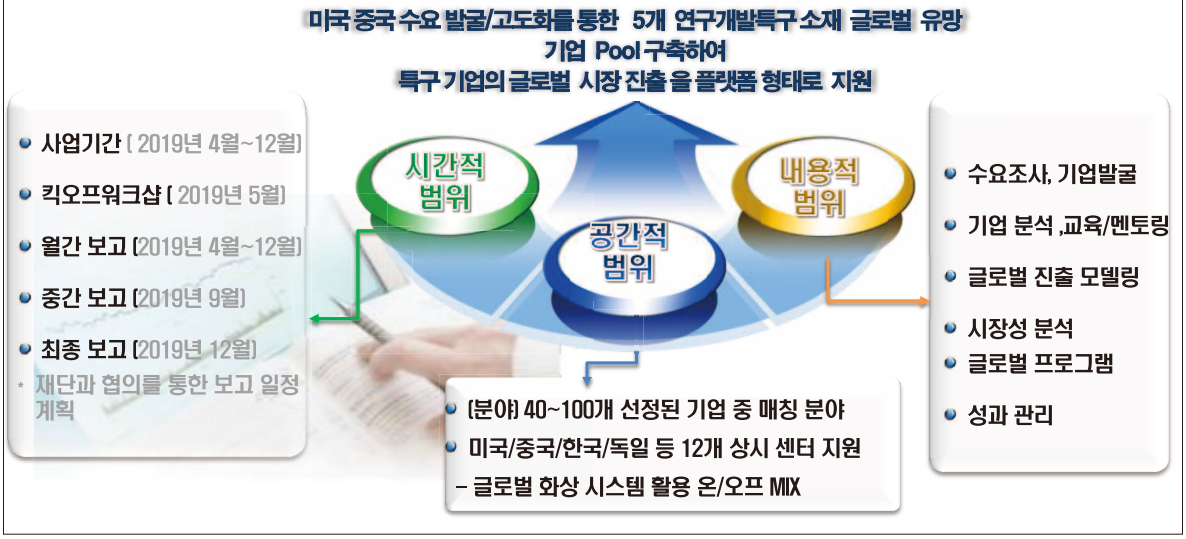




2-1. 사업 추진 방향_범위/목적

미국/중국 수요 발굴/고도화를 통한 5개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유망기업 Pool을 구축하여 특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플랫폼 형태로 지원

구축된 글로벌 플랫폼 연구개발특구재단 제공, 타 글로벌 사업 지원



2-2. 전문인력 규모 및 활용 방안

구축된 멘토링 그룹은 글로벌 수요 분석과 기업 분석을 통해 분류/그룹화된 기업군과 매칭 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그룹화/차별화 하여 진행

수요 조사

- 특구기업 수요 조사 (WITH INNOPOLIS)
- 기업 별 수요 항목(案)
 1) 글로벌 투자 유치
 2) 글로벌 직접 진출
 - 법인설립
 - 진출 모델 컨설팅
 3) 글로벌 상품 판매
 -바이어 매칭
 -상품 인증

+ 1PAGE 소개자료

수요분야별/성숙도별 Group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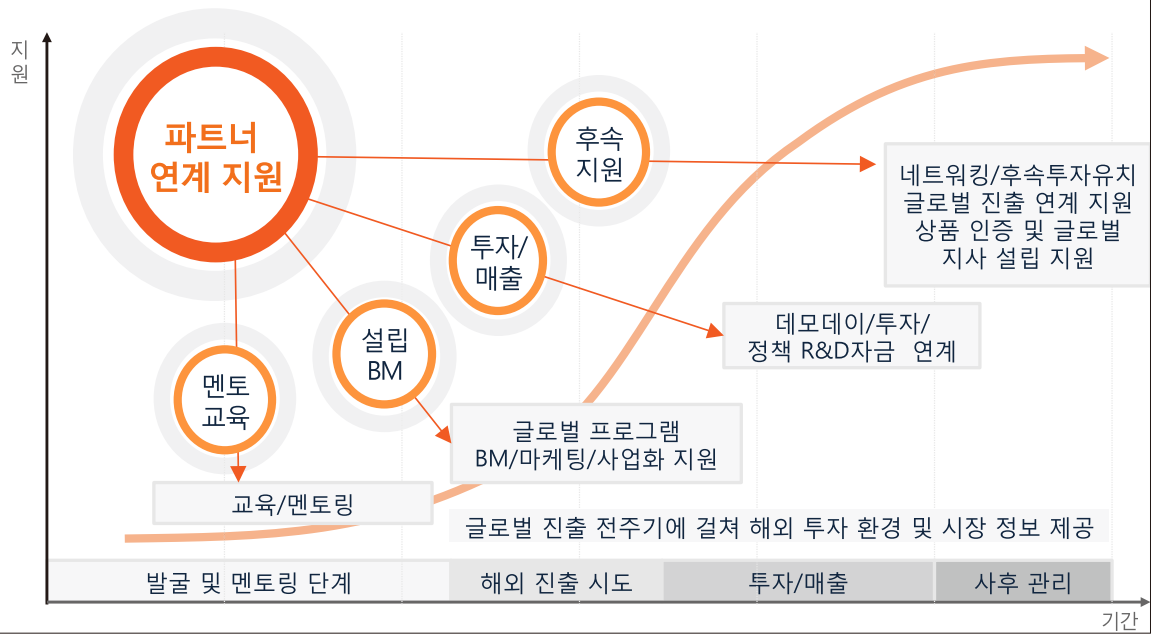
- 기업 유형 분류 : AI,바이오,콘텐츠,자율주행차,5G 등 구분
- 기업 성숙도 분류 :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3 단계 별 분류
- 유형 및 성숙도에 따라 총 기업을 분류하여 관리
- 수요 분석/분류를 통해 차별화된 멘토링 연결

		수요 분류	기업 성숙도
글로벌 수요		상품/투자/협력	개발단계 상업화 산업화
참여 기업 수요			
사업분야	참여기업 별 카테고리	Group	Group
수요 연결지역	미국/중화	Group	Group

글로벌 진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Group 화 하여 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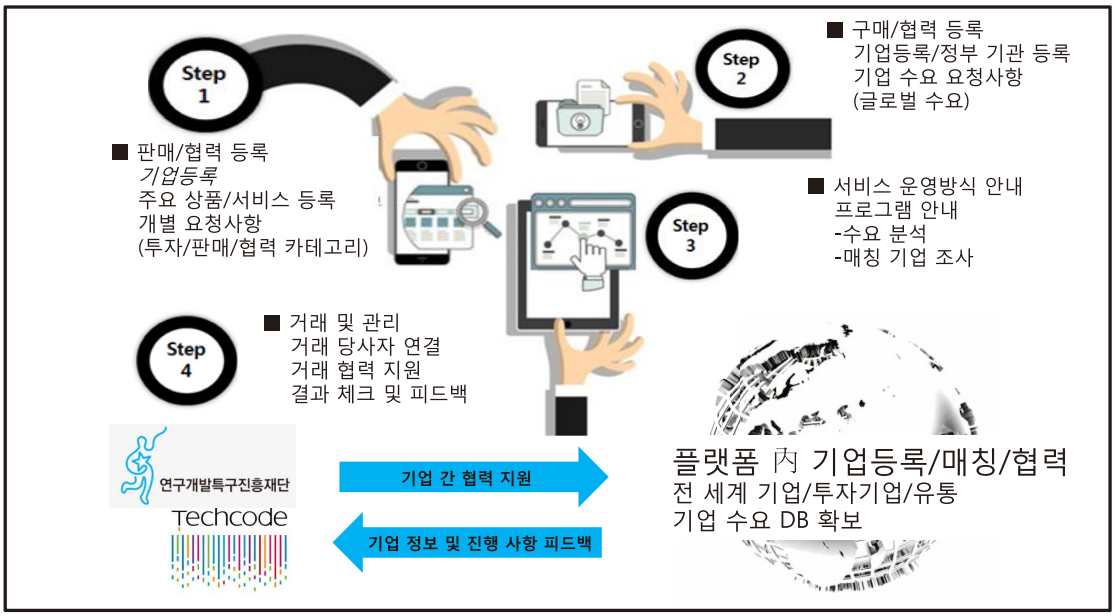
2-3. 운영 관리 및 후속지원 계획

프로그램 완료 이후 테크코드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세스에 따라 EXIT 달성까지 지속 지원



3. 지속 지원 전략

1년 차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력하에 온라인 수요 매칭 플랫폼 오픈
2년 차 프로그램 진행 시 모든 특구 기업 참여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원 규모 확대



4. 프로그램 신청 방법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상시

모집기간 이후 발생할 결원 TO에 맞춰 상시 모집

공고 후 신청한 기업 수요 조사 상시 실시

향후 진행 되는 월(5월~12월) 별 행사는 신청한 기업 우선으로 기업 별 이메일

고지 후 선발/진행 (모집 신청한 기업에게 월별 행사 참여 기회가 우선 제공 됨)

중국/미국 월 별 프로그램 중복 참여 가능

(접수방법) WWW.innnpolis.or.kr 접속 ▶ 공지사항 ▶사업공고
▶ 2019년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한-미 연계) 참여기업 모집

(제출서류) 공고 참조

5. 월 별 프로그램 계획

1. 박람회/행사

- 중국 현지 로드쇼 1차(5월): 홍콩헬스케어 박람회,중국 랑팡 글로벌 데모데이
- 중국 현지 로드쇼 2차 (8월): 데모데이, 현지화, 바이어 매칭
- 미국 실리콘벨리 로드쇼 1차(9월): 데모데이, 현지화
- IFA Global Markets(9월): 박람회 지원, 교육
- 미국 보스톤 교육 프로그램(10월): 교육, 데모데이
- 필란드 슬러쉬 행사 지원(11월): 행사 지원, 기업 선발, 교육
- 미국 Power Gen International(11월): 박람회 지원, 기업 선발, 교육

2.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수요 분석 후 기업 별 맞춤형으로 진행하며 연간 상시 프로그램 운영)

- 법인 설립 및 현지화 지원(컨설팅 및 법인 설립 비용 지원)
- 바이어 매칭 및 매출 계약 지원(바이어 수요 조사 및 컨설팅, 현지 활동/상품 인증 등 관련 실비 지원)
- IR 자료 준비 및 투자 연계(투자자 수요 조사 및 컨설팅)

※ 월 별 프로그램은 환경 변화 및 기업 수요 분석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 변경 가능

발표5.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 [동남아시아]' 사업설명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동남아시아)’ 사업설명회

2019. 05. 30

주식회사 아이티엘

주식회사 아이티엘 소개

사업개요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주기적 플랫폼 지원 ”

① 사업소개

- 5개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소재 글로벌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② 대상기업 및 지역

- (모집대상) 연구소기업 등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또는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참여기업(기술이전사업화 과제에 한함) 등
- (지역) 동남아시아(ASEAN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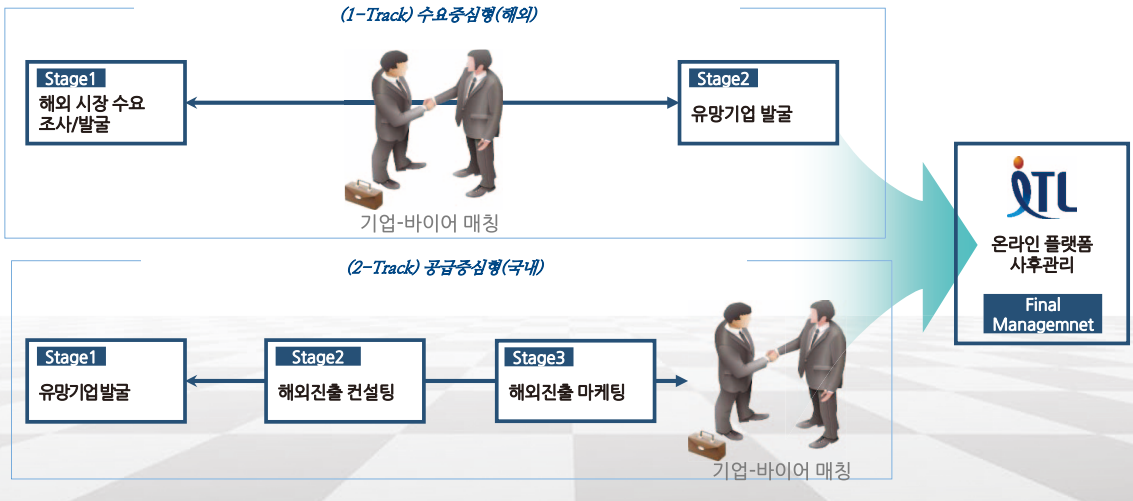
③ 사업기간

- 현재 ~ ‘19년 12월 31일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2-track 기업 발굴”

① 유망기업 발굴 기준



2019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동남아시아) 신청서

기 업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담당자(직위)		부서명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팩스(FAX)		E-mail	
기업주소			
특구소재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특구육성 사업참여 (기술이전사업화)	참여이력 있음□ 참여이력 없음□ *특구外기업은 특구기술이전사업화 과제 참여증빙 필수제출
신청자격적정성 자체 검증 * 미해당시 '해당없음'에 체크 (추후 선정시 적격성 검증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제한 여부 : 해당없음□ • 동사업과 유사한 국가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여부 : 해당없음□ • 신청일 현재 부도상태 여부: 해당없음□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 여부 : 해당없음□ • 신청일 현재 체무불이행자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신청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 해당없음□ • 신청일 현재 결산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 3년 이상이고,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투자유치에 의한 부채 제외)이 연속 500%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 여부 : 해당없음□ • 신청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여부 : 해당없음□ • 신청일 현재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여부 : 해당없음□		
주요내용	회사소개	※ 회사의 간략한 소개	
		품목명(제품)	※ 주요 제품/서비스/기술들을 서술 ※ HS CODE
	참가목적	※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이 얻고자 하는 목표(해외 투자유치, 수출계약, 해외법인설립 등) 및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해외진출 현황	수출현황	※ 해외수출/유통, 해외투자유치, 외국정부/기업발주 등 주요성과 작성
		진출 희망 국가	※ 동남아시아 국가 지정
	연구소기업 여부	예□ 아니오□ *연구소기업은 연구소기업 등록증 제출	

본인은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심의를 거쳐 지
으로 선정될 시 본 사업 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대표자) : (서명 또는

㈜아이티엘 대표이사 귀하

※ 최대 2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작성 요망

- 1 -

및 오프라인 미팅 후 선정"

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요소	평가자료
사업 적합성 (50)	참가의지	20	• 모집분야 연관성 • 참가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 • 사업목표 및 타겟시장 활동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참가신청서
	기대성과	20	• 전반적 사업 역량 및 해외개척 가능성	제품/서비스 소개자료
	제품/서비스 우수성	10	• 독창적, 기술 집약 제품/서비스 여부	제품/서비스 소개자료
기업 건전성 (20)	매출규모 및 재무상태	10	• 재무제표 및 신용도	Cretop
	경력 및 성과	10	• 과거 해외시장 진출 경력 및 실적 - 해외 진출(수출)실적	서류전반
해외 시장성 (30)	해외시장 진출가능성	30	• 글로벌 매칭 희망지역 시장성 평가 - 현지 시장 적합성 - 현지 경쟁력 및 기업 간 경쟁 구도 등	서류전반
합계		100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내용

"단계별 지원(해외진출 컨설팅)"

② 유망기업 지원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내용

“단계별 지원(해외진출 마케팅)”

② 유망기업 지원



